

월간

재정포럼

2017. January_Vol.247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국가 거버넌스와 리더십 개혁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시켜야/ 박형수

현안분석

FTA와 DDA 영향에 따른 관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정재호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최성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유산세 신고 시의 기본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국가 거버넌스와 리더십 개혁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시켜야

· 박형수 02

현안분석

FTA와 DDA 영향에 따른 관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 정재호 06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 최성은 3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유산세 신고 시의 기본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외 46

정책흐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110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11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130



국가 거버넌스와 리더십 개혁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시켜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세계경제의 발전 추이

오늘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성장’의 의미를 넘어, 소득분배를 포함해 국민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한다는 질적인 진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발전 추이를 되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의 황금기를 구가한 이후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는 간헐적으로 악화되기도 했지만 빈곤국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는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는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양 측면에서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도국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소득분배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가 최근에야 진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의 경제발전 양상이 1980년대를 전후로 극적으로 반전된 것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바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은 미국의 헤게모니로 확립된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확대, 케인스식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서유럽 및 일본의 추격(catch-up) 등으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붕괴되고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확장되면서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변동성 심화, 간헐적인 경제·금융위기 등으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가 초래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주의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나 자본주의의 미

래 모습이 명확히 정립되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지금 체제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경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향후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금기보다는 못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의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도 세계화 추세가 다소 후퇴한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이중고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악화 등으로 정책적 대응여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정책 금리를 제로로 하더라도 저축·투자의 균형은 회복하지 못하고 금융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총수요 증가를 위한 재정 확장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규제·세제 개혁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무역 자유화, 구조개혁 등 경제시스템의 재구조화가 장기침체의 극복은 물론 그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득분배 악화는 빈곤 문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가처분소득 격차를 축소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장소득 자체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한편, 우리경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와 추격형 성장 전략 덕택으로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경제시스템을 개조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성장엔진의 출력을 다시 높이고,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실을 보다 공정하

.....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이중고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악화 등으로
정책적 대응여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
**2017년, 협조균형을
 이끌어내는 ‘협치’의
 리더십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할 때다.**

계 분배함으로써 성장동력과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우리경제를 회생시켜 내야 한다. 또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 인구위기로 누적되고 있는 여러 경제·사회문제와 개인·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 우리 앞에 놓인 융·복합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구위기와 국가재정 문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거버넌스와 리더십 개혁

우리에게는 국가전략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방안을 만들 능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국가 거버넌스(governance)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황금기를 만든 요인 중에는 케인스 경제학에 의한 정부의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이외에 자본-노동 협약 또는 사회협약이 있었다. 1948년 제너럴모터스와 미국자동차노조(UAW) 간의 단체협약에는 최초로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1938년 스웨덴의 샬트세바덴 협약은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사회협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닭이 울면 동이 튼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음기(陰氣)를 쫓고 양기(陽氣)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재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료제와 정부조직 재구조화를 포함한 정부개혁을 통해 정치인과 관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협조균형을 이끌어내는 ‘협치’의 리더십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할 때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FTA와 DDA 영향에 따른 관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FTA와 DDA 영향에 따른 관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I. 도입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eung@kipf.re.kr)

우리나라는 현재 FTA 확대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15개 FTA가 발효되어 총 52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체결되었다.¹⁾

FTA 확대에 따라 이러한 FTA체결이 우리나라 관세율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수의 FTA체결로 인해 이제는 한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구조로 변화했다. FTA라는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국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으로 인해 FTA 특혜세율 이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 DDA협상은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 DDA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WTO에서 논의되고 있고 향후 또 다른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이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발효된 FTA별로 얼마만큼 특혜세율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WTO DDA협상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검색 2016.12.20)

II. 관세 세수입 추이

FTA 확대에 의해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관세 세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 증가와 함께 관세 수입도 증가하였지만, 근래 들어 10조원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관세 세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 등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관세세수가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GDP)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관세 세수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은 GATT/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 FTA 확산 등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별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을 보면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76~80년까지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은 2.2%였지만, 198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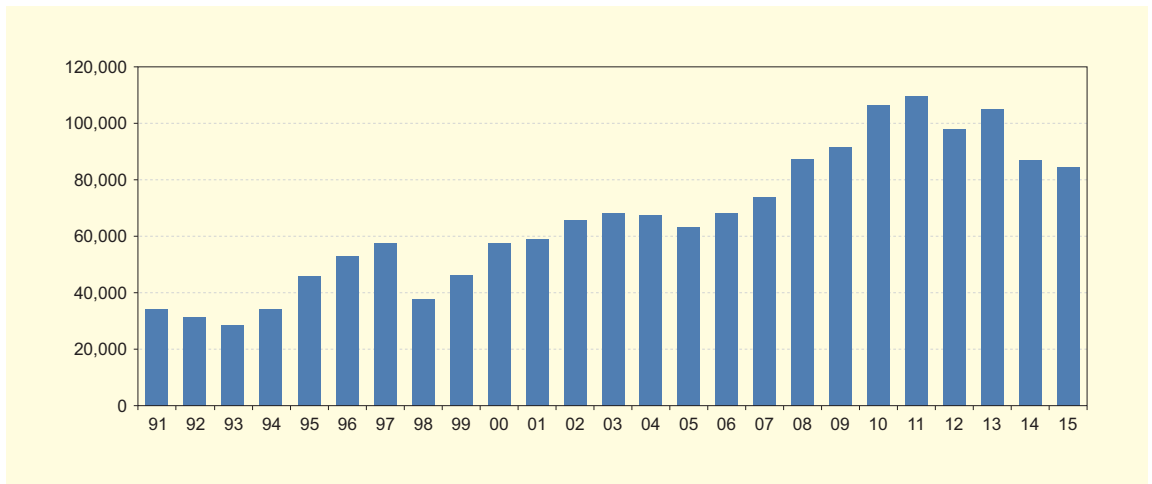
년에는 1.8%로, 1991~95년에는 1.2%로, 1996~2000년에는 1.0%로, 그리고 2001~05년에는 0.9%로 낮아져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이 1%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6~2010년에는 0.8%로 2011~15년에는 0.7%까지 하락하였다.

국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수입 증가 속도에 비해 관세수입 증가 속도가 그보다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1985~89년까지 국세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13.4%이었지만, 1991~95년에는 8.6%로, 1996~2000년에는 6.9%로, 2001~05년에는 5.9%로, 2006~10년에는 5.3%로 낮아졌고, 2011~15에는 4.8%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GDP 대비 또는 국세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규모나 국세수입 증가에 비해 관세수입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1] 관세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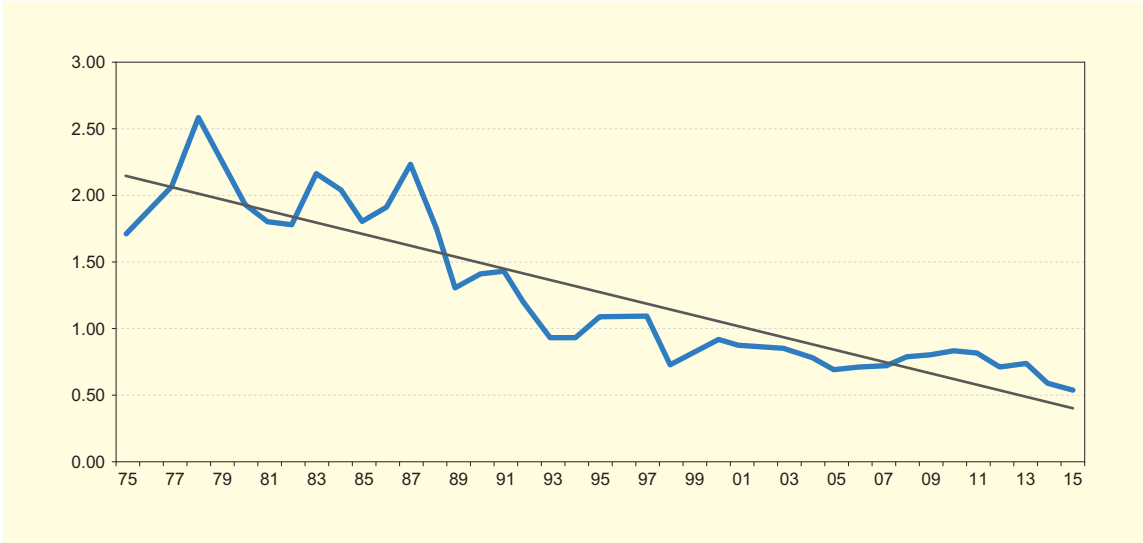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e-나라지표 국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관세징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2]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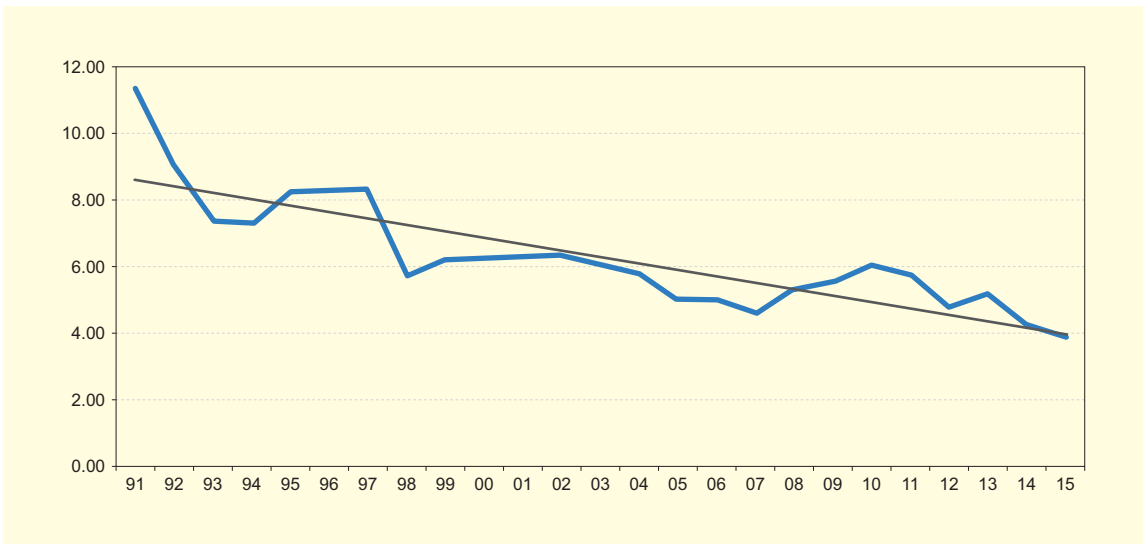
(단위: %)



출처: e-나라지표 국내총생산(GDP),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관세징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3] 국세 대비 관세수입 비중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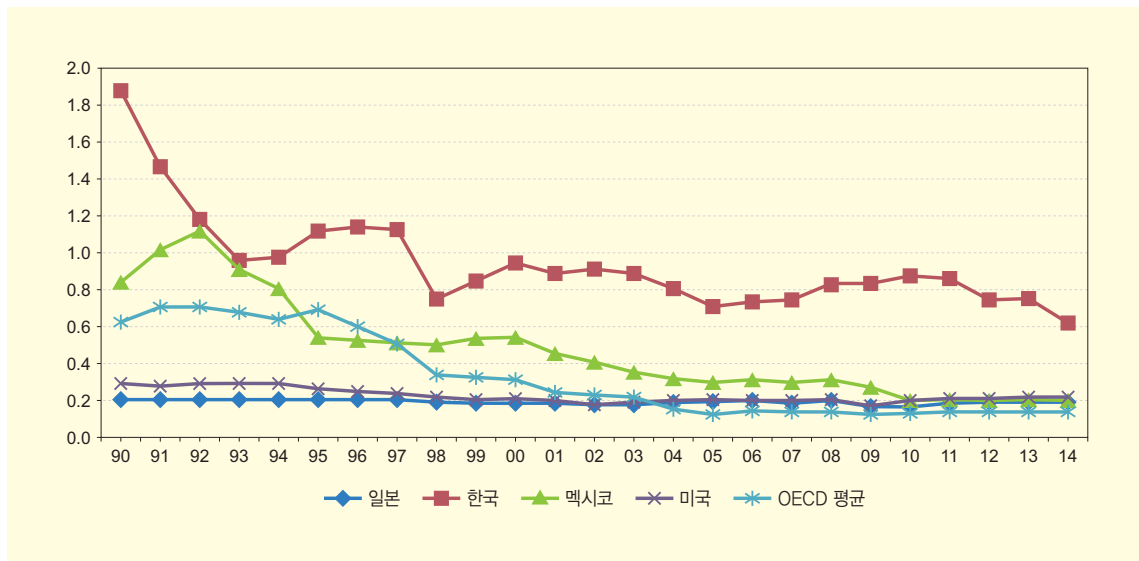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e-나라지표 국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관세징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4] 주요국 관세수입 추이

(단위: %)



주: 멕시코는 2013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 2016.05.11.)

OECD를 중심으로 주요국 관세수입 규모를 보면, GDP의 약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 미국 등은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10년간 GDP의 약 0.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서 EU 회원국들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EU 역내 국가 간 교역비중이 높고 그 이외의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수입은 EU로 귀속되어 EU 개별 국가들의 GDP 대비 관세수입이 0%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FTA 확대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1. 기본관세율 적용 현황

FTA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관세율과 WTO 관세율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수입액 비중이 2007년에는 1.3%였지만, 2014년에는 14.6%로 그리고 2015년에는 17.9%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FTA 발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관세율과 WTO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이 여전히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수입액 비중이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

“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

으며,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도 약 4분의 1 정도이다.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로 수입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FTA라는 협정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FTA는 협정 상대국의 수입품에 한정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상대국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FTA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재호·신상화(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

였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할당관세의 정책적 역할 비중이 FTA 체결로 인해 줄어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할당관세를 통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던 관세율 정책을 FTA 체결로 인해 FTA 특혜세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참고로, 2009년 이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의 역할을 재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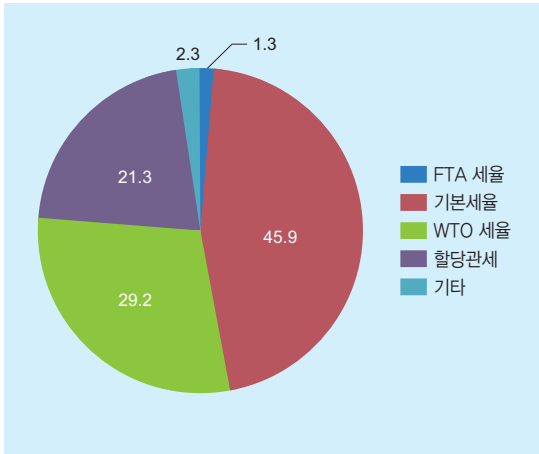
(단위: %)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3	45.9	29.2	21.3	2.3	100.0
2008	2.7	42.3	26.9	25.8	2.4	100.0
2009	3.3	55.2	28.6	10.6	2.4	100.0
2010	4.1	57.6	28.5	7.3	2.6	100.0
2011	6.2	56.1	25.2	10.2	2.4	100.0
2012	11.0	53.0	23.7	10.2	2.2	100.0
2013	13.7	53.1	21.9	8.8	2.6	100.0
2014	14.6	51.2	23.0	8.2	3.0	100.0
2015	17.9	46.9	26.2	5.9	3.1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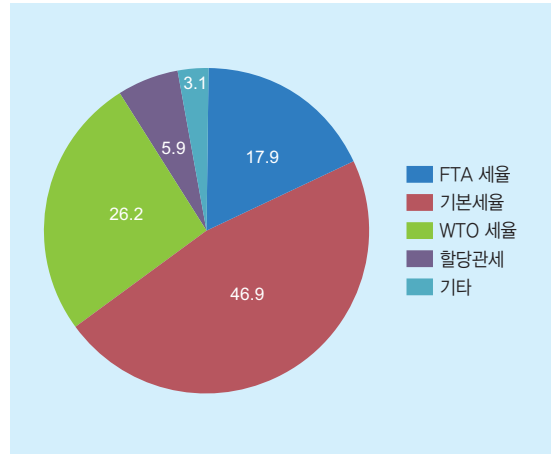
[그림 5] 2007년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그림 6] 2015년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전체 수입액을 공산품과 농산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자. 공산품과 농산물은 품목의 성격이 상이하여 관세율 구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에 대해 적용된 관세율별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수입액을 분석한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산품 수입 비중이 농산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공산품에서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4분의 3을 항상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FTA로 인해 2009년 85.5%에서 2015년에는 75.9%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FTA 특혜세율이 기존의 기본관세율이나 WTO 세율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공산품 수입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 수입에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에 비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8% 중심관세율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에 적용되어 있어 이런 결과를 보면 여전히 기본관세율의 역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8%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다수이다.

〈표 2〉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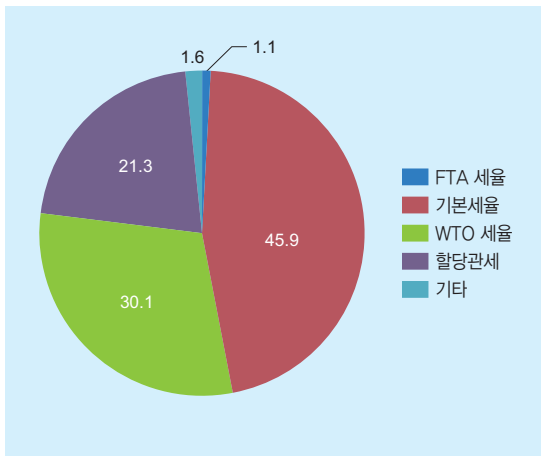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1	45.9	30.1	21.3	1.6	100.0
2008	2.5	42.5	27.7	25.6	1.7	100.0
2009	3.1	55.8	29.7	9.9	1.6	100.0
2010	3.8	58.2	29.5	6.6	1.9	100.0
2011	6.0	57.1	26.2	9.0	1.8	100.0
2012	12.9	54.0	24.7	9.3	1.7	100.0
2013	12.7	54.3	22.9	8.0	2.0	100.0
2014	13.3	52.2	24.2	7.7	2.5	100.0
2015	16.0	48.1	27.8	5.4	2.7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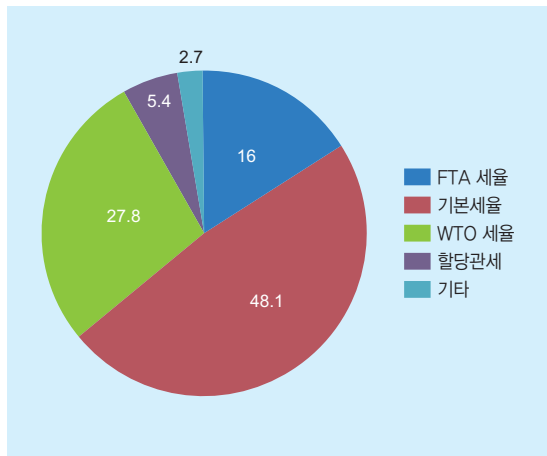
[그림 7] 2007년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그림 8] 2015년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FTA 특혜세율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을 보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어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부터 한미FTA로 인해 FTA 세율로 수입되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FTA별 수입액 비중을 논의하면서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경우도 그 비중이 높아서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 그리고 할당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을 보면, 여전히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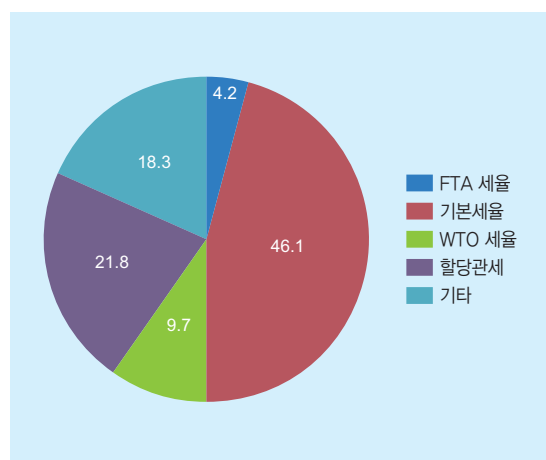
(단위: %)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4.2	46.1	9.7	21.8	18.3	100.0
2008	6.0	38.0	8.5	30.5	17.0	100.0
2009	7.8	43.0	7.5	24.2	17.5	100.0
2010	8.9	44.9	6.8	21.7	17.7	100.0
2011	10.8	34.5	4.5	34.6	15.6	100.0
2012	26.4	31.2	2.6	28.5	11.4	100.0
2013	31.9	31.0	2.2	22.6	12.3	100.0
2014	36.2	32.3	2.1	16.9	12.6	100.0
2015	46.3	29.2	1.4	12.6	10.6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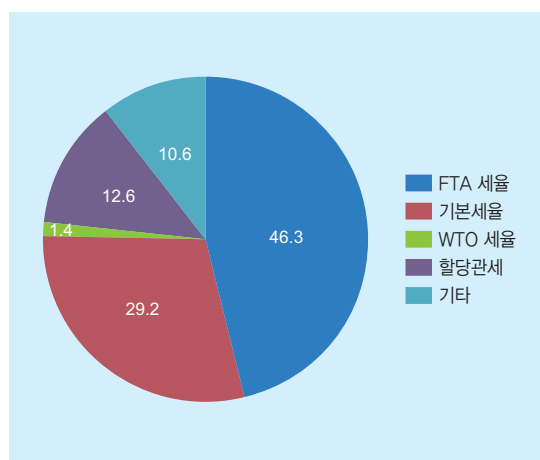
[그림 9] 2007년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그림 10] 2015년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2. FTA별 수입액 비중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FTA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교해 보면, EU로부터의 수입이 약 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ASEAN에서 약 4%, 미국에서 약 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FTA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17.9%임을 감안할

때, 이들 3개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에서 약 1%, 그리고 칠레와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각각 약 0.5%씩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FTA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품에 대해서만 FTA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전체 수입비중과 유사하게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미국 순서로

〈표 4〉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2007	0.3	-	0.5	0.4	-	-	-	0.1	-	-	-	-	-	-
2008	2.3	-	0.1	0.3	-	-	-	0.0	-	-	-	-	-	-
2009	2.4	-	0.5	0.4	-	-	-	0.0	-	-	-	-	-	-
2010	3.0	-	0.5	0.4	-	0.1	-	0.1	-	-	-	-	-	-
2011	3.7	-	0.4	0.4	1.4	0.2	0.0	0.1	-	-	-	-	-	-
2012	3.5	-	0.4	0.8	4.3	0.2	0.0	0.0	-	1.9	-	-	-	-
2013	4.1	-	0.4	0.4	5.4	0.3	0.1	0.0	0.1	3.0	-	-	-	-
2014	4.1	0.0	0.4	0.4	6.0	0.4	0.0	0.0	0.1	3.1	-	-	-	-
2015	4.0	0.9	0.5	0.4	7.2	0.5	0.1	0.0	0.1	3.9	0.2	0.0	0.0	0.0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표 5〉 FTA별 전체 공산품 수입액 대비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2007	0.3	-	0.4	0.4	-	-	-	0.1	-	-	-	-	-	-
2008	2.1	-	0.1	0.3	-	-	-	0.0	-	-	-	-	-	-
2009	2.3	-	0.4	0.4	-	-	-	0.1	-	-	-	-	-	-
2010	2.9	-	0.5	0.3	-	0.1	-	0.1	-	-	-	-	-	-
2011	3.5	-	0.4	0.4	1.4	0.2	0.0	0.1	-	-	-	-	-	-
2012	3.3	-	0.3	0.8	4.3	0.2	0.0	0.0	-	1.5	-	-	-	-
2013	3.9	-	0.3	0.4	5.3	0.3	0.1	0.0	0.1	2.4	-	-	-	-
2014	3.9	0.0	0.4	0.4	5.9	0.3	0.0	0.0	0.1	2.4	-	-	-	-
2015	3.8	0.5	0.4	0.7	7.1	0.5	0.0	0.0	0.1	3.0	0.1	0.0	0.0	0.0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표 6〉 FTA별 전체 농산물 수입액 대비 비중

(단위: %)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2007	2.1	-	1.6	0.4	-	-	-	0.1	-	-	-	-	-	-
2008	5.5	-	0.2	0.4	-	-	-	0.0	-	-	-	-	-	-
2009	5.6	-	1.7	0.5	-	-	-	0.0	-	-	-	-	-	-
2010	6.4	-	1.5	0.5	-	0.5	-	0.0	-	-	-	-	-	-
2011	6.5	-	1.4	0.5	1.7	0.5	0.1	0.0	-	-	-	-	-	-
2012	7.7	-	1.7	0.5	5.1	0.6	0.5	0.0	-	10.4	-	-	-	-
2013	7.2	-	1.9	0.6	6.3	1.0	0.5	0.0	0.1	14.4	-	-	-	-
2014	7.9	0.4	2.0	0.6	7.7	0.7	0.6	0.0	0.1	16.2	-	-	-	-
2015	7.5	7.7	2.1	0.7	8.4	0.7	0.7	0.0	0.1	16.7	1.5	0.0	0.0	0.1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나타났다. 수입 비중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FTA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만 FTA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공산품 수입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FTA별로 농산물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EU, 호주,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지역) 이외에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로 약 2% 수준으로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FTA로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에서 약 46%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체 농산물 수입액 비중에서 보았듯이, 2012년 이후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미 FTA 발효에 기인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

입액 비중이 2012년에 10.4%가 발생함으로 인해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2012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FTA 체결 또는 발효로 인해 앞으로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본관세율 적용된 관세수입 비중

기본관세율과 WTO 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액이 전체 관세부과액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관세율과 WTO 관세율이 우리나라 관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관세부과액과 관세수입액은 다른 개념이다. 관세부과액은 수입 신고에 기재된 관세율에 의해 관세가 부과되어 납부되지만, 그 이후 과오납, 수출재 환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관세부과액이 곧장 관세수입액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수입액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부과액을 활용하고 있다.

FTA 특혜세율과 할당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율을 통해 부과되는 관세부과액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부과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FTA

특혜세율도 모두 0%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TA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관세부과액 비중은 근래 들어 증가하는 추세로 약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의한 관세부과액 비중이 약 2~3%로 가장 낮은 편이다.

〈표 7〉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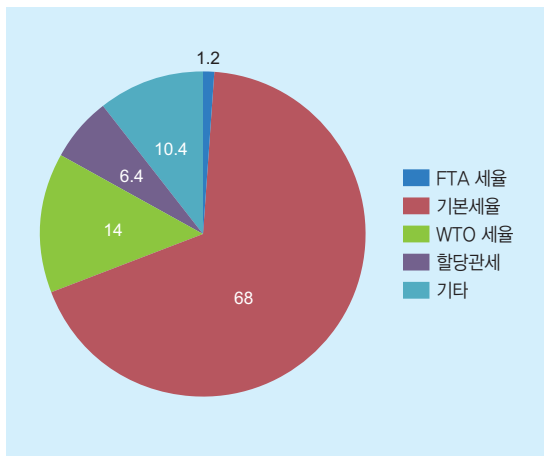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2	68.0	14.0	6.4	10.4	100.0
2008	0.5	67.3	14.2	7.3	10.7	100.0
2009	0.7	71.3	14.7	3.7	9.7	100.0
2010	0.4	72.1	14.4	3.4	9.8	100.0
2011	1.7	71.4	12.9	3.7	10.2	100.0
2012	7.5	69.6	11.0	3.3	8.7	100.0
2013	8.0	70.5	9.9	2.2	9.4	100.0
2014	6.9	70.1	10.0	2.4	10.6	100.0
2015	9.4	68.2	10.0	2.8	9.7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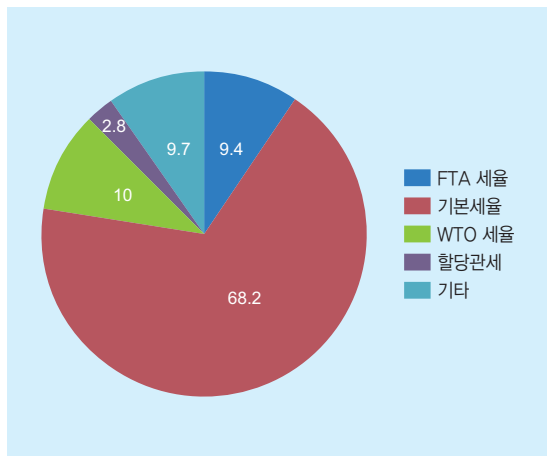
[그림 11] 2007년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그림 12] 2015년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공산품만을 분석해 보면,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여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FTA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관세부과액 비중은 전체 수입액 기준보다 더 낮다.

는 물품의 관세부과 비중은 9.4%이지만, 공산품은 1.9%이다.

2014년에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FTA로 수입되

〈표 8〉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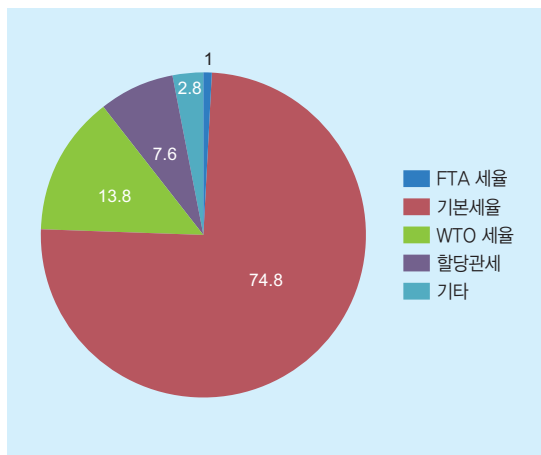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0	74.8	13.8	7.6	2.8	100.0
2008	0.5	73.2	14.1	9.0	3.2	100.0
2009	0.4	77.1	15.2	4.2	3.1	100.0
2010	0.3	77.6	15.2	3.8	3.1	100.0
2011	1.5	77.4	13.8	4.1	3.2	100.0
2012	4.6	76.0	12.1	3.7	3.5	100.0
2013	4.3	78.3	11.2	2.4	3.8	100.0
2014	2.5	78.5	11.6	2.7	4.7	100.0
2015	1.9	76.8	12.1	3.5	5.7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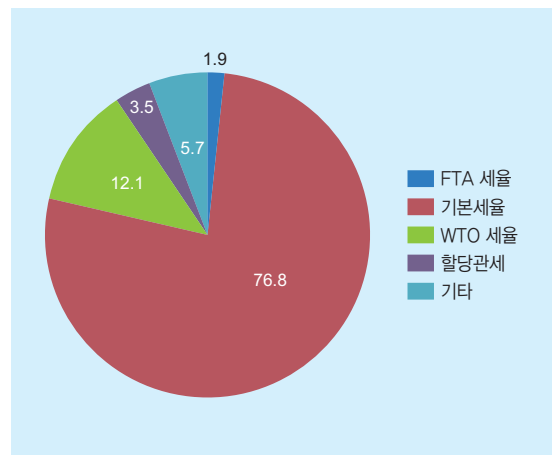
[그림 13] 2007년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그림 14] 2015년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그러나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관세부과액 중에서 기본관세율과 기타 관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들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는 FTA로 수입되지만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농산물 관세부과액 중에서 FTA가 적용된 경우가 약 35% 정도이다.

앞서 보았듯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 기준으로 FTA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액 비중은 약 46%로 기본관세율 적용한 경우보다 많았다.

〈표 9〉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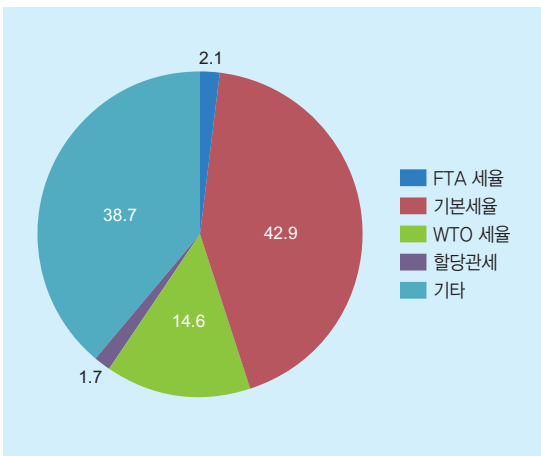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2.1	42.9	14.6	1.7	38.7	100.0
2008	0.8	43.4	14.8	0.5	40.6	100.0
2009	1.9	46.2	12.4	1.6	38.0	100.0
2010	1.1	46.7	10.4	1.3	40.5	100.0
2011	2.8	44.4	9.0	1.7	42.0	100.0
2012	20.9	39.9	5.5	1.4	32.4	100.0
2013	23.8	37.0	4.3	1.5	33.4	100.0
2014	23.8	37.9	3.9	1.4	33.1	100.0
2015	35.4	38.3	2.7	0.2	23.5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이 포함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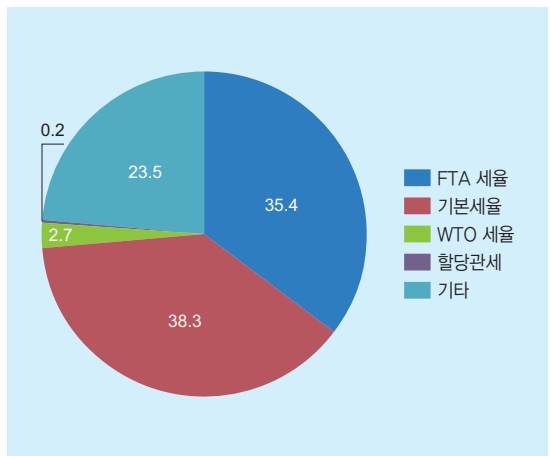
[그림 15] 2007년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그림 16] 2015년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관세부과액 비중

(단위: %)



IV. WTO DDA 협상과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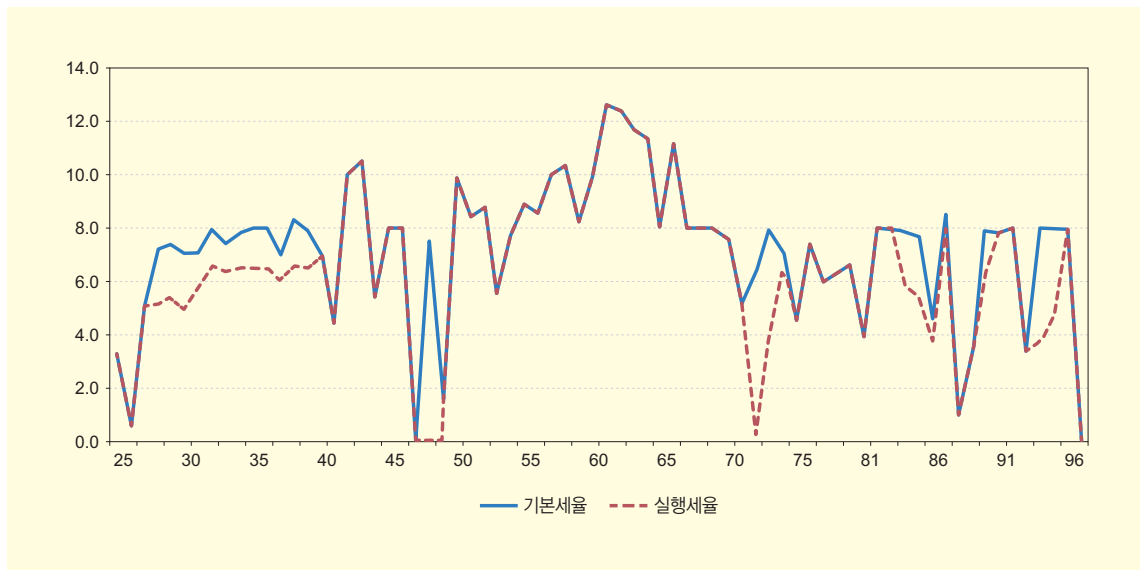
1. DDA 이후의 관세율 구조

WTO에 의한 다자간 DDA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하여 개별 국가별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WTO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FTA가 확산된 경제 상황 변화 속에서 DDA협상 내용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본관세율과 실행관세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WTO 양허세율이 기본관세율 또는 실행관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양허세율은 우리나라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높은 관세율이고 관세율 적용 우선에 의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세율 정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음의 그림은 HS 2단위 기준으로 관세율을 단순 평균한 그림이다.²⁾

[그림 17] 기본관세율과 실행관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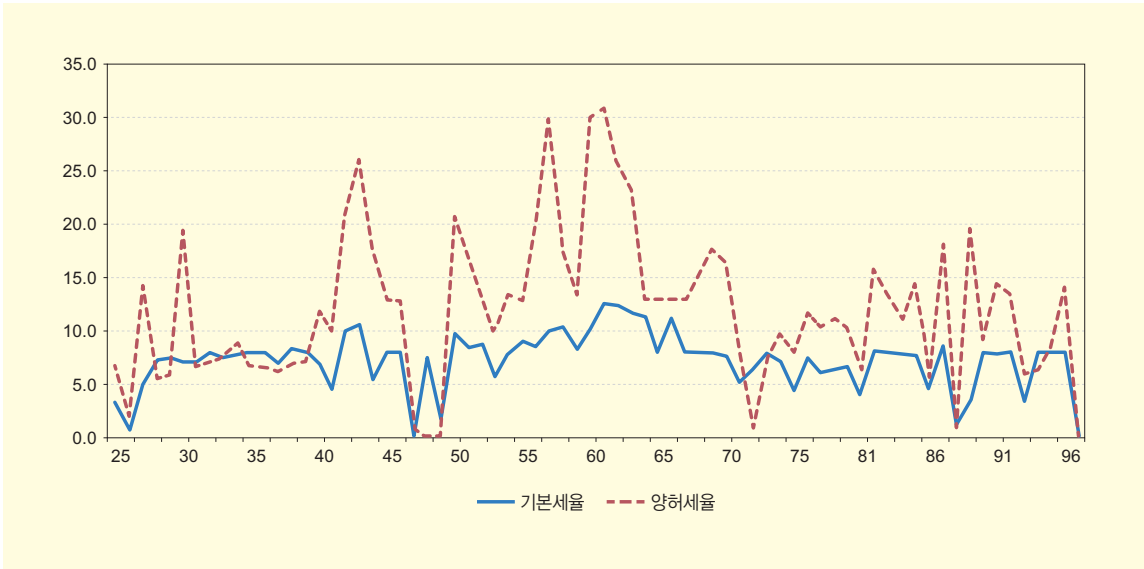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2) HS 2단위별 품목명은 부록 참고

[그림 18] 기본관세율과 양허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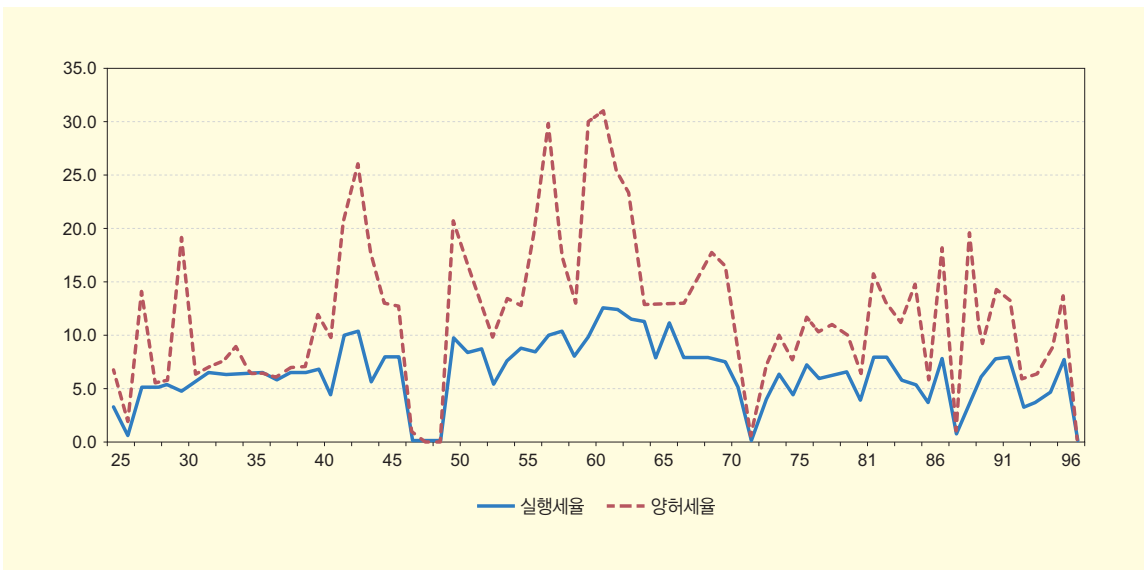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19] 실행관세율과 양허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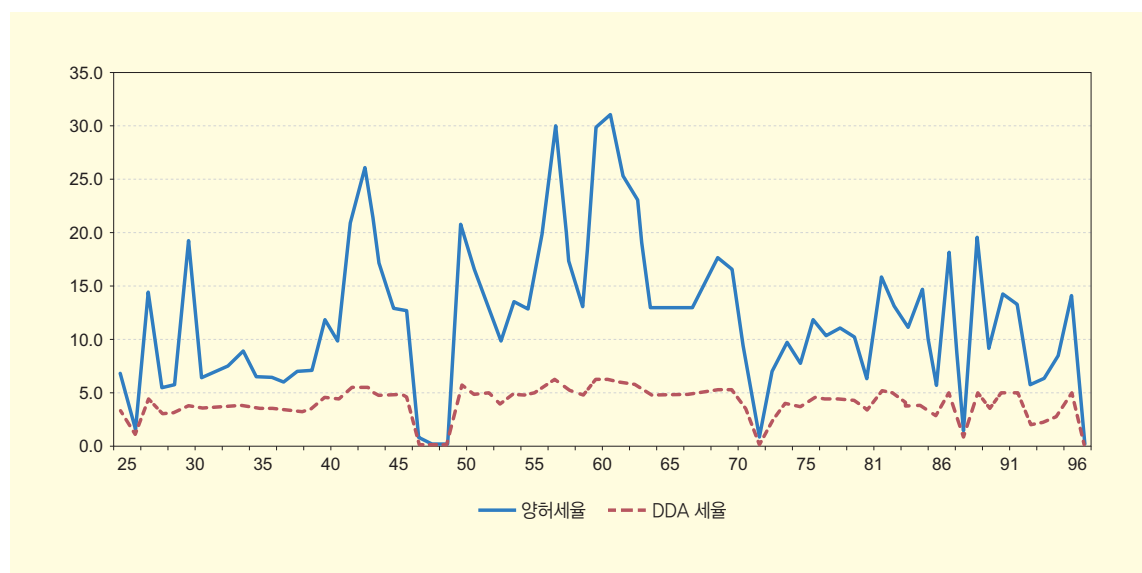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현재 DDA 협상이 논의 중에 있지만,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율 인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양허세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³⁾

DDA 협상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현재의 양허세율보다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관세율과 실행세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산품 관세율은 주로 8% 수준인데 반해 DDA 협상에 따른 새로운 양허세율은 이보다 낮은 4~6%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0] 현재 양허세율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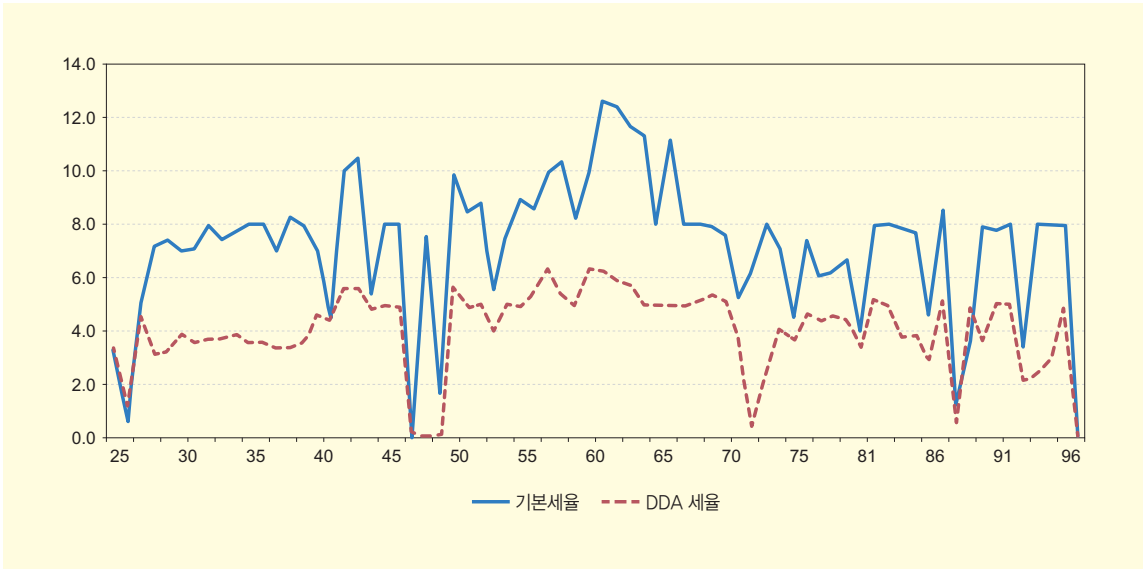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3) WTO DDA NAMA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스위스공식 사용하였다.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은 스위스가 제7차 GATT 다자간 관세인하협상(도교라 운드)에서 제안한 관세인하공식으로, 고관세 품목일수록 관세 감축 폭이 더 커지는 특징이 있음. 스위스공식은 $t_2 = \frac{at_1}{a+t_1}$ 이며, 여기서 a 는 계수로 선진국은 8이 적용되었고, t_2 는 새로운 DDA세율 t_1 은 기존 세율을 의미함. 현재 미양허된 품목의 양허세율은 '2001년 실행세율 +25%p'로 계산하였음

[그림 21] 기본관세율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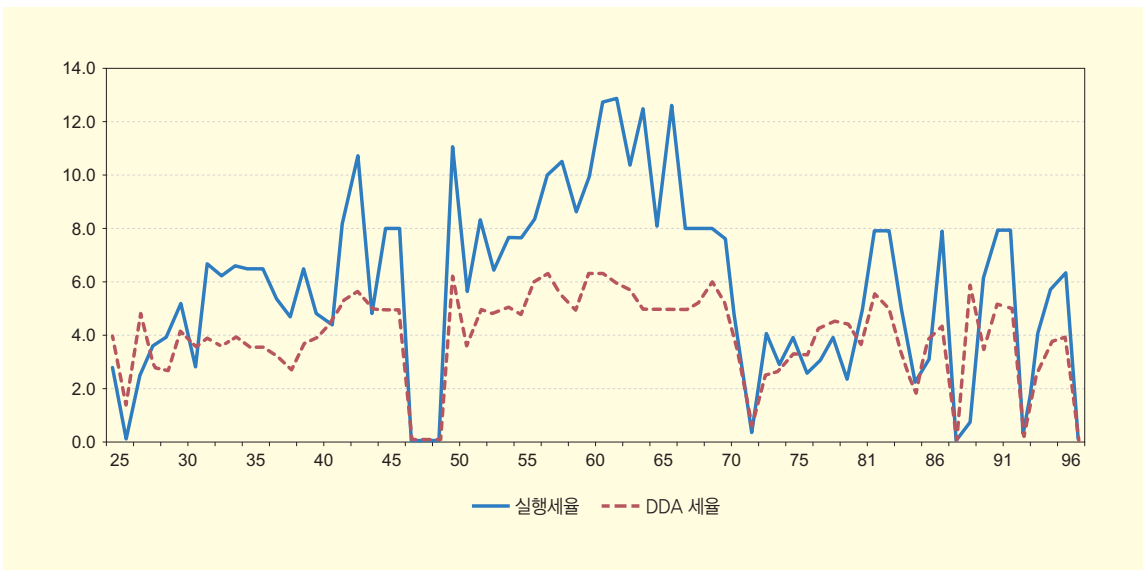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22] 실행세율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가중평균)

(단위: %)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교역액으로 가중 평균한 실행세율과 DDA 양허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부 품목에서는 DDA 양허세율이 더 높게 나타나, 현재의 실행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반면, 가죽, 모피류(HS 41~43), 섬유류(HS 50~63), 신발류(HS 64~67) 등은 현재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향후 DDA 협상 이후에는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섬유류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8%보다 높은 13%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양허세율도 다른 품목들보다 높아 25~30% 수준이다. 스위스공식은 비선형 관세인하 공식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고관세 품목의 관세율 인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FTA로 인한 영향

실행세율이 DDA 협상에 따른 새로운 양허세율보다 낮아 실행세율 조정이 필요 없는 품목이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이다.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9,975개의 HS 총 품목 중에서 실제 교역이 발생한 품목 수는 9,223개이며, 이 중에서 실행세율이 DDA 양허세율보다 낮은 품

“
실행세율이 DDA 협상에 따른 새로운 양허세율보다 낮아 실행세율 조정이 필요 없는 품목들의 수입비중은 전체의 약 70% 정도이다.
 ”

목은 2,253개로 24.4%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실행세율이 DDA 양허세율보다 높아 실행세율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6,970개이며,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을 보면, 31.9%로 의외로 낮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실행세율이 DDA 양허세율보다 낮아 실행세율 조정이 필요 없는 품목이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비중은 68.1%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표 10〉 실행세율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단위: 개, %, 조원)

	전체 HS 품목	교역이 있는 HS 품목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DDA세율<실행세율	7,547	6,970	75.6	168.4	31.9
DDA세율=실행세율	2,428	2,253	24.4	357.7	68.1
합계	9,975	9,223	100.0	526.1	100.0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4) 이 품목 중에는 수입액 100.5조원으로 가장 큰 수입비중(19.0%)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원유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그 비중은 여전히 높다.

“
**FTA를 통해 수입되지 않으면서
 DDA 이후 실행세율을 낮춰야 하는
 품목은 총 885개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2.1조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FTA를 통해 수입되지 않으면서 DDA 이후 실행세율을 낮춰야 하는 품목은 총 885개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2.1조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관세 인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FTA 체결 등으로 충격이 약간은 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2~4%p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DA 협상 이후 실행세율 조정이 필요한 품목 수는 많지만, 수입비중이 31.9%로 낮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영향이 의외로 작을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FTA로 수입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여지듯 FTA로 수입되는 수입액이 약 51.9조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3분의 1이 FTA로 수입되고 있었다. 참고로 FTA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액이 약 69.9조원임을 감안할 때, FTA로 수입되는 품목의 약 74% 정도가 향후 실행세율이 낮아질 분야에 속하고 있었다.

〈표 11〉 FTA 수입 품목 및 수입액(실행세율>DDA양허세율)

(단위: 개, %, 조원)

FTA 비중	품목수	누적 품목수	비중	FTA 수입액	누적 FTA 수입액	비중
100%	86	86	1.2	0.1	0.1	0.2
90% 이상	280	366	5.3	9.0	9.1	17.6
80% 이상	250	616	8.8	2.3	11.4	22.0
70% 이상	276	892	12.8	3.7	15.1	29.2
60% 이상	341	1233	17.7	4.9	20.0	38.6
50% 이상	415	1648	23.6	5.6	25.6	49.4
40% 이상	489	2137	30.7	8.5	34.1	65.8
30% 이상	618	2755	39.5	5.8	39.9	76.9
20% 이상	684	3439	49.3	5.7	45.6	87.8
10% 이상	917	4356	62.5	4.6	50.2	96.7
0% 이상	1729	6085	87.3	1.7	51.9	100.0
0%	885	6970	100.0	-	-	-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표 12〉 FTA 수입이 없는 품목(실행세율>DDA양허세율)

(단위: 개, %)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10.0~	3	0.3	4.0~4.9	10	1.1
9.0~9.9	2	0.2	3.0~3.9	305	34.5
8.0~8.9	4	0.5	2.0~2.9	320	36.2
7.0~7.9	2	0.2	1.0~1.9	147	16.6
6.0~6.9	10	1.1	0.1~0.9	59	6.7
5.0~5.9	23	2.6	전체	8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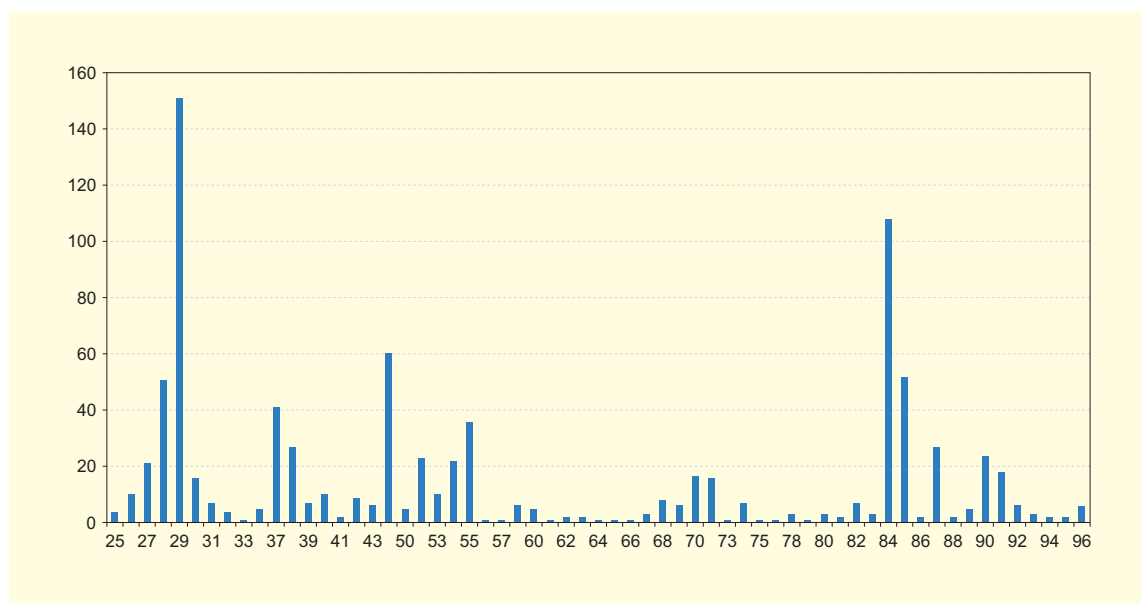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FTA로 수입되지 않으면서 DDA 이후 실행세율을 낮춰야 하는 총 885개 품목은 주로 유기화학품(HS 29), 목재(HS 44),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무기화학품(HS 28)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적으로 유기화학품(HS 29)은 2.6%p, 목재(HS 44)는 1.6%p, 기계류(HS 84)는 2.8%p,

전기기기(HS 85)는 2.2%p, 무기화학품(HS 28)은 2.5%p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 FTA 수입이 없는 품목(실행세율>DDA양허세율)

(단위: 개)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분석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FTA로 수입되는 비중이 20% 미만인 품목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총 3,531개 품목이 해당되었으며, 이들 품목의 총 수입액은 76.0조원이고, FTA로 수입액은 6.4조원이다.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대부분 2~4%p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531개 품목은 유기화학품(HS 29),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무기화학품(HS 28) 등이며, 평균적으로 유기화학품(HS 29)은 2.6%p, 기계류(HS 84)는 2.8%p, 전기기기(HS 85)는 2.4%p, 무기화학품(HS 28)은 2.3%p의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FTA 수입비중 20% 미만 품목(실행세율>DDA양허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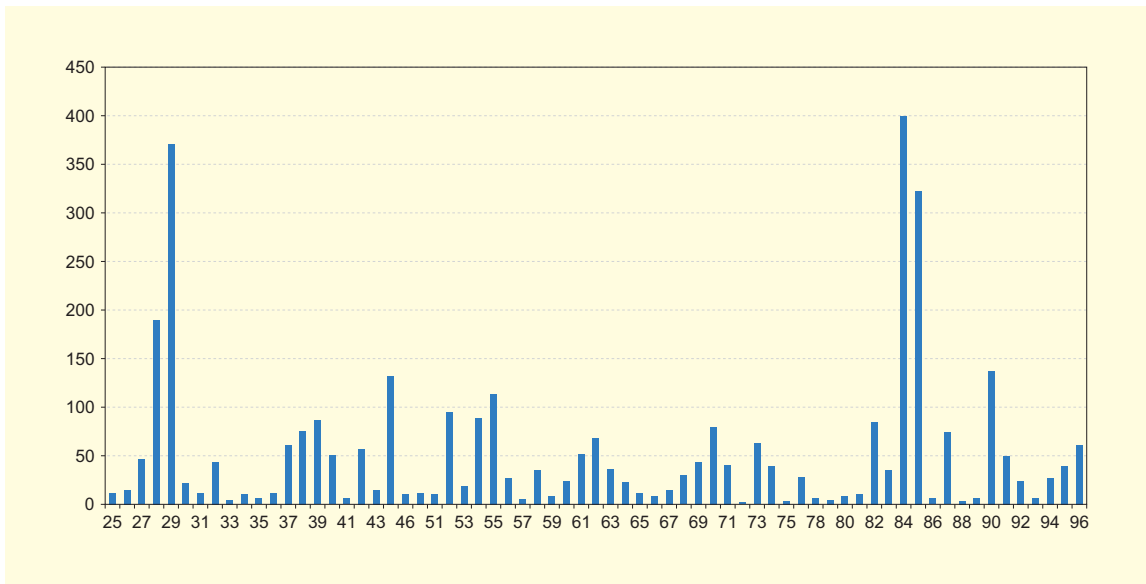
(단위: 개, %)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10.0~	3	0.1	4.0~4.9	62	1.8
9.0~9.9	6	0.2	3.0~3.9	1,548	43.8
8.0~8.9	39	1.1	2.0~2.9	1,029	29.1
7.0~7.9	58	1.6	1.0~1.9	459	13.0
6.0~6.9	96	2.7	0.1~0.9	115	3.3
5.0~5.9	116	3.3	전체	3,531	100.0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그림 24] FTA 수입비중 20% 미만 품목(실행세율>DDA양허세율)

(단위: 개)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표 14〉 전체 공산품(실행세율>DDA양허세율)

(단위: 개, %)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관세율 인하 폭	품목수	비중
10.0~	7	0.1	4.0~4.9	195	2.6
9.0~9.9	23	0.3	3.0~3.9	3,078	40.8
8.0~8.9	80	1.1	2.0~2.9	2,359	31.3
7.0~7.9	126	1.7	1.0~1.9	942	12.5
6.0~6.9	273	3.6	0.1~0.9	238	3.2
5.0~5.9	226	3.0	전체	7,547	100.0

출처: 관세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마지막으로 DDA 협상 이후 관세 인하가 필요한 전체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폭을 살펴보면, 대부분 2~4%p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p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품목이 전체의 약 72% 차지하고 있다.

V. 정책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관세율 수준은 8%이다. 그리고 FTA 발효로 발생하는 관세율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역외세율)을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율 정책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FTA 환경 아래서의 중심관세율 구조의 기본관세율 수준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의 수입액이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부과액의 70% 이상이 기본관세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심관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더 높다. 특히 관세부과액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을 통해 약 80%, WTO 세율을 통해 12%의 관세부과액이 적용되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FTA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본관세율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중심관세율 체계는 공산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었고, 농산물은 예외가 많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구조와 이에 따른 중심관세율 체계를 논의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밖에도 기본관세율은 FTA 등 모든 통상 협상에 중심이 되는 관세율 체계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세율 정책을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세율임을 감안할 때 기본관세율 체계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WTO DDA협상이 지지부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WTO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또 다른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DDA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WTO DDA협상에 의해 관세 인하가 필요한 전체 공산품의 비중은 수입액 대비 약 30%이고, 이 중에서도 FTA로 수입되는 비중을 감안하면, WTO DDA로 인해 관세인하 충격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FTA로 인해 WTO DDA협상에 의한 관세

“
**FTA로 인해 WTO DDA협상에 의한
 관세인하 충격이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DDA협상이
 처음 논의되던 2000년대 초에 비하면
 관세인하 충격이 FTA로 인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하 충격이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DDA협상이 처음 논의되던 2000년대 초에 비하면 관세인하 충격이 FTA로 인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FTA 활용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고 WTO에서 진행 중인 IT품목, 환경품목 등에 대한 분야별 무세화가 확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의 결과가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FTA가 확산되면서 FTA 활용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국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FTA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원산지 검증 자체도 엄격해지고 있는데,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유를 보면, 실질적인 요건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인 경우가 더 많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형식적·절차적 문제로 인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실질적 요건보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관세청, 내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Page.do?mmenu=1&smenu=3>
 정재호·신상화,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부표〉 HS 코드 2자리 품목명

HS	품목명
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8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3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3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5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6	짚·에스파르트(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50	견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2	면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6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래

〈부표〉의 계속

HS	품목명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6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7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8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도자제품
70	유리와 유리제품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
74	구리와 그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납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92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부표〉의 계속

HS	품목명
9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6	잡품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는 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의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유례 없는 전세가격의 폭등은 반전세와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처럼 월세형태의 임대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까지도 가구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주거지원정책을 통한 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지원정책은 대체로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하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 나아가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스피로버(Spillover)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은 거시경제 안정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 다기보다는 각 정권마다 산발적이고 통합되지 못한 형태로 펼쳐진 주택공급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주거취약계층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혼부부, 1인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노인단독 가구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는 유형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거급여가 개별 급여화되고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면서 수요 측면의 주거비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르르게 되었다.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소득보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echoi@kipf.re.kr)

장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대상과 급여수준을 상당히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공급 측면의 지원 및 용자지원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로 제도가 확대되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지원 수혜의 증복성과 중첩성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부문 재정지출과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거바우처를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

우리나라의 주거지원분야 재정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2016년 기준 27개의 사업에 대하여 약 18조원이 투입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는 2016년 전체 복지 지출 123조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비지원에 1.1조원, 주택개량사업에 0.2조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7조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금에 대한 용자사업에 9.6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대금 용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총 16.6조원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조달되고 이차가 아닌 용자금액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일 수는 있다.

주거부문 재정지출은 2016년의 경우 일반회계 1.2조원, 특별회계 0.2조원, 주택도시시기금 17조원으로, 일반재정이 전체 주거지원 재정지출의 약 7.4%인 1.4조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청약통장을

“
개편된 주거급여는 대상과 급여수준을 상당히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공급 측면의 지원 및 용자지원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로 제도가 확대되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지원 수혜의 증복성과 중첩성이 발생하고 있다.
 ”

기반으로 하는 주택도시시기금의 비중이 약 92.6%로 매우 크다. 일반재정의 투입은 주로 수요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데,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급 측면의 지원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요자에 대한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자지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 및 분양에 지원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 1〉 주거부문 재정지출

(단위: 억원)

	소관	사업명	회계	2012	2013	2014	2015(A)	2016(B)	B-A
주거비지원	국토부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일반회계	-	-	-	157	10,289	△940 ¹⁾
	복지부	주거급여(집수리포함)	일반회계	5,194	5,691	7,285	11,073	-	-
		긴급복지		589	971	699	1,013	1,013	0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		43	40	39	49	32	△17
소계				5,826	6,702	8,023	12,292	11,334	10,115
주택개량	국토부	재정비축전시범사업지원	일반회계	650	1,800	1,250	1,150	50	△1,100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740	850	500	481	310	△171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용자	주택도시시기금	300	-	-	-	-	-
	산업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에특회계	311	411	671	612	489	△123
		에너지바우처		-	-	-	1,058	915	△143
	환경부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	환특회계	30	30	21	14	-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60	192	288	370	344	△26
	국토부	주거환경개선지원용자(기존주택개선)	주택도시시기금	50	45	130	30	255	225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	농특회계	93	229	192	225	287	62
	복지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일반회계	19	19	17	15	-	-
소계				2,253	3,576	3,069	3,955	2,650	△1,165
공공임대·분양 (공급지원)	국토부	영구임대주택 출자	주택도시시기금	5,213	4,397	2,109	1,959	715	△1,244
		국민임대주택 출자		4,657	6,211	7,114	2,886	3,173	287
		행복주택 출자		-	-	1,425	3,878	6,595	2,717
		임대주택리츠 출자		-	-	4,083	9,702	9,630	△72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2,769	1,998	3,996	5,315	4,438	△877
		전세임대경상보조 출자		298	379	566	660	607	△53
		국민임대주택 용자		9,605	14,458	13,008	6,090	7,086	996
		공공임대주택 용자		29,730	28,810	25,190	19,839	19,899	60
		행복주택 용자		-	-	2,869	6,576	6,616	40
		임대주택리츠 용자		-	-	-	3,240	2,111	△1,129
		공공분양주택 용자		47,868	16,424	11,254	8,363	4,618	△3,745
		준주택지원 용자		900	1,374	1,237	301	206	△95
		매입임대 용자		700	-	-	-	-	-
다가구매입임대 용자	-	-	-	5,575	4,825	△750			
소계				101,740	74,051	72,851	74,384	70,519	28,623

〈표 1〉의 계속

(단위: 억원)

	소관	사업명	회계	2012	2013	2014	2015(A)	2016(B)	B-A
주택자금대출 (수요지원)	국토부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주택도시 기금	1,097	1,097	1,097	1,074	1,074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61,500	86,740	112,372	108,750	94,530	△14,220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보전		-	550	1,150	1,593	1,341	△252
	금융위	금리우대보증자리론	일반회계	67	214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영 (주택신용보증계정)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4,183	3,202	4,536	3,661	4,340	679
소계				66,877	91,803	119,155	115,078	101,285	△13,793
총계				176,666	176,132	203,098	205,709	185,788	23,780

주: 주거급여 사업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였으므로 2016년 국토부 예산에서 2015년에 배정된 복지부와 국토부 예산의 합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1. 2012~2015년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사업평가』, pp. 3-4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은 각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금융위원회 2016년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금융위원회)』, p. 101을 참조

III. 주거지원정책 현황: 수요 측면 지원과 공급 측면 지원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수요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등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점유 형태별로는 자가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주거비 지원, 주택유지보수 지원, 주택구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가의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있고, 주택유지보수 지원으로는 노후주택 개량, 에너지비 보조 등의 정책이 있다. 이외에도 주택구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도 자가주택 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원은 현금 혹은 바우처 형식의 임대료 지원으로 이루어지거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임대료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임차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은 직접적인 주택의 건설과 공급 증가를 통하여 주거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 지원과 중산층 이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건설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택지공급가격을 할인하거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택지를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주택 건설비에 대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금융지원 방식,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식이 있다. 공급 측면의 지원도 자가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대하여 출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임차가구에 대한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이며, 공공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출자 및 융자 등은 자가가구에 대한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표 2〉 소득계층별 수요지원 및 공급지원 제도

소득 계층	수요지원					공급지원														
	자가		임차			자가		임차												
1분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등	- 주택구입 자금대출 - 주택구입 자금대출 이차보전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 - 농어촌주택개량 자금대출	- 긴급복지 -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지원 - 노후임대주택 개선	전세 자금 대출	공공분양주택 용자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영구임대주택 공급 -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리츠 공급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시장기능 일임									
10분위											시장기능 일임									

주: 1. 주택구입자금대출 세부사업: 내집마련 디딤대출, 공유형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 구입자금
 2. 주택자금대출 세부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전세자금

한편,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도 간접적인 공급 측면의 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또 토지이용 규제나 주거밀도 규제 등의 완화 등도 공급 측면의 주거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IV.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의 신규건설 목표치 달성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이 주로 주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책대상도 최저소득계층에서 최근에는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그 포괄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 호로, 전체 주택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

〈표 3〉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전체주택 수 대비 비율

(단위: 천호, %)

구분	전체 주택	총공공임대	영구임대(B)	50년공공(C)	국민임대(D)	5,10년(E)	사원임대(F)	매입임대(G)	전세임대(H)
2005	13,223	1,243 (9.4)	190 (1.4)	92 (0.7)	77 (0.6)	636 (4.8)	39 (0.3)	210 (1.6)	- (0.0)
2006	13,534	1,330 (9.8)	190 (1.4)	93 (0.7)	111 (0.8)	651 (4.8)	40 (0.3)	236 (1.7)	9 (0.1)
2007	13,793	1,335 (9.7)	190 (1.4)	100 (0.7)	156 (1.1)	597 (4.3)	30 (0.2)	247 (1.8)	16 (0.1)
2008	14,169	1,341 (9.5)	190 (1.3)	101 (0.7)	258 (1.8)	476 (3.4)	23 (0.2)	269 (1.9)	25 (0.2)
2009	14,456	1,311 (9.1)	190 (1.3)	96 (0.7)	296 (2.0)	391 (2.7)	26 (0.2)	274 (1.9)	39 (0.3)
2010	14,677	1,399 (9.5)	191 (1.3)	101 (0.7)	376 (2.6)	391 (2.7)	28 (0.2)	260 (1.8)	52 (0.4)
2011	15,007	1,460 (9.7)	191 (1.3)	101 (0.7)	432 (2.9)	371 (2.5)	25 (0.2)	275 (1.8)	65 (0.4)
2012	15,306	1,487 (9.7)	191 (1.2)	102 (0.7)	455 (3.0)	354 (2.3)	25 (0.2)	275 (1.8)	86 (0.6)
2013	15,628	1,616 (10.3)	192 (1.2)	103 (0.7)	489 (3.1)	363 (2.3)	29 (0.2)	326 (2.1)	115 (0.7)
2014	15,989	1,709 (10.7)	193 (1.2)	106 (0.7)	521 (3.3)	385 (2.4)	30 (0.2)	358 (2.2)	116 (0.7)

출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 전체주택 수: 국토교통부 국토통계누리 홈페이지(<https://stat.molit.go.kr/portal/cate/partStat.do>)
2. 국토교통부(2015), 『2015 주택업무편람』, p. 470.

임대주택은 약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며, 전체 임대주택 대비 약 63%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고, 영구임대주택(18%), 전세임대주택(10.8%)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2%로 다양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20% 이상으로 큰 나라이고,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는 전체 주택재고의

11~20%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 이하인 국가도 있다. 대체로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자가 비율이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고, 사회주택이 일찍이 발전한 서유럽 국가들은 독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15~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일찍이 발달해 왔던 국가에서도 임대주택시장의 민영화와 자가로의 전

“
**공공임대주택의 물량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

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국가가 많이 보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도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5%까지 다양하다.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이 임대주택 재고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중 자체도 작지만, 공공부문의 역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수준 자체도 낮지만,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비중도 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¹⁾ 보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민영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도 있는 등,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직접적 공급은 줄어들고 민간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7%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주택 등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힘들고, 규모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을 하였다는 점

에서는 괄목할 만하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물량과 비중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적정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소득계층까지를 포괄할 것인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계층과 그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수요를 다양하게 충족하기는 어렵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에 대한 목표와 수적인 확충은 효과적인 임대주택정책이 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권별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정책 목표량 달성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신규건설 위주로 추진되었고, 주로 도심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밀집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주로 택지 확보가 수월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건설은 노동시장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심각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반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형태의 신규공급에도 원인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LH공사의 신규건설물량을 위주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보유 택지의 소진 및 LH공사의 경영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과정 외에도 노후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1) 독일의 경우 자가비율이 45%(2003년)로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그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잘 발달된 나라이다.

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와 낮은 임대료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임대주택의 확충은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및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명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향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거나(매입임대), 기존주택을 전세하여 임대(전세임대) 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각화 하고 있다. 지역별 임대주택수요계층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충분히 확충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등의 적극적 공급정책과 정부와 주택기금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진미운(2015)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의 71%가 LH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간업체가 20%이며, 지자체는 9%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신규건설에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으로 다양화 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나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주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택처럼 주택조합, 주택협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시장임대율 수준에 대한 가구 부담의 증가는 수요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임대주택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주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택처럼
 주택조합, 주택협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대료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에 비해 그 종류와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각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어 통합된 지원체계는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정확한 정책적 지향점이 없이 각 정권마다 각종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경향이 있었다. 1998년 국민임대주택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2009년에는 2018년까지 10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이 추진되면서, 2018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8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각 정권들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임차 대상자와 임대기간, 정부지원체계, 사업주체, 공급방식 등이 일관성이 없이 각각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입주 대상자 자격이 되는 소득계층도 저소득층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공공주택 유형에 따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수혜액의 차이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하에서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

라 소득기준의 일관성이 부재하다.

넷째, 임대료 산정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수혜액의 차이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해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흔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입주자와 비입주자,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김혜승(2004)은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수혜액은 787만원, 국민임대주택이 152만원, 영구임대주택은 135만원, 50년 공공임대주택은 1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보조의 수혜자는 74만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혜자는 51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을 통일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너무 복잡하고 주택 공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통일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하에서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혜택은 상당히 크다. 공

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입주만 하게 되면 상당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재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의 항구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4년 주택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자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소득분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분위비율		분위비율	
1분위	20.32		6.28	
2분위	14.57		12.89	
3분위	18.19		17.55	
4분위	17.27		13.21	
5분위	7.6		11.78	
6분위	10.12		17.18	
7분위	3.97		2.32	
8분위	3.68		10.01	
9분위	2.69		6.72	
10분위	1.61		2.06	

출처: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V.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이제 막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을 맞고 있다.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주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라기보다는 생계급여를 보충하는 소득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분리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급여수준도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질임대료를 급여로 지급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소득보다 높은 대상가구는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임차료 보조액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수요 측면의 임대료 지원정책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공급 측면 정책에서의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의 주거급여는 임대주택 공급정책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공급 측면의 정책과 연계성과 일관성이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급여의 정책대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로 임대주택 시장의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거급여의 대상과 급여수준 등 제도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주거급여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주거비 부담 완회는 생계급여 확대 등 소득보장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원정책이 소득보장정책과 다른 것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급여의 정책목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으로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통합된 틀 속에서 바

“
**주거급여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통합된
 틀 속에서 바라보면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 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라보면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 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적절한 주택을 탐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확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거급여의 확대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경우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게 되지만 증가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 임대료만 상승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

기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거급여를 소비자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무조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온정주의(paternalism)적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과 주거급여의 중복수혜는 문제가 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약 3% 정도로 낮고 주거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들 대상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지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급여의 중복성과 중첩성이 발생하고 있다. 2014 주택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약 35%가 주거급여도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임대료 체납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여전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계층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주거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거급여를 통한

〈표 5〉 주거급여 지원 실적(2010~2014)

(단위: 천가구,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가구 수(A, 천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전체 수급가구 수(B, 가구)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주거급여 지원가구	합계(C=D+E)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현금주거급여(D)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현물주거급여(E)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일반가구 대비(C/A)	4.70	4.36	4.02	3.90	3.69
	전체 수급가구 대비(C/B)	92.8	90.7	88.4	88.5	85.1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2014), 내부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 p. 463 재인용

〈표 6〉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상대 비율

(단위: %)

거주구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장기공공임대주택	22.90	46.40
단기공공임대주택	12.27	4.69
전체	35.17	51.09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임대료 지원이 될 필요는 없다. 즉,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좁히더라도 주거급여액은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액 선정에 쓰이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단순성도 문제가 된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 및 세종시, 기타 등 4급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임대료가 지역별 임대료의 격차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의 임대료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 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고 주거급여의 전달체계도 상당히 개

편됨에 따라 과도기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거환경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보와 전산망, 인력 등의 효과적 통합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수급자 정보와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망,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거환경 파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도 있다. 본격적인 수요자 지원의 확대에 선행하여, 주거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세부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 가구원 수별 지역별 기준 임대료(2015년)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7인	36	33	25	23
8~9인	39	36	27	25
10~11인	42	39	29	27

주: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시키되,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출처: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안내」, p. 96.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거급여의 개편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요자 측면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반응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측면의 지원 강화는 공급의 확대보다는 임대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등에서는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거급여를 소비자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무조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온정주의(paternalism)적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 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주거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확충은 수요자 측면의 지원 확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현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형단지 위주의 신규 건설은 지양하고,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택 협회 등 다양한 공급주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 김승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위원회, 2015.10.
- 김혜승 외, 『주거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4
- 국토교통부, 『2016년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6.1.
- _____,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 2015.
- _____,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안내』, 2015.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14.
-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12.
- 이주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2.
- 지규현, 「주거복지 수요의 확대와 정책방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제103호, 2013.2.
- 진미운, 「주거복지성장기의 과제」, 『부동산포커스』, 2015.
- _____,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 진익·한노덕, 『주거안정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 OECD, *Housing Markets and Structural Policies in OECD*, 2011.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6-12

> 아메리카

[미국-유산세 신고 시의 기본 신고서(Basis Reporting)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 발표]

-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및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2016년 12월 2일, 유산세(estate tax) 신고시의 '기본 신고서(Basis Reporting)' 제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T.D. 9797))'을 발표함
- '기본 신고서(Basis Reporting)'란 'Form 8971과 Schedule A' 서식을 말하는데, 2015년 7월 31일에 내국세법(IRC) 제6035조 개정으로 개정일 이후로 피상속인의 유산(estate)으로부터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예정인 재산의 최종 평가 관련 신고서(기본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유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 시점에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이며, 유산집행인(executors)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세를 신고·납부함
 - 유산집행인은 총유산과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가 면세액(2016년 기준 454만달러)을 초과하면 Form 706에 의해 유산신고를 해야 하며, 유산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 이후 9개월 이내

에 해야 함

- 기본 신고서는 Form 706의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내에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함
- 기본 신고서상의 최종 재산의 평가는 고인의 사망 시점이나 대체평가일(alternate valuation date)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적용하여야 함
 - 개별 자산의 경우 재무부가 평가방식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예외적인 경우 사용가치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 Form 706에서도 재산의 평가액이 기재되거나 기본 신고서상의 평가액은 최종·확정적인 금액이므로 Form 706상의 가액과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유산집행인 등이 기본 신고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제출함에 있어,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예고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과 국세청 고시에 의해 신고기한 연장이 계속되어 왔음
 - 2016년 3월 4일에 발표한 예고 시행규칙에서,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Form 706에 의한 신고를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31일까지 기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산집행인 등에게 2016년 3월 31일까지의 기본 신고서 제출의무를 임시적으로 면제함
 - 또한 2016년 3월 24일에 발표한 국세청 고시(Notice 2016-27)에서,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Form 706에 의한 신고를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30일까지 기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산집행인 등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본 신고서 제출의무를 임시적으로 면제함

- 이번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지난 국세청 고시(Notice 2016-27)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함
 - 즉, 2015년 7월 31일 이후 유산세 신고 대상 유산 집행인 등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기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그 제출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는 취지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미국-2017년도 적용 차량의 기준거리비율(Standard mileage rates)에 대한 국세청 공지]

- 2016년 12월 14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사업용(business), 의료용(medical), 자선단체용(charitable) 목적의 차량 운용에 대한 2017년도 비용공제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거리비율(standard mileage rates)을 국세청 고시(Notice 2016-79)를 통해 발표함
 - 기준거리비율의 산정은 차량운용에 대한 매년의 고정비 및 변동비 분석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결정함
- 일반적으로 차량 운용에 대한 비용공제에 대해서는 기준거리비율법과 실제사용비용법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차량에는 승용차(car), 밴(vans), 수거차(pickups), 배달용 트럭(panel trucks)가 포함됨
 - 기준거리비율법은 마일(mile)당 표준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행거리를 곱해서 총비용을 산정하고 실제 지출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자가소유 차량, 리스 차량 모두 적용 가능함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지비, 수리비, 유류비 (세금포함), 보험료, 등록비, 오일 교체비용 등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비용들임
 - 기준거리비율법을 적용하려면 차량 구입 첫해에는 반드시 기준거리비율법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실제차량비용법과 기준거리비율법 중 선택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음
- 또한 차량운용에 있어 업무용과 개인용 혼합사용의 경우 주행거리 비율로 업무용과 개인용을 나누어야 하며, 업무용 관련분만 비용공제가 가능함
 - 업무에 사용된 비율은 납세자가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기준거리비율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차량이 수정가속상각법(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에 의해 감가상각이 되어 왔던 경우
 - 차량이 추가감가상각비공제(bonus depreciation deduction)가 적용되었던 경우
- 이번 국세청 고시에서 발표한 2017년도 적용 기준거리비율은 전년 대비 대체로 인하되었음
 - 사업용: 마일당 53.5센트(2016년도 54센트)
 - 마일당 53.5센트 중 25센트가 감가상각비 귀속분임
 - 의료용: 마일당 17센트(2016년도 19센트)
 - 자선단체용: 마일당 14센트(2016년도 14센트)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멕시코-2017년 예산안 승인]

- 멕시코 예산안이 2016년 11월 의회의 승인¹⁾을 얻음
 -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하도급 용역 계약에 대한 신고와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임
 - 그 밖에 법인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률 조정이나 조세혜택에 관한 개정 등과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개시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된 개정 등이 있음
- 하도급계약²⁾의 수급사업주가 용역근로자에게 용역대가의 지급과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에 관한 신고와 정보교환 의무를 부여함
 - 소득세법상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로부터 수급사업주가 용역근로자에게 용역수행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사업주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서비스수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제한함
 -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에게 제출할 문서는 용역근로자에게 급여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용역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사업자의 사회보장세 납부내역임
 - 또한, 원사업주가 관련 문서를 수급사업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함

- 원사업주의 소득세법상 비용공제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주가 용역근로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도록 강제함
-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감가상각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손익인식기준과 조세혜택 등이 포함됨
 -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감가상각률을 일부 조정³⁾함
 - 감가상각 대상에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추가하고 매년 25%로 상각함
 - 탄화수소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별도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10%의 상각률을 적용함
 -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효율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를 최대 17만 5,000페소⁴⁾에서 25만페소로 상향조정함
 -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사업자가 현금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적격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증가액의 30%를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함
 - 직전 3년 동안의 적격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평균보다 증가된 금액의 30%를 공제함
 - 멕시코 역내에서 발생한 투자와 비용만 공제대상임

1) Tax Notes International, pp. 754-756(2016.11.21.)

2)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을 받는 원사업주와 하도급계약 근로자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주로 구분됨

3) 멕시코 소득세법에서는 자산 종류별로 법에서 정한 상각률을 한도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를 허용함

4)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연 17만 5천페소를 한도로 가능하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에너지 효율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를 다른 자동차보다 높게 개정된 것임

-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은 제품, 원재료,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함
- 예술, 고도로 전문화된 스포츠, 전기 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산업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개정안은 영업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방법의 선택, 일부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함
- 영업 개시 전⁵⁾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개정함
 - 이번 개정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납세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기 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이용될 건물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⁶⁾임
 - 개정안은 사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다가 사업이 개시된 후 일괄하여 공제하는 방법과 월 단위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다음 달에 공제하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업개시 후 일괄 공제하는 방법은 지출이 발생한 때부터 공제되는 시점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월 단위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납세자는 공제대상 비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을 안분근거, 사업개시 예정일과 지출에 사용된 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증빙을 유지해야 함
- 수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산이 리스계약에 따라서 멕시코 역외로 수출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 용역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하는 시점에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 용역대가가 지급되는 시점이 신고 시점임을 명확히 함
-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보기술용역(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의 수출을 포함함
 - 단,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든 인프라, 인적자원, 재산, IP주소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멕시코에 소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취소 요건에 매입자의 승인을 추가하여 매입자의 승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개정함
- 그 밖에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에 전자 세무조사를 추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5) 영업개시 전 기간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일시적인 사용이 시작되기 전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나 투자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함. 한편, 납세자가 영업개시 추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간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함

6) 사례에서 건물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추정을 근거로 안분하여 납부해야 함



[브라질-예규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절차 개시]

- 브라질 과세관청은 2016년 11월 30일, BEPS Action 5에 따른 예규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⁷⁾
 - BEPS Action 5는 유해조세환경 외에도 예규(ruling)에 대한 강제적 정보교환을 담고 있어 이의 입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브라질의 자문·다양성해결·해석 선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보다 구체적 대상으로 이전가격, 반도체산업의 지원프로그램,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제도를 언급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개의견수렴절차는 2016년 12월 1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유럽

[프랑스-국세불복 시 행정소송 기한 개정]

- 프랑스는 2016년 11월 2일, 납세자가 국세불복 시 심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안 된 경우, 과세당국의 심사청구 결정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신청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는 법안을 신설함⁸⁾
 - 현행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과세처분에 대해 항소신청을 하였으나 과세당국이 6개월

간 의사결정 및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암묵적 거절(implicit dismissal)’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으로 제정되면 2016년 5월 1일 이전 과세당국에 심사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프랑스-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도입 제안]

-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National Assembly's Finance Committee)는 2016년 11월 21일, 프랑스 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프랑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우회이익세’ 규정의 도입을 승인함⁹⁾
 - 이번 도입안은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영국의 ‘우회이익세’ 제도를 참고함
 - 이번 도입안은 전체 의회 토론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우회이익세는 비거주기업이 고정사업장 없이 프랑스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프랑스 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비거주기업의 수익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인 33.33%에 5%를 추가로 과세함

7) Normative Instruction Rfb No. 1669 Of November 30, 2016(<http://idg.receita.fazenda.gov.br/sobre/consultas-publicas-e-editoriais/consulta-publica/instrucao-normativa-que-altera-a-in-rtb-n-o-1-396-de-2013>).

8) EY, "French Government issues decree potentially restricting time to file a tax case before French administrative courts," 2016.12.01.

9) Tax Notes International, "Panel approves Diverted Profits Tax," 2016.11.21.

- 대리인은 비거주기업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 상품 보관 · 배송 장소, 프랑스 거주인이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포함함
- 단, 비거주기업이 대리인을 통해 프랑스 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대리인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우회수익세 적용이 제외됨

■ 이번 우회이익세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며, 대기업 판단기준은 EU회계지침 상 기준에 따름

- EU 회계지침에 따르면, 대기업은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상 금액이 200만유로를 초과, 총 매출액이 400만 유로를 초과, 종업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프랑스-2016년 추가 세법개정안 발표]

- 프랑스는 2016년 11월 18일 법인세, 소득세, 조세행정의 추가적인 세법개정안(Amending Finance Bill for 2016)을 발표함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프랑스 기업이 비거주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기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경영참가소득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식양도소득을 혁신 중소기업에 재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부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자사주 보유액 면제

금액 한도 설정, 해외자산 미보고 시 가산세 부과 있음

- 조세행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여부 감사 시행, 조세회피를 입증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 온라인 세무감사 실시가 있음
- 이번 세법개정안은 의회 투표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 법인세¹⁰⁾

- 프랑스와 상호협력을 맺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이 프랑스 기업의 지분을 직 · 간접적으로 95% 이상 보유한 경우 프랑스 기업이 외국 기업에 배당 지급 시 3% 추가과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 현행 규정에서는 프랑스 기업이 국외 기업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지급액에 3%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나 연결그룹 간 배당지급의 경우 추가과세를 면제하고 있음¹¹⁾
-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와 상호협력을 맺은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기업도 배당지급액에 대한 추가 과세를 면제하여 면제적용 대상을 확대함
- 상호협력을 맺은 국가는 프랑스가 정한 '비협력국가(non-cooperative states or territories; NCSTs)'¹²⁾에 해당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와 상호협력협력을 맺고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어야 함

10) IBFD, "France-Amending Finance Bill for 2016-corporate taxation," News IBFD, 2016,11,23.

11) IBFD, "Country Analyses, France-Corporate Taxation," section 1.10.3.1.

12) 비협력국가는 EU회원국이 아니거나, OECD의 블랙리스트 국가에 속하거나, 프랑스와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를 말하며, 2016년 1월 1일 기준 보츠나와, 브루나이, 과테말라, 마셜, 나우루, 니우, 파나마가 포함됨



- 경영참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면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규 도입함
 - 경영참가 여부는 자회사의 지분을 5% 이상, 2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의결권 상관없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 자본이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신규도입 함
 - 프랑스가 정한 NCSTs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분을 판매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경영참가소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세이프하버규정(safe harbor rule)을 자본이득 면제에도 적용함

나. 소득세¹³⁾

- 혁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SME innovation savings plan)에 투자한 주주가 해당 주식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을 새로운 혁신 중소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을 신규 도입함
 -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신규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발생한 양도소득을 혁신 중소기업에 투자하

지 않을 때 양도소득에 과세함

- 부유세 과세 시 자사주 보유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사주 보유액은 사업용 자산(개인이 출자한 자산 제외)의 기초 자산가액을 한도로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생명보험계약, 신탁 등 외국보유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자산에 대한 추가 과세액의 80%를 가산세로 부과함
 -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자산에서 얻은 총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음

다. 조세행정

- VAT환급이 적절한지 감사하는 제도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하며, 감사 이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제3자(고객, 공급업자, 관련 전문인)로부터 납세자가 프랑스에서 과세활동을 하거나, 프랑스 거주인임을 증언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과세당국은 외국인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증언요청일로부터 8일 이전까지는 제3자인 증언자에게 공지해야 함
- 온라인 세무감사를 시행하며, 세무감사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회계장부

13) IBFD, "France—Amending Finance Bill for 2016—individual taxation," News IBFD, 2016.11.23.

를 과세당국에 송부해야 하며, 감사기간은 최대 6개월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네덜란드-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업을 공지하는 기한 연장]

- 네덜란드 정부는 2016년 11월 15일,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업을 과세당국에 공지하는 기한을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8개월 연장할 것을 발표함¹⁴⁾
 - 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유효하며, 새로운 제출 기한은 2016년 9월 1일까지임
- 다국적 기업에 속한 네덜란드 기업은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별 보고를 해야 하는 최종모회사 및 거주국가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아직 국가별 보고 규정이 입법된 국가 및 국가별 보고서 교환에 관한 다자간협약(MCAA CbC)을 맺은 국가가 불명확함
 - OECD BEPS Action Plan 13에 의하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 모회사국에 국가별 보고서 규정이 없거나 MCAA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이차적 메커니즘에 의해 사전 등록된 다국적회사 내 기업 또는 자회사가 대신 국가별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OECD는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원하는 국가 간 매칭작업을 진행 중이며, OECD의 작업 완료 이후 네덜란드 기업이 최종 제출 모회사와 거주국가를 과세당국에 공지하도록 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및 거주국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국가별 보고서 교환에 관한 다자간협약(MCAA CbC)’ 제8조에 따르면 MCAA에 서명한 국가는 OECD에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 원하는 국가를 2017년 7월 1일까지 OECD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지에 따른 국가 간 매칭 작업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스위스-부정 지급액의 법인세 공제를 제한하는 초안 규정 발표]

- 스위스 정부는 2016년 11월 16일, 기업의 부정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⁵⁾
 - 부정 지급액은 징벌적 성격의 지급액으로 벌금, 과징금 등을 말하며, 스위스 기업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과징금도 포함함
 - 2016년 말까지 해당 규정에 대해 의회 토론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발표되지 않음
- 스위스 금융기관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큰 금액의 과징금에 대해 비용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표한 것임
 - 스위스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의 조세회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미 국세청에 납부한 수백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몇몇 EU국가에서도 자국민의 조세회피에 동

14) KPMG, "Netherlands: Country-by-country reporting, 2016 notification deadline is extended," 2016.11.23.

15) Tax Notes International, "Bill Banning Deductions for Bribes And Fines Approved," 2016.11.21.



조한 이유로 조사가 진행 중임

- 현행 규정에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규정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음
 -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불법목적의 영업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과징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2016년 추계예산안, 2017년 재정법 초안 발표]

- 영국 재무장관은 2016년 11월 23일 ‘2016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2월 5일 ‘2017년 재정법(finance bill 2017)’ 초안을 발표함¹⁶⁾
 - 2017년 재정법 초안은 2016년 추계예산안 내용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¹⁷⁾
 -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로 나누어 세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 법인세

- 법인세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자비용이 큰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손실금액 이월 공제 한도 감소, 특허박스 적용대상 확대가 있음
 -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 20%에서 17%로 인

하할 예정이며, 기업의 조세부담은 6.7억파운드 감소할 예정임

- 이자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며, EBITDA의 30%를 한도로 공제하고 미사용 공제금액은 3년간 이월 가능하도록 제안했던 것에서 5년간 이월을 허용할 예정임
 - 이자비용 과다 여부는 연결그룹 전체 이자비용이 2천만파운드를 초과, 이자비용이 영국 내 과세소득의 20%를 초과, 영국 그룹 내 순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전체그룹의 이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손실 이월공제 가능 금액을 순이익의 50%(5천만 파운드 한도)로 제한하며, 은행업의 경우 순이익의 25%만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함
- 특허박스제도의 경우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용분담 약정에 의해 R&D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함

나. 소득세

-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인적공제금액 향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상향조정, 비거주인의 ‘간주거주(deemed resident)’ 규정 강화, ISA 납입 한도 인상,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범위 확대
 - 2020년까지 인적공제금액을 현행 1만 1,500파운드에서 1만 2,5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3만 2,000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16) IBFD News, "United Kingdom—Autumn Statement 2016—summary," 2016.11.24., 영국 국세청, "Overview of legislation in draft," 2016.12.05.
 17) 영국 국세청, "Finance Bill 2017: government legislates for new tax changes," 2016.12.05.

- 영국의 소득세율은 3만 2,000파운드까지 20%, 3만 2,000~15만파운드까지 40%,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됨
- 영국의 간주 거주인 판단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20년 중 15년 이상 영국 거주자였던 경우 또는 영국 출생 후 해외 거주자였다가 다시 영국 거주자가 된 경우 영국 거주자로 간주함
 - 영국 거주자로 판정받기 전 비거주신탁을 설립한 경우 해당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
- 상속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특히 외국기업, 신탁)가 보유한 영국 내 자산을 상속 시 영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함
- ISA납입한도를 15,240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인상하며, Junior ISA, Child Trust Fund의 납입한도도 4,128파운드로 상향조정함
- 현물(benefits in kind)로 주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조세혜택을 폐지함
- 일반적인 보험료에 과세하는 보험프리미엄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함
- VAT 부정환급 등 VAT 사기에 연루된 경우 3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 신설함
- 은행부담금(bank levy)의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영국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과 관련된 부채의 경우 은행부담금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혼성불일치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영국 재무부는 2016년 12월 9일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ance)을 발표함
 - 영국은 OECD BEPS Action 2의 권고사항에 따라 혼성불일치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의견 수렴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설명, OECD BEPS Action Plan 2의 일부 예제 및 고정사업장을 통한 혼성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추가 예제를 포함하였으며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배경 및 시행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 보고서상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는 혼성불일치 유형별로 혼성불일치로 판단하는 조건,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다. 간접세

- 간접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VAT 단일세율제도 개정, 보험프리미엄세율 인상, VAT 부정환급 연루 시 가산세 부과, 은행부담금 과세범위 축소가 있음
-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 FRS)¹⁸⁾를 이용하는 기업 중 지출비용이 적은 기업은 현행 4~14.5%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대신에 보다 높은 세율인 16.5%의 세율을 적용함

18) 단일세율제도는 일종의 간이과세제도로 소규모 사업자의 VAT 거래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납부하기 위한 제도로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제도임. 연간 매출액이 1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함



〈표 1〉 영국의 혼성불일치 유형별 과세처리 방법

불일치 유형	관련 첩터	우선규정	후속규정
D/NI	제3장: 혼성금융상품을 통한 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제4장: 혼성이전을 통한 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제5장: 혼성지급자를 통한 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제6장: 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	영국 PE의 비용공제 부인	-
	제7장: 혼성수령자를 통한 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제8장: 다중수령인을 통한 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
D/D	제9장: 혼성실체를 통한 이중공제	모회사의 비용공제 부인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제10장: 이중국적을 통한 이중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거주기업: 비용공제부인 • 다국적기업: 모회사관할국에서 비용공제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 영국 PE에 지급하는 비용 공제 부인
간접 D/NI	제11장: 제3국으로 이전된 혼성불일치	지급자 비용공제 부인	-

출처: 영국 재무부, "Draft Guidance—Hybrid and Other Mismatches," pp. 8~9, 2016.12.

있으며 각 혼성불일치 유형별 과세처리는 〈표 1〉과 같음

- 제12장부터 제14장까지는 혼성불일치 관련 기타 규정 및 행정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제3장의 '혼성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통한 불일치'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 혼성 금융상품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4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¹⁹⁾
 - 금융상품의 정의: 대출거래(arrangements), 파생상품 계약, CTA 2010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 발행주식,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UK 회계기준상 금융상품을 포함함
 - 혼성금융상품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금융상품 관련하여 지급이 발생함

- 두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함
- D/NI 불일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 거래 당사자 간 연결 관계가 존재함

- 가이드라인 제4장의 '혼성이전(financial transfer)을 통한 불일치'에서는 혼성이전 거래의 정의, 혼성이전거래를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5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혼성 이전거래의 정의: 금융거래의 이전으로 D/NI를 발생시키는 거래(특히, 환매조건부 채권(repo), 주식대여 거래가 해당함)
 - 혼성 이전거래를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혼성이전거래 발생
 - 혼성이전거래하에서 대금지급 발생

19) 제3장~제10장 중 제6장을 제외하고는 BEPS Action Plan 2에서 제시한 예시와 동일하므로 본 동향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예시 내용은 제외함

- 두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함
 - D/NI 불일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거래 당사자 간 연결 관계가 존재함
- 가이드라인 제5장, 제7장의 '혼성지급자(hybrid payer)/혼성 수령인(hybrid payee)을 통한 불일치'에서는 혼성실체 정의, 혼성 지급자를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5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혼성지급자(수령인)를 통한 불일치란 혼성실체가 대금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서 D/NI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 혼성 실체(entity)의 정의:
 - 해당 실체의 소득이 다른 과세 관할국에서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인식됨
 - 다른 과세 관할국의 세법 규정상 거주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 혼성 지급자 또는 수령인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금 지급이 발생함
 - 소득 지급자 또는 소득 수령인이 혼성실체 정의를 충족함
 -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함
 - D/NI 불일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계약일로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동일한 연결그룹 내 실체임,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화된 거래임
- 가이드라인 제6장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정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BEPS Action 2 권고사항에 추가하여 영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외국에 위치한 모회사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 지급 시 발생하는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함
 - 고정사업장 정의: 영국에 고정된 장소를 두거나 대리인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영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봄
 - 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고정사업장은 다국적기업임
 - 영국 고정사업장에서 비용공제를 함
 - 영국 고정사업장에서 비용공제 시 과세소득이 감소하거나 과세손실이 증가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표 2>와 같음
- 가이드라인 제8장의 '다국적기업 수령인(multinational payee)을 통한 불일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정의, 다국적기업 수령인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5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정의: 최종모회사, 본사의 소재지에서 거주기업으로 판단되고, 다른 과세관할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 다국적기업을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소득 수령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제5장, 7장 혼성 지급자 또는 수령인을 통한 불일치'에서의 기준과 동일함
 - 소득수령인은 다국적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임



〈표 2〉 고정사업장을 통한 영국의 혼성불일치 유형별 과세처리 방법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co는 X국 거주법인이고, 영국에 X branch를 두고 있어 영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X branch가 영국에서 얻은 소득을 모회사인 X Co에 현금으로 지급 시 비용공제 함 • X국은 지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X branch가 현금으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X Co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D/NI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불일치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건 A: 다국적 기업인가? X co는 해외 거주기업이며, X branch를 통해 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수익에 대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A조건을 만족함 2) 조건 B: 영국 고정사업장에서 비용공제를 하였는가? - X branch는 과세소득에서 X co에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였으므로, B조건을 만족함 3) 조건 C: 영국 고정사업장에서 비용공제를 했을 경우 과세소득이 감소하거나 과세손실이 증가하는가? - X branch가 과세소득에서 비용공제를 하고, X branch는 지점수익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 과세소득이 감소하므로 C조건을 만족함
판단결과	A~C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 문제로 보아 영국 거주기업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출처: 영국 재무부, "Draft Guidance—Hybrid and Other Mismatches," Chapter 6, 2016.12.

- 가이드라인 제9장의 '혼성실체를 통한 이중 공제'에
서는 혼성실체를 통한 이중 공제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혼성실체로 판단되어 지급지국에서 공제한 금액
을 소득을 지급받는 모회사 관할국에서도 공제하
여 이중공제를 발생시킴
- 혼성실체를 통한 이중공제로 판단하는 기준: 아
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급지국 및 모회사 관할국에서 모두 비용 공

- 제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함
 - 지급관련 당사자 중 1명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함
 - 지급관련 당사자 간 서로 연결관계가 존재함

- 가이드라인 제10장의 '이중거주를 통한 불일치'에서
는 이중거주를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2가지 기
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이중거주자로 판단됨에 따라 두 과세 관할국에서

- 비용을 공제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 이중거주를 통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기업이 이중거주자로 판단됨
 - 이중 공제가 발생함

- 가이드라인 제11장의 '이전된 혼성불일치'에서는 이전된 혼성불일치로 판단하는 7가지 기준,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이전된 혼성불일치란 혼성불일치의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국적기업의 구조화된 거래를 통해 혼성불일치 효과가 영국 내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지급자의 비용공제를 부인함
 - 이전된 혼성불일치로 판단하는 기준 : 아래 7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이전된 혼성불일치(imported mismatch) 거래에서 지급이 발생함
 - 대금 지급자가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함
 - 이전된 불일치 거래가 여러 개의 연속적 거래 중 하나의 거래임
 - 여러 거래의 연속적 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거래임(고정사업장을 통한 불일치 거래는 제외)
 - 혼성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불일치 거래 유형별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규정 적용 시 관련 거래 당사자에게 과세됨
 - 이전된 불일치 거래에서 영국의 대금 지급자가

대금 수령인과 같은 연결그룹이거나 구조화된 거래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핀란드-중국 게임매출수의 로열티 소득으로 판결]

- 핀란드 법원은 핀란드 게임개발회사가 중국에 게임을 매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라는 1차 판결을 뒤집고 로열티 소득으로 판결함²⁰⁾
 - 중국-핀란드 조세조약에 의해 로열티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10%로 원천징수 하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소득과세 여부가 결정됨
- 쟁점사항은 게임매출소득에 대해 로열티 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이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요약하면 핀란드 기업은 게임 관련 모든 권리를 가지며 중국기업에는 중국 내 다른 앱스토어에 게임을 제공할 권리만 부여됨
 - 핀란드 게임개발기업은 중국기업에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권리는 핀란드 기업이 가짐
 - 중국기업은 중국 내 게임이용자에게 공개적으로 해당 게임을 제공하고, 복사본을 제공하고, 중국 내 다른 앱스토어에 게임을 제공(sub-licence) 하는 것이 허용됨
 - 단, 중국 기업이 게임개발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핀란드 기업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0) KPMG, "Finland: Income on mobile games received from china as royalties," 2016.11.25.



는 불명확함

- 중국회사가 부여된 게임에 대한 권리는 핀란드 기업이 언제든 회수 가능함
- 중국회사가 핀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은 중국내 게임사용자로부터 회수한 금액만큼 지급함

- 핀란드 게임개발회사는 중국회사가 제공받은 게임을 재생산(reproduce) 및 분배할 권리가 있으므로 로열티 소득이라 주장하였으나, 핀란드 과세당국 및 행정법원은 중국회사는 중개인으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재생산(reproduce)할 수 없고, 배분할 권리만 주어진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함
 - OECD모델 주석서 Article 12 14.4를 참조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석서 14.4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배분할 권리만 주어지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항소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사업소득으로 판결한 1차 판결을 뒤집고 중국기업은 핀란드 회사의 게임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로열티 소득으로 판결함
 - OECD모델 주석서 Article 12 13.1을 참고하여 로열티 소득으로 판결한 것이며, 주석서 13.1에서는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수 있고, 대중에게 분배할 수 있는 등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는 로열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헝가리-법인세 인하안 발표]

- 헝가리 총리는 2016년 11월 17일, 현행 10%, 19%의 법인세율에서 9% 단일 세율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함²¹⁾
 - 현재 헝가리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5억포린트(약 20억원)까지 10%, 5억포린트 초과분에 대해 19%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²²⁾
- 발표된 9%의 단일 법인세율은 EU에서 최저 수준이며, 현재 2~3%대의 경제성장률을 3~5%대로 증대시킬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세율 인하를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 기업의 가치분소득이 1.5천억포린트(약 5천 8백억원)가량 증가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헝가리 내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경제부 장관은 2천억포린트(약 8천억원)에 이르는 재정 예비비로 2017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으므로 2017년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2017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 밝힘²³⁾

21) 헝가리 재무부(검색일자: 2016.12.5.)

<http://www.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news/reduction-of-corporate-income-tax-rate-to-9-percent-expected-to-leave-huf-145bn-at-enterprises>

22) E&Y, "2016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p. 606.

23) 헝가리 재무부(검색일자: 2016.12.5.)

<http://www.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news/reduction-of-corporate-income-tax-rate-to-9-percent-expected-to-leave-huf-145bn-at-enterprises>

- 법인세 인하안은 재계 및 노동계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의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이탈리아-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 관련 혜택 규정 개정]

-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 자본과 전문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혜택 규정을 2017년 예산안에 포함함²⁴⁾
 - 조세혜택 규정에는 외국인 거소자(Resident non-domiciled)의 국외소득에 대한 고정세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 조세감면율 인상,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우대비자 발급 등이 포함됨
 - 상기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유의적 변동 없이 연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가. 외국인 거소자(Resident non-domiciled) 관련 조세혜택 부여

- 외국인 거소자(Resident non-domiciled)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고정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혜택을 부여함
 - 이탈리아는 현재 전세계소득 과세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거주자(거소자 포함)의 경우 전세계소득을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²⁵⁾

- 외국인 거소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국외 발생소득에 대하여 연간 10만유로의 고정액을 과세함으로써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부유세를 면제함
 - 국외 발생소득이란 해외투자 및 해외에 소재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포함함
 - 단, 규정의 도입 이후 5년 내에 해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본이익은 상기 고정 세액의 대상에서 제외됨
-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거소자로 간주되어 조세혜택을 부여받음
 - 적용 요건은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15년간 그 상태를 유지, 상기 규정 도입 전 과거 10년 중 9년간 이탈리아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는 것임

나.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 조세혜택 부여

- 과세목적상 거주지를 이전한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감면 혜택은 거주지를 이전한 연도 및 이후 4년간 부여됨
 -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은 조세혜택의 대상에 자영업자가 추가된 점과 세액감면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 것임

24) E&Y(검색일자: 2016.12.5.)

<http://www.ey.com/gl/en/services/people-advisory-services/hc-alert-italy-introduces-special-tax-and-immigration-rules-to-attract-foreign-workers-and-investors>

25)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7-2017," p. 675.



- 혜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24개월 내 국외에서 고용, 자영업 영위 혹은 학위를 취득해야 함

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우대비자(Golden visa) 발급

-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의 투자자 쿼터에 제한되지 않으며 체류 허용기간이 연장되는 우대비자를 발급함
 - 90일 이상 체류하는 유학이나 취업의 경우는 목적에 맞는 장기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동 비자를 바탕으로 체류허가증을 현지에서 신청, 발급 및 갱신할 수 있음²⁶⁾
 - 최초 발급 이후 일정 기간(1~2년)이 경과하면 체류 허가증을 갱신해야 함

- 우대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유지기간 및 적격 분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정부 발행 채권에 2백만유로 이상 투자하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자
 - 이탈리아 회사의 주식에 1백만유로 이상 투자하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자
 - 문화, 교육, 과학연구, 이주 규제, 문화·환경 관련 자산 복원 등 공익 목적 분야에 대한 1백만유로 이상 자산 기부하는 자

- 우대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에게는 입증의무와 보증서 제출 의무가 부여됨

-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리아 투자자금에 대한 법적, 수익적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며, 연간 8,500유로 이상의 수입(의료 부담금 제외)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이탈리아 입국 이후 3개월 내에 투자되었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는 보증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는 데 비해 우대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를 제공하며 최대 3년간 갱신이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덴마크-국외지분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한 과세 결정]

- 덴마크 조세위원회는 2016년 11월 16일, 국외지분에서 발생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해 발생지를 불문하고 덴마크에서 과세할 것을 결정함²⁷⁾
 - 성과보수란 사모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파트너(General Partner)가 관리보수 외에 수취하는 초과이익을 의미함

- 상기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²⁸⁾
 - 납세자는 영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의 덴마크 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해당 펀드의 사회

26) KOTRA, 국가정보 이탈리아-출입국 및 비자제도 참조(검색일자: 2016.12.9.)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28&cdKey=101016&itemIdx=8597&categoryType=005&categoryIdx=250>

27) TAX NOTES International, pp. 746~747(검색일자: 2016.12.2.)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1-21_dk_1.html&WT.z_nav=Pagination&colId=4913

28) IBFD(검색일자: 2016.12.5.)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1-21_dk_1.html&WT.z_nav=Pagination&colId=4913

사가 소재한 다른 국가로 이주함

- 납세자는 외국인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파트너십 투자펀드의 파트너로서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투자 대상 회사는 투자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공함
- 납세자가 덴마크에 다시 귀국하였을 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투자수익과 성과보수를 함께 수취함

■ 덴마크 조세위원회가 발표한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국외 고용과 관련되어 덴마크 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발생한 성과보수에 대해 덴마크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운용수익을 성과보수로써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덴마크 과세목적상 지분의 평가일을 투자시점 혹은 덴마크 귀국 시점 중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덴마크 조세위원회는 외국에서 발생한 성과보수 또한 덴마크 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결론을 내림

- 과세 여부의 판단은 소득의 형태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로부터 발생한 성과보수는 자본이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써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결정함^{29) 30)}
- 거래당사자는 본래 덴마크의 납세자임에 따라 덴마크 귀국일자가 지분의 평가일로 간주되고, 해

당 소득은 덴마크에서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노르웨이-국가별 보고서 관련 규정 발표]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16년 12월 9일 국가별 보고서 관련 규정을 발표함³¹⁾

- 국가별 보고서의 내용은 2016년 10월에 발표된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후 공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됨

■ OECD에서 발표한 BEPS Action plan 13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기한 등을 다루고 있음

- 노르웨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65억크로네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는 관할 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되어야 함
- 노르웨이는 정보교환협정국에 해당함에 따라 최종모회사의 제출 자료는 그룹의 종속회사 혹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국의 정보와 교환되어야 함
 - 노르웨이는 2016년 1월 27일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에 서명하였으

29) 현재 덴마크의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52%이나, 자본이득세율은 42%임

30)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의 세율이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음에 따라 성과보수에 대한 소득구분의 결과가 운용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The Taxation of Carried Interests in Private Equit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008.)

31) 노르웨이 재무부(검색일자: 2016.12.29.)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forskrift-om-land-for-land-rapportering-til-skattermyndighetene/id2523487/>



며 2017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국가별 보고 의무와 관련되어 개정된 조세절차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스페인-세수 증대 관련 세제 개편안 승인]

- 스페인 정부는 2016년 12월 2일 세수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임
 - 납부이연과 같은 세정 규정을 포함하여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되며 이외 담배소비세, 알코올소비세 등이 개정됨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기 개정으로 법인세목에서 46.5억유로만큼의 세수가 증대할 것이며 이는 예상 세수증대 총액인 70억유로의 67%를 차지함
 - 뿐만 아니라 향후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밝힘³²⁾

가. 법인세

- 세수 증대 목적 하 법인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이월결손금 공제율의 인하, 각종 비용 공제 범위 축소

및 납부이연 혜택의 제한 등이며 2016년 소급 시행되는 내용과 2017년 시행분으로 구분됨

- 2016년 소급시행분은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하, 공제 범위 축소 등이며, 2017년 시행분은 특정 주식양도차손 공제제한, 납부이연 혜택의 제한 등임
- 기존 단일 법인세율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25% 수준을 유지할 예정임

1)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하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의 60%(2017년 이후 70%) 또는 1백만유로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인하됨
 - 과세기간 직전 12개월의 매출액이 2천만유로에서 6천만유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함
 - 과세기간 직전 12개월의 매출액이 6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25%까지 공제 가능함

2) 비용공제 축소

-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의 비용 공제 범위가 축소될 예정임
 - 조세피난처 혹은 “적합한 수준(adequate level)” 이상으로 과세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적합한 수준”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지 않음

32)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법인세는 E&Y, 기타 세목은 Tax Notes를 참조함 E&Y(검색일자: 2016.12.19.),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pain-introduces-new-measures-to-increase-tax-revenues—including-significant-changes-to-corporate-income-tax> Tax Notes, “Budget package increases corporate taxes by 14.65 billion,” 2016.12.12.

-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공제에 대한 한도가 설정됨

- 최소기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투자소득이 면세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소기준 과세란 스페인과 조세조약(정보교환규정 포함)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법인을 대상으로 최소한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3) 납부이연 혜택의 제한

-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목의 구분 없이 납부 이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상기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조세심판의 최종 판결에 따른 납부액은 이연이 불가함
- 중간예납 법인세의 경우 최근에 개정되어 적용 세율이 인상되고 최소 기준 금액이 설정됨³³⁾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부분은 제외함

나. 기타

- 법인세 이외 개정된 기타 세목의 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 및 알코올소비세의 인상, 부유세 징수 기한의 연장 등이 제시됨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와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을 EU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액은 담배소비세는 1억유로, 알코올소비세는 5천만유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시행 중인 부유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에서 그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며 기한은 현재 논의 중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러시아-R&D 비용 공제 관련 개정안 제출]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연구개발비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임³⁴⁾
- 러시아는 지출증빙을 구비한 연구개발비용의 1.5배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요건 불충족 시 익년에 세금을 추징하고 있음
- 세무상 인정되는 연구개발비 항목은 연구개발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구개발에 소요된 인건비, 원재료비, 기타 간접비, 러시아 기술 개발 기여 전입금 등임³⁵⁾
- 기타 간접비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의 75%, 기술 개발 기여금의 경우 납세자 매출액의 1.5%의 한도가 설정됨
- 주된 개정 내용은 내부창출 개발비에 대한 공제 범위 축소, 연구개발 공제항목으로 간주되는 인건비성 항목의 제한, 특허권 취득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성 요건 추가 등임
- 인건비성 항목의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가 인정되

33) '스페인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법안 승인', 「주요국의 조세동향」 10-2호.

34) IBFD(검색일자: 2016.12.18.)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06_ru_1.html&WT.z_nav=Navigation

35) IBFD(검색일자: 2016.12.29.)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cta/html/cta_ru_s_001.html&WT.z_nav=seealso&hash=cta_ru_s_1.4.8



는 범위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공적 보험료는 포함되나, 임의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아일랜드-EC의 애플 부당지원 조사결과에 반박하는 성명 발표]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6년 12월 19일 애플로부터 약 130억유로의 세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EC의 명령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함³⁶⁾
 - EC는 2016년 8월 30일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당한 조세혜택을 부여했다 결론 짓고 해당 조세혜택 금액을 환수하도록 명령한 바 있음
 - 아일랜드는 2016년 11월 9일 EU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EC 명령에 불복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 EC는 아일랜드 재무부가 아일랜드에 소재한 애플 자회사에게 유리한 예규를 주어 애플의 북·남미지역 외 소득을 서류상 존재하는 아일랜드 내 본사로 이전되도록 하였다고 결론 내림³⁷⁾
 - EC는 애플이 이 예규에 근거하여 아일랜드 자회사의 소득을 서류상 존재하는 본점에 배분하여 애플의 유럽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소득 과세 회피가 가능하였다고 판단함
 - 서류상 존재하는 본점은 아일랜드에 소재하나 아일랜드 세법에 의해 거주기업으로 판정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거주기업으로 판정되지 않는 무국적기업임

- 이는 결과적으로 아일랜드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에 비해 조세혜택을 주어 EU시장 내 경쟁을 왜곡시켜 부당지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봄

- 아일랜드 재무부는 EC가 애플 그룹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지원 규정,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아일랜드 자회사의 본점의 활동 및 책임에 대해 부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음
 - EC는 예규가 아일랜드 세법을 적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State Aid) 규정만 고려하여 결론내림
 - 아일랜드 내 두 자회사인 Apple Sales International(ASI)과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AOI)은 아일랜드 세법상 비거주법인이 납부해야할 세액(Taxes Consolidation Act 1977, 제25조)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음
 - 또한,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 간 과세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플이 조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
 -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정상가격분담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EU법·아일랜드 법과는 상관없는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조세자주권을 침해함³⁸⁾

36) News IBFD, "Ireland: European Union-Finance publishes main lines of argument against EC's Apple State aid decision," 2016.12.19., 아일랜드 재무부, "Apple State Aid Case," 2016.12.19.

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9호.

38) CCH, "Ireland published legal arguments in 13billion euro Apple state aid case," 2016.12.19.

- EC는 아일랜드 자회사 대부분의 소득이 귀속되는 본점을 서류상 회사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본점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자회사의 소득이 귀속되는 것은 합당함
 - 서류상 존재하는 본점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며, 미국 세법상에서도 비거주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소득에 대해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고 있음
- 애플 자회사의 의사결정이 최종모회사인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일랜드 자회사에 귀속되지 않아 아일랜드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다국적기업이 특정 이익이전 행위를 통해 해외로 이익을 이전한 경우 현행 법인세율인 30%보다 높은 40%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임
- 우회이익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다국적기업 그룹,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 의도, 국제청의 합리적인 판단이 모두 요구됨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 수익 합계가 10억호주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임
 - 납세자가 조세혜택이나 조세혜택과 외국납부세액의 감소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를 이용한 인위적인 거래나 거래의 일부를 수행하고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단, 위 요건을 만족한 경우도 특정 매출액, 법인과 경제적 실질 요건에 부합하면 우회이익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둠
 - 매출액 요건: 호주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25백만 호주달러 이하이며, 호주 관계회사가 호주 역외에서 인위적으로 매출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요건: 조세회피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증가가 호주에서 감소한 법인세의 80% 이상인 경우
 - 경제적 실질 요건: 각 관계회사가 얻은 수익이 회사의 활동에 근거하고 있는 등 충분한 경제적 실질을 보유한 경우
 - 이 요건은 납세자가 기업의 관련 활동이 충분

오세아니아

[호주-우회이익세 도입안 확정 발표]

- 호주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호주 우회이익세 도입안을 확정하여 발표³⁹⁾했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임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6/17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기존 발표한 도입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임
- 2016년 12월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우회이익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재무부에서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공개할 방침임

39)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alian-government-releases-diverted-profits-tax-exposure-draft>



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당국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호주-소액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방안 발표]

- 호주정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된 1,000호주달러 미만인 소액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함⁴⁰⁾
 - 해외 판매자가 국내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맞춰 국내 판매자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유통 플랫폼을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 해외 인터넷 소매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해외 판매자와 호주 소비자를 연결하는 운송주선인(goods forwarders)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7년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재화부터 적용될 예정임
- 호주정부는 소액재화에 대한 징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 판매자가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함
 - 소액재화를 포함하여 호주 소비자에게 공급한 금액이 연간 75,000호주달러를 초과한 해외 판매자는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

[뉴질랜드-이전가격 모니터링의 적용대상 확대]

-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전가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transfer pricing enforcement monitoring program) 적용대상을 연간 매출액이 3천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⁴¹⁾함
 - 연간 매출액이 3천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중 뉴질랜드에 중요한 경제적 실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법인이 모니터링 대상임
 - 최근 국세청은 관계회사 사이의 자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향후 유효세율이 낮은 그룹,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와 중요한 거래가 있는 기업, 비정상적인 손실, 혼성불일치가 발생한 기업이 국세청의 중점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이후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전가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매출액이 8천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재무 정보의 제출을 요구함
 - 세부적인 재무 정보는 영업이익, 이자비용, 법인세 납부액 등이 포함됨
 -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4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Indirect-taxes/GST/GST-on-low-value-imported-goods/#>

41) Tax Notes International, pp. 825-826(2016.11.28.)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점을 낮추면 300개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국세청은 그룹 내부 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캐시폴링 계약 등에 초점을 맞춰 이전가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국세청이 초점을 맞춘 거래는 그룹 내부의 자금 거래, 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캐시폴링 계약, 해외 집중 관리부서(offshore service hubs) 운영과 공급망의 조정(supply chain restructuring)임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이프하버 기준에 따른 이전 가격 정책을 마련할 것을 추천함
 -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7.5%의 원가가산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자율에 적절한 기준금리 초과 2.5%를 적용하는 것이 세이프하버 기준의 사례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아시아

[인도-금융계좌의 보고의무 부여 공지 공개]

- 인도 직접세위원회는 2016년 11월 15일, 은행 등에게 특정계좌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공지를 공개함⁴²⁾
 - 이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거래의 예금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8일 현행 고

액권 화폐의 폐지 및 신권발행에 따라 지하경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임

- 이러한 보고의무는 공지의 공개시점부터 적용됨

- 인도 정부는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16년 11월 8일자로 일부 고액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함⁴³⁾
 - 현행 가장 높은 액면의 화폐인 5백루피와 1천루피의 화폐의 유통을 폐지하고 새로운 5백루피와 2천루피의 화폐를 발행함
 - 따라서 기존의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하경제자금의 추적과 더불어 공공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교환 절차를 규정함
 - 2016년 12월 30일까지 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 2016년 11월 24일까지는 은행으로부터 현금인출이 1만루피로 제한, ATM기의 인출은 기간에 따라 2천루피에서 4천루피로 제한 등의 절차 및 규제가 존재함

- 이러한 화폐 변경에 이어 직접세위원회는 은행 등에게 신권 교환시에 일정 규모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함⁴⁴⁾
 - 은행 및 우체국은 일별 계좌잔액이 5천루피를 초과하거나 2016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거래합계가 2만 5천루피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보고해야 함

42) Government of India(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Notification No. 104, New Delhi, the 15th November, 2016.

43) Government of India(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Press Release, Dated 8th November 2016.

44) Government of India(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Notification No. 104, New Delhi, the 15th November, 2016.



- 또한 은행 및 우체국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인별 예금계좌합계가 12만 5천루피 이상이거나 예금계좌 이외에 인별 계좌합계가 2만 5천루피 이상인 인에 대해 보고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중국-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증치세 환급 허용 통지 공개]

- 중국 재정부 등은 2016년 11월 16일, 적격 연구개발 기관이 취득한 설비에 대해 증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공개함⁴⁵⁾
- 중국은 일반적으로 증치세를 환급하지 않고 이월 시키는데, 이번 통지로 인해 적격 연구개발기관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금흐름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⁴⁶⁾
 - 적격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이 주요사업인 기업, 엔지니어링센터, 주요 연구소 등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을 의미함
 -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이스라엘-의회 재정위원회의 첨단산업 지원세제 승인]

- 이스라엘 의회 재정위원회는 2016년 12월 15일 첨단기술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함⁴⁷⁾
 - 이러한 지원은 국제조세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투자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이스라엘의 역량을 강화하여 첨단산업 및 그 부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
 - 이 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지역별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첨단기업이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사의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 세율을 연간 연결매출액 1백억세겔을 미만은 현행 16%에서 12%로, 1백억세겔을 초과하면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함
 -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9%에서 7.5%로 인하함
 - 특정 지역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특정 북·남 지역이 해당됨⁴⁸⁾
 - 이스라엘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국외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4%로 인하함
 -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제도를 OECD의 연계접근법에 부합시키기 위해 적격 연구개발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45) 财政部·商务部·国家税务总局, 关于继续执行研发机构采购设备增值税政策的通知 财号[2016]121号, 2016年11月16日.

46) KPMG, China Tax Weekly Update, Issue 45, December 2016, p. 6.

47) Ministry of Finance(<http://www.mof.gov.il/Releases/Pages/Idud.aspx>).

48) Ernst & Young, "Israel approves new innovation box regime and reduces tax rate from 1 January 2017," *Global Tax Alert*, 16 December 2016, p. 2.

2017년 3월 31일까지 공표될 것임⁴⁹⁾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싱가포르-생산 및 혁신 세액공제제도 개정]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6년 11월 22일, 생산 및 혁신 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는 지침을 공개함⁵⁰⁾
 - 이 지침은 싱가포르의 2016 예산안⁵¹⁾에 따라 현행 현금환급비율의 축소 및 일몰을 2년 연장하여 2018년에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임
 - 지침에서 이러한 제도 변경은 전체적인 지원이 아닌 대상과 산업별로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일몰의 일시적 연장, 현금환급비율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생산 및 혁신 세액공제제도는 원래 2016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연장하여 2018년까지 운용하고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함
 - 회사는 선택적으로 적격 생산 및 혁신 비용에 대해 1만싱가포르달러까지 일정비율로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60%에서 2016년 8월부터 40%로 조정함
 - 또한, 현금환급을 위해서는 2016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일본-2017년 세법개정안 개요 발표]

- 일본은 2016년 12월 8일, 2017년 세법개정안 개요를 발표함⁵²⁾
 - 개인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와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가. 법인세

1) 구조조정 관련 세법 개정

- 적격 신설분할(spin-off) 요건을 마련하고, 적격 신설분할에 해당할 경우 신설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전으로 인한 자본이득 과세가 이연됨
 - 적격분할 요건은 총 6가지 사항으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이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제적 실체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함
 - 법인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주 중 분할법인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자가 없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중에서도 분할신설법인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자가 없어야 함
 - 이전된 사업부의 주요 자산과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으로 모두 이전되어야 함
 - 이전된 사업부에 근무하던 80%이상의 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서 근무해야 함
 - 분할법인이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이전된 사업부의 이사나 중요한 직원이 분할신

49) Ernst & Young, op. cit., p. 2.

5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e-Tax Guide: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5TH edition, Published on 22 Nov 2016.

51) 『조세동향』 16-05호 참조

52)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index.htm>) 및 IBFD(http://online.ibfd.org/data/tns/docs/html/tns_2016-12-14_jp_1.html?WT.z_nav=Navigation) 및 KPMG Japan Tax Newsletter(<https://home.kpmg.com/jp/en/home/insights/2016/12/2017-tax-reform-20161214.html>), 검색일자: 2016.12.22.



설법인의 이사 직위에 있어야 함

-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법인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되, 대가는 전액 주식임

■ 적격 현물배당(dividends-in-kind) 요건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 현물배당의 경우 자회사 주식이전 결과 발생한 자본이득 과세를 면세함

- 여기서 의미하는 현물배당은 모회사가 자회사주식을 현물배당하여 사실상 인적 분할하는 것으로, 기존에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자매회사 관계로 변경됨
- 적격 현물배당 요건은 5가지이며,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기 전까지 모회사의 주주 중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가 없어야 하며, 주식배당 후에도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가 없어야 함
 - 자회사 직원의 80% 이상이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을 이용한 사실상 인적 분할 후에도 자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해야 함
 - 자회사의 주요 사업이 현물배당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
 - 자회사 이사 중에 사실상의 인적 분할 후 사임한 자가 없어야 함
 - 모법인의 주주가 기존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 주식을 배당받아야 함

■ 기업결합(consolidation)과 관련된 영업권(goodwill)의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이익, 현금으로 받은 기업결합 대가의 처리 등에 대한 개정방안이 포함됨

- 현행 세법상 영업권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며 취득한 연도에도 월할상각하지 않고 전액상각이 허용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권 취득한 연도에 월할상각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개정안에서 자회사의 장부가치가 10백만엔 미만인 경우 자본이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세법상 비과세 대상 지분양도나 주식교환에 따른 기업결합에서도 100% 자회사가 된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과세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소규모 기업결합에 한하여 자본이득 과세를 면제함
 - 또한, 현행 세법상 자회사가 기존 세무상 기업결합 그룹에 참여하거나 기업결합 그룹이 신규 창설되는 경우 그 기업결합 그룹에 속한 자회사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과세되는데, 개정안에서 소규모 기업결합에 한하여 자본이득 과세를 면제함
- 개정안에서株式이 아닌 현금 형태로 기업결합 대가를 받더라도 조세혜택 대상인 적격 합병이나 적격 주식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현행 세법상 조세혜택을 포함한 적격 조직개편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가 기업결합 대가가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합병이나 주식교환을 통한 조직개편 시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매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임
 -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2/3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소액주주에게 지급한 현금이 있더라도 적격 합병으로 간주함
 - 주식교환의 경우 모회사가 조직개편 전 2/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조직개편 후 완전 자회사가 된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지급한 현금이 있더라도 적격 합병으로 간주함

- 그 밖에도 다양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이 있으나 여기서 모두 소개하지는 않음

2)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

- 기존 연구개발세액공제 공제율 적용방식을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액과 감소액을 고려하여 공제율⁵³⁾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율의 범위도 현행 8%~10% 수준에서 6%~14% 수준으로 개정함
- 현행 세법의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용의 12%를 그 밖의 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8%~10%를 공제하고, 공제가능

한도를 법인세액의 25%를 규정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 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의 증감비율을 공제율에 포함시켜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기업이 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구성함
- 공제한도의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세액의 25%로 연구개발 비율⁵⁴⁾이 10%를 초과한 경우 2년 동안은 25%에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부분의 두 배를 가산한 비율을 한도⁵⁵⁾로 함
- 자세한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조

〈표 3〉 현행 세법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업형태	구분	공제금액	
총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이 10% 이상	총 연구개발비용×10%
		연구개발비 비율이 10% 미만	총 연구개발비용×(연구개발비 비율×0.2+8%)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용×12%	
특별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 연구개발비용×20%~30%		

〈표 4〉 개정안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업형태	구분	공제금액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 증감률 5% 이상	총연구개발비×[9%+(증감률-5%)×30%], 공제율은 1년 동안 10%, 2년 동안 14%를 한도로 적용
	연구개발비 증감률 5% 미만	총연구개발비×[9%-(5%-증감률)×10%]
	연구개발비 증감률 -25% 미만	총 연구개발비×6%
중소기업	원칙	총 연구개발비×12%
	2년 동안 증가율 5% 이상인 경우 임시 적용	총연구개발비×[12%+(증가율-5%)×30%], 공제율은 17%를 한도로 적용

53) 연구개발비 증감률이란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와 직전 3년 동안 연구개발비 평균액의 차액을 직전 3년 동안 연구개발비 평균액으로 나눈 수치임

54) 연구개발비 비율이란 당해 연도 총 연구개발비를 평균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임

55) 단, 최대 공제한도는 35%로 함



- 앞서 설명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폐지함
 - 현행 2017년 4월 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개발비용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⁵⁶⁾와 평균 매출액의 10%를 초과한 연구개발비⁵⁷⁾에 적용되던 세액공제는 일몰을 2년 연장함
-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동화나 다량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기능을 보유한 기술이나 기구의 사용을 통한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한 분석이나 전술한 분석에 의하여 발견한 규칙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함
 - 이와 관련된 원재료, 인건비, 간접비와 아웃소싱 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됨

3) 그 밖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

- 정부 계획에 따라 지역 핵심 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기계와 공구, 기구, 건물과 구조물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취득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의 도입을 제안함
 -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색신고기업에 해당

되어야 함

- 특별 감가상각은 기계와 공구, 기구의 경우 취득원가의 40%를 건물과 구조물의 경우 취득원가의 20%를 허용함
 - 세액공제는 기계와 공구와 기구에는 취득원가의 4%를 공제하고, 건물과 구조물에는 취득원가의 2%를 공제함
 - 단,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적용됨
- 기업의 급여인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여상승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색신고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당해연도 급여지급액이 기준연도 급여지급액의 104%⁵⁸⁾(중소기업은 103%)를 초과한 부분의 10%를 공제하며, 법인세액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한도로 적용됨
 -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급여지급액이 기준연도 급여지급액의 102%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2%의 비율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급여지급액과 기준연도 급여지급액의 차액으로 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그 밖의 기업의 경우 적용요건 중 하나를 변경하고 세액공제액도 당해연도 급여지급액이 직전연도 급여지급액을 초과한 부분의 2%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함

56) 연구개발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5% 초과 30% 미만인 경우 증가한 연구개발비에 증가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함

57) 연구개발비가 평균 매출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됨

58) 104%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비율이며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105%의 비율이 적용됨. 단,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현행과 동일하게 103%의 비율이 적용됨

4) 기타

- 현행 세법에 열거된 공제가능한 임원성과급 중에서 이익 연동 성과급(profit-based compensation)을 성과 연동 성과급(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으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세법상 법에 열거된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임원 성과급을 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데, 비용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특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고정성과급,⁵⁹⁾ 사전 공지된 고정성과급,⁶⁰⁾ 이익 연동 성과급(profit-based compensation)⁶¹⁾임
 - 개정안에서 공제대상을 이익 연동 성과급에서 성과 연동 성과급으로 개정하고,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공제대상에 포함함
 - 개정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지급되거나 부여된 성과급부터 적용될 예정임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조세혜택 중 일부를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전 3년도 평균 매출액이 1,5십억엔을 초과한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한 기간을 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특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까지로 신고기한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소득세

- 배우자공제 금액을 납세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함
 -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30천엔 이하이면 380천엔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요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납세자 본인의 연간 총소득 수준에 따라 배우자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총소득이 12,200천엔을 초과하면 공제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개정안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 배우자 특별세액공제⁶²⁾의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급여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배우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급여한도를 현행 1,410천엔에서

59) 매월, 매주, 매일을 기반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함

60) 특정시점에 부여된 스톡옵션이나 특정시점에 발행된 주식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를 의미함

61) 주식의 시장가치나 양도가액을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함

62) 일본은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며,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을 위해서는 배우자 급여와 납세자 본인 급여가 법정 금액 미만이어야 함



〈표 5〉 현행 세법의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특별세액공제

(단위: 천엔)

구분	납세자의 연간 총수입		
	12,200이하(10,000이하)	12,200초과(10,000초과)	
배우자 연간 총수입	배우자공제		
	1,030이하(380이하)	380	380
	배우자 특별공제		
	1,050이하(400이하)	380	0
	1,100이하(450이하)	360	0
	1,150이하(500이하)	310	0
	1,200이하(550이하)	260	0
	1,250이하(600이하)	210	0
	1,300이하(650이하)	160	0
	1,350이하(700이하)	110	0
	1,400이하(750이하)	60	0
	1,410이하(760이하)	30	0
	1,410초과(760초과)	0	0

〈표 6〉 개정안의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특별세액공제

(단위: 천엔)

구분	납세자의 연간 총수입				
	11,200 이하 (9,000이하)	11,700 이하 (9,500이하)	12,200 이하 (10,000이하)	12,200 초과 (10,000초과)	
배우자 연간 총수입	배우자공제				
	1,030이하(380이하)	380	200	130	0
	배우자 특별공제				
	1,500이하(850이하)	380	260	130	0
	1,550이하(900이하)	360	240	120	0
	1,600이하(950이하)	310	210	110	0
	1,670이하(1,000이하)	260	180	90	0
	1,750이하(1,050이하)	210	140	70	0
	1,830이하(1,100이하)	160	110	60	0
	1,900이하(1,150이하)	110	80	40	0
	1,970이하(1,200이하)	60	40	20	0
	2,010이하(1,230이하)	30	20	10	0
	2,010초과(1,230초과)	0	0	0	0

- 2,010천엔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표 6> 참조
- 개정안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 비영국적 거주자(non-permanent resident)⁶³⁾의 과세소득 범위를 확대⁶⁴⁾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세법상 비영국적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일본 원천소득”과 “일본으로 송금되거나 일본에서 지급된 일본원천소득 외의 수입금액”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함
 - 개정안에서는 비영국적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일본 원천소득 대신 “외국원천소득 외의 소득”과 “일본으로 송금되거나 일본에서 지급된 외국원천소득”으로 규정함
 - 이는 일본으로 송금되거나 일본에서 지급되었는가와 무관하게 외국원천소득 외의 소득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일본원천소득과 외국원천소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예를 들어, 외국 금융상품의 판매이익이 일본의 비영국적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될 것임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다. 부가가치세

-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거래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함
 -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를 비과세대상에 열거하지

않아 가상화폐의 양도에 처리에 논란이 있으며 과세대상으로 분류해옴

-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6년 5월 개정된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의 개정내용에 맞춰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함
- 2016년 11월 18일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유보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 8%의 소비세율이 2019년 10월 1일까지 유지될 것임⁶⁵⁾
 - 당초 2017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인상 시기를 늦춤

라. 국제조세

- 일본은 OECD BEPS Action3의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CFC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유효 법인세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수동소득만 대상으로 CFC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기준과 수동소득의 범위를 개정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해외 관계회사의 유효 법인세율이 20% 미만이고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 관계회사의 모든 소득을 일본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며, 유효 법인세율이 20% 미만이나 예외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해외 관계회사

63) 최근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일본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비영국적 거주자는 일본 국적이 없거나,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10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64)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에서 “외국원천소득”의 정의를 제시하고 비영국적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를 외국원천소득 외의 수입으로 규정함

65)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며 별도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소개함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japan-releases-2017-tax-reform-outline>), 검색일자: 2016.12.19.



의 수동소득만 일본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함
- 유효 법인세율이 20% 이상이면 CFC 대상이 아님

- 개정안에 따르면 유효 법인세율이 20% 이상이더라도 페이퍼컴퍼니, ⁶⁶⁾ 캐시박스⁶⁷⁾나 블랙리스트 기업⁶⁸⁾에 해당하면 CFC를 적용함
 - 다만, 개정안에서 유효 법인세율이 30% 이상이면 CFC 적용을 배제함
- 또한, 경제활동 테스트를 모두 만족한 경우 수동소득의 총합이 일정금액 이하면 수동소득도 CF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현행 세법과 비교하여 기준금액을 10백만엔에서 20백만엔으로 상향 조정하여 CFC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함
 - 개정안에서는 수동소득만 CFC 대상으로 판단하는 예외요건의 명칭을 “경제활동 테스트”로 변경하고 경제활동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소득을 CFC 대상으로 하고 경제활동 테스트를 모두 만족하면 수동소득만 CFC 대상에 포함함
 - 다만, 경제활동 테스트를 모두 만족한 경우 수동소득의 총합이 20백만엔 이하면 수동소득도 CF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마. 상증세

-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소재 자산의 과세대상 상속인, 피상속인,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함
 - 해외소재 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상속과 증여에 관여한 모든 대상자가 일본에 과거 5년 동안 주소가 있었는가를 동시에 판단하여 결정됨
 -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취득한 자산에 적용될 것임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이 모두 5년 이상 기간 동안 일본에 거주한 경우만 해외 자산을 상속세(또는 증여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이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내에 5년 이상 기간 동안 근로를 위해 거주한 경우 일본에 소재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한 재산까지 일본의 상증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상증세를 부담하는 일본 거주 기간을 5년에서

66) 페이퍼컴퍼니는 주된 사업목적은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나 본점이 관리나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함

67) 캐시박스는 해외 관계회사의 '수동소득/총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증권+대여금+무형자산 등)/총자산'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임

68) 일본 재무부가 조세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 그 해외 관계회사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판단함.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공개하지 않음

10년으로 연장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배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이 상속(또는 증여)이 발생하기 전 15년 중에 10년 미만으로 일본에서 거주한 경우만 일본에 임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모든 당사자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만 해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함

- 일본의 “이민통제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해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함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민통제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자산에 대한 일본의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국제기구

[OECD – 2016 세수통계(Revenue Statistics)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6년 11월 30일 ‘2016 세수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⁶⁹⁾’를 발표함
- OECD의 세수통계 보고서는 1965년부터 OECD 회원국의 조세수입과 관련된 현황과 동향을 매년 분석하여 제시함
- 2016 세수통계 보고서는 2015년 기준 OECD의

34개 회원국(라트비아는 2016년 가입으로 제외) 중 2015년 예비 세수자료를 제공한 32개국(호주와 폴란드 제외)의 GDP 대비 세수 비중과 세수 구조(세목별 조세수입) 등의 내용을 제시함

- 2015년 OECD의 32개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34.3%로 196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분석 대상 32개국 중 전년 대비 2015년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이 중 1%p 이상 증가한 국가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멕시코(2.3%p)를 비롯하여 터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이 존재함
- 반면, 전년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총 7개국이며, 이 중 1%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5.1%p), 덴마크 (3.0%p),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아일랜드의 경우 2015년 예외적으로 높은 GDP성장률(30%)을 기록해 GDP 대비 세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 2014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소득세수입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세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69)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2316363e.pdf?expires=1480917928&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6C217835DCBE98B2909180E8D90C0CA7)



-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 포함) 수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GDP의 11.6%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12.2%)에는 미치지 못함
 -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수는 2011년 7.8%에서 2015년 8.5%로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2.9%대에서 큰 변화가 없어 소득세의 조세부담이 법인에서 개별가구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임
 - 2013년 대비 2015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조사대상 32개국 중 22개국에서, 법인세의 경우 18개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평균 소비세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최저점인 GDP의 10.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0.9%로 회복됨
 -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세수비중은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OECD 평균 6.8%를 기록함
 - 조사대상 32개국 중 20개국에서 2013년 대비 2015년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5%에서 8%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일본이 가장 높은 증가율(1.6%p)을 나타냄
 - 반면 특정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특별소비세(excises)의 GDP 대비 세수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OECD 평균 3.2%를 기록함
- 한편, 기타 세목 중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재산세, 급여지불세(payroll tax) 등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사회보장세의 경우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급증한 이래 2014년과 2015년에는 전체 세수의 약 26%, GDP 대비 세수비중은 9.1%로 일정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5.3%로 OECD 평균보다 9%p 낮았으나, 1995년부터 지난 20년간 GDP 대비 세수비중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조사대상 OECD 32개국 가운데, 멕시코(17.4%), 칠레(20.7%)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고, 미국(26.4%)과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임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증가폭은 5.47%p로, 터키(11.98%p), 아이슬란드(8.45%p), 그리스(7.98%p), 일본(5.63%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OECD의 평균 GDP 대비 세수비중 증가율은 0.9%p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OECD-2016 소비세동향(Consumption Tax Trends)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6년 11월 30일 「2016 소비세동향(Consumption Tax Trends) 보고서」⁷⁰⁾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소비세(consumption tax) 세수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소비세는 크게 부가가치세('VAT'),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판매세 등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소비에 대한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 관세 등 특정 재화와 용역에 부과하는 특별세로 구별됨
- 2014년 기준 소비세는 OECD 회원국 전체 세수의 평균 30.5%를 차지하였으며,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이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다만, 소비세를 구성하는 세목은 같은 기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여, 전체 세수에서 VAT 등 일반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11.9%에서 2014년 20.7%까지 증가함
 - 반면, 특별세는 같은 기간 24.3%에서 9.6%까지 감소함
- 소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VAT로,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전체 세수의 20.1%, GDP 대비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소비세에 대한 조세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원국들의 표준 VAT 세율 인상 등으로 2010년부터 증가하여 현재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함
 -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GDP 대비 VAT 세수가 증가하였음
 -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VAT 세율은 19.2%이며, 이 중 10개국은 22% 이상의 VAT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22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표준 VAT 세율은 21.7%를 기록함
- OECD 회원국들은 VAT 경감세율 적용 대상 거래의 축소와 경감세율 인상 등을 통해 VAT 과세기반을 확장하는 등 VAT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OECD의 국제 VAT/GST 지침(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과 G20/OECD의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의 Action 1(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OECD 회원국들은 소득 재분배 및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를 목적으로 VAT 경감세율 또는 면세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음
 -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의료, 자선활동, 교육 분야에서 VAT 면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체육 활동 장려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관련 거래들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함

70)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OECD Publishing, Paris, 2016. (http://www.oecd.org/tax/consumption-tax-trends-19990979.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30-11-2016&utm_term=demo)



- 한편, ‘VAT 세수 비중(VAT Revenue Ratio, ‘VRR)’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현재 VAT 수입에서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획득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VRR이란 특정 국가의 VAT 체계상 경감세율과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거래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VAT 총수입 대비 실제 부가세 징수액 비율을 나타냄
 - 2014년 OECD 회원국의 평균 VRR은 0.56으로 나타나, 모든 거래에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총 VAT 수입의 44%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일반소비세와 달리 특정 재화나 용역에 부가하는 특별세의 세수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등 소비자행태 변화 유도를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별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특별소비세(excise duty)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1965년 14.2%에서 2014년에는 절반 수준인 7.6%를 기록함
 - 자동차세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비를 유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OECD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환경 및 연료효율을 기준으로 자동차 사용에 대해 경감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담배세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세금을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되며, 10개국에서는 소비자가의

8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소비세 수입 비중과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소비세 수입비중은 각각 6.9%와 26.1%로 OECD 평균인 10.3%와 30.5%보다 낮음
 - V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VAT 수입비중은 각각 4.2%와 17.2%로 OECD 평균인 6.8%와 20.1%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현행 표준 VAT 세율은 10%로 2016년 1월 1일 기준 OECD 평균 표준 VAT 세율 19.2%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이는 캐나다(5%), 일본과 스위스(8%)에 이어 호주와 함께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세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OECD-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 공개]

- OECD는 2016년 11월 24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⁷¹⁾을 공개함⁷²⁾
 - 본 다자간협약은 G20/OECD BEPS방지 프로젝트 Action 15에 따라 협의 및 작성되었으며 BEPS방지 프로젝트의 권고사항 중 조세조약과

71)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6. (<http://www.oecd.org/tax/treaties/multilateral-convention-to-implement-tax-treaty-related-measures-to-prevent-BEPS.pdf>)

72)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countries-adopt-multilateral-convention-to-close-tax-treaty-loopholes-and-improve-functioning-of-international-tax-system.htm>)

관련된 항목을 담음

- 다자간협정은 2015년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2016년 11월에 본 최종안이 공개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국가는 서명할 수 있음
- 다자간협약의 협약사항들은 본 협약 체결국의 비준절차를 통해 조세조약에 반영되는 것으로, OECD는 본 다자간협약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의 2,000개가 넘는 조세조약에 BEPS방지 관련

방안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

- 본 다자간협약의 규정은 BEPS방지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중 조세조약과 관련된 Action 분류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됨
 - 혼성불일치 거래효과의 해소(Action 2)
 -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
 -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Action 7)
 -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Action 14)

〈표 7〉 다자간협약 규정 요약

Action	항목	다자간협약 관련조항	유보가능여부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효과의 해소	이중거주자 단체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제4조	유보가능
	도관단체(Transparent entities) 관련 조약 규정	제3조	유보가능
	이중과세제거방법(면제 또는 세액공제방식)	제5조	유보가능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LOB') 규정	제7조	최소기준 유보불가 ¹⁾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 규정	제7조	
	배당거래 이전 거래 방지	제8조	유보가능
	부동산주식 양도거래 과세 관련 규정	제9조	유보가능
	이중거주자 단체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제4조	유보가능
	제3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한 조약남용 방지	제10조	유보가능
	거주자에 대한 해당 거주지국의 과세권 제한 규정	제11조	유보가능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비과세를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는 전문(preface)	제6조	최소기준 유보불가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위탁계약 등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규정	제12조, 제15조	유보가능
	고정사업장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행위를 통한 인위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	제13조	유보가능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과세회피 방지 규정	제14조	유보가능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장치 관련 조약 규정	제16, 17조	유보가능
	상호합의절차의 중재 규정	제18~26조	유보가능

주: 1) 다자간협약 서명국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함:

- ① LOB와 PPT 규정 동시 도입
- ② PPT 규정 단독 도입
- ③ LOB 규정 도입과 내국법상 도관금융계약 방지 규정 보완도입

출처: OECD, "Explanatory Statement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6, pp. 84-85.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입법 현황 공개]

- OECD는 2016년 12월 5일, 각 국가의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신고 관련 입법 현황을 공개함⁷³⁾
 - BEPS 참여국 중 관련 자료를 제공한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 신고제도 도입 현황을 소개함
 -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의 신고는 BEPS프로젝트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며, OECD는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의무를 부여함
- 본 자료는 각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 신고제도 관련 입법 여부,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 현지법인 신고의무, 대리신고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이행 동향을 제공함
 -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16년 중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신고대상연도로 함
 - 현지법인 신고의무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 보고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그룹의 자회사가 거주지국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지법인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임
 - 대리신고제도(surrogate filing)는 다국적기업그

룹의 최종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 보고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그룹의 특정 법인을 지정하여 모회사 대신 국가별 보고서를 해당 거주지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0일 국가별 보고서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음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 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 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음

73) OECD(<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untry-specific-information-on-country-by-country-reporting-implementation.htm>)

〈표 8〉 국가별 보고서 입법동향

국가	입법 여부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	현지법인 신고의무	최초 현지법인 신고대상 과세연도	대리신고 제도 유무
아 르 헨 티 나	-	2017.01.01.	○	2017.01.01.	○
호 주	○	2016.01.01.	○	2016.01.01.	○
오 스 트 리 아	○	2016.01.01.	○	2016.01.01.	○
벨 기 에	○	2016.01.01.	○	2016.01.01.	○
불 가 리 아	-	2016.01.01.	○	2016.01.01.	○
캐 나 다	-	2016.01.01.	○	2016.01.01.	○
칠 레	불필요	2016.01.01.	○	2016.01.01.	○
체 코	-	2016.01.01.	○	2017.01.01.	○
덴 마 크	○	2016.01.01.	○	2017.01.01.	○
프 랑 스	○	2016.01.01.	○	2016.01.01.	○
가 봉	-	2017.01.01.	○	2017.01.01.	×
독 일	-	2016.01.01.	○	2017.01.01.	○
건 지(Guernsey)	○	2016.01.01.	×	해당사항 없음	○
홍 콩	-	2016.01.01.	○	2016.01.01.	○
인 도	○	2016.04.01.	○	2016.04.01.	○
인 도 네 시 아	불필요	2016.01.01.	○	2016.01.01.	○
아 일 랜 드	○	2016.01.01.	○	2016.01.01.	○
맨 섬(Isle of Man)	○	-	-	-	-
이 스 라 엘	-	2016.01.01.	-	-	-
이 탈 리 아	○	2016.01.01.	○	-	-
일 본	○	2016.01.01.	○	2016.01.01.	○
저 지(Jersey)	○	2016.01.01.	○	2016.01.01.	○
대 한 민 국	○	2016.01.01.	○	2016.01.01.	○
라 트 비 아	-	2016.01.01.	○	2017.01.01.	○
리 히 텐 슈 타 인	○	2016.01.01.	○	2017.01.01.	○
리 투 아 니 아	-	2016.01.01.	○	2017.01.01.	○
룩셈부르크	-	2016.01.01.	-	-	○
말 레 이 시 아	○	2016.01.01.	×	해당사항 없음	○
몰 타	불필요	2016.01.01.	○	2016.01.01.	○
멕 시 코	○	2016.01.01.	○	2016.01.01.	○
노 르 웨 이	○	2016.01.01.	○	2016.01.01.	○
네 덜 란 드	○	2016.01.01.	○	2016.01.01.	○
뉴 질 랜드	-	2016.01.01.	×	해당사항 없음	×
나 이 지 리 아	-	-	○	2017.01.01.	○



〈표 8〉의 계속

국가	입법 여부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	현지법인 신고의무	최초 현지법인 신고대상 과세연도	대리신고 제도 유무
중 국	○	2016.01.01.	○	2016.01.01.	○
폴 란 드	○	2016.01.01.	○	2017.01.01.	○
포 르 투 갈	○	2016.01.01.	○	2016.01.01.	○
러 시 아	-	2017.01.01.	○	2017.01.01.	○
싱 가 포 르	-	2017.01.01.	○	-	×
슬 로 바 키 아	-	2016.01.01.	-	-	-
슬 로 베 니 아	-	2016.01.01.	○	2017.01.01.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6.01.01.	○	2016.01.01.	×
스 페 인	○	2016.01.01.	○	2016.01.01.	○
스 웨 덴	-	2016.01.01.	○	2016.01.01.	○
스 위 스	-	2018.01.01.	○	2018.01.01.	○
터 키	○	2016.01.01.	○	2016.01.01.	○
영 국	○	2016.01.01.	○	2016.01.01.	○
미 국	○	2016.06.30.	×	해당사항 없음	×
우 루 과 이	-	2017.01.01.	○	2017.01.01.	○

출처: OECD(<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untry-specific-information-on-country-by-country-reporting-implementation.htm>)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 보고서 신고 이행지침 발표]

- OECD는 2016년 12월 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신고 관련 추가 이행지침을 발표함⁷⁴⁾
 - 본 이행지침은 국가별 보고서 신고제도의 도입 과도기 기간의 신고 방안, 투자펀드와 파트너십의 신고 원칙, 국가별 보고서 신고 대상 기준 매출액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각 국가 간 국가별 보고서 신고제도의 도입 시기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거주지국 과세관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모회사의 자발적 신고(parent surrogate filing)' 방안을 제시함
 - Action 13은 국가별 보고서의 첫 신고 대상 과세연도를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권고하였으나, 각 국의 관련 입법 절차 등의 차이로 국가별 보고서 신고의 이행시기

74) OECD(<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urther-beps-guidance-on-country-by-country-reporting-and-country-specific-information-on-implementation.htm>)

에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거주지국의 과세관청에 국가별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음
- 현재까지 '모회사의 자발적 신고' 제도 도입을 발표한 국가로는 홍콩, 일본, 리히텐슈타인, 나이지리아,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이 있음

■ 투자펀드와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상 연결 대상 기업을 국가별 보고서의 신고대상 법인에 포함하여야 함

- 투자펀드와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국가별 보고서의 신고대상 법인의 범위에 회계기준 상 연결대상 법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
- 파트너십 중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조세 목적상 거주지(tax residency)가 없는 파트너십은 국가별 보고서에 '무국적 단체(stateless entity)'로 표기하여 신고함
- 조세 목적상 거주지가 없는 파트너십이 '최종 모단체(Ultimate Parent Entity)'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파트너십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국가에 국가별 보고서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총 연결 매출액 기준을 Action 13에 따라 7억 5천만유로의 근사치인 현지통화로 설정한 경우, 추후 환율변동

을 고려한 기준금액 수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국적기업 최종모법인의 국가별 보고서 신고의무는 해당 거주지국의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됨

- Action 13은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총 연결매출액 기준을 2015년 1월 현재 7억 5천만유로의 근사치(near equivalent)인 현지 통화로 설정할 것을 허용함
- 상기 기준에 맞춰 국가별 보고서 신고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설정한 경우, BEPS참여국은 추후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액 기준을 수정할 의무가 없음
- 국가별 보고서의 신고의무 여부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법인이 소재한 거주지국의 매출액 기준에 따르며, 해당 거주지국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동 그룹의 자회사가 속한 거주지국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회사의 소재 국가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EU-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 개정안 공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16년 12월 1일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 'VAT지침') 개정안⁷⁵⁾을 공개함⁷⁶⁾
- 본 개정안은 2015년 EC가 발표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Strat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의 일환으로, EU의 국제

75)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6/EN/COM-2016-757-F1-EN-MAIN.PDF>)

76)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digital-single-marke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관련 부가가치세('VAT') 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본 개정안은 EU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비즈니스의 공정경쟁을 제고하는 한편 VAT 탈세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 각 EU 회원국이 'One Stop Shop'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국제 상거래 사업자의 VAT 신고·납부의무 이행 편의를 도모함
 - 비EU 디지털 사업자가 EU 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의 거주지국이 구축한 One Stop Shop에서 관련 VAT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연간 온라인 국제거래 매출액이 1만유로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와 관련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국제공급을 국내 거래로 간주하여 소비자의 거주지국이 아닌 사업자의 거주지국에서 VAT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EU의 VAT지침에 따르면, EU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최종소비자의 거주지에서 관련 VAT가 신고·납부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VAT 이행의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됨
 - 비EU 사업자의 EU 내 소액 재화 공급에 대한 VAT 면세제도를 폐지하여, EU 내 사업자와 비EU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제고함
 - 일반 서적 및 출판물에 적용하는 VAT 경감세율을 전자서적 등 전자출판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자출판물 거래를 활성화함

- 본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EU 회원국들의 VAT 수입이 증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VAT 의무이행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현재 EU 사업자들의 VAT 의무이행 관련은 비용은 연간 8,000유로로 추산되나 본 개정안의 방안이 실행될 경우 해당 비용의 95%가 감소하여 EU 전체적으로 연간 23억유로의 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VAT 탈세 및 해외 소액공급 면세로 인한 EU의 연간 VAT 수입 손실액은 연간 5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개정안의 도입으로 EU는 연간 70억유로의 추가 VAT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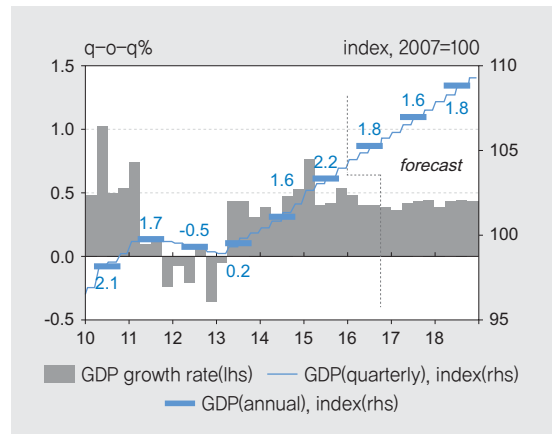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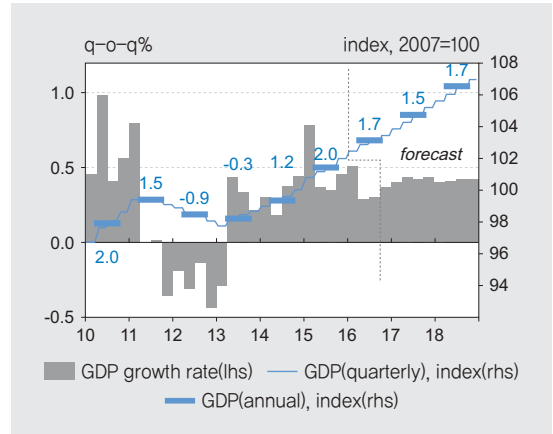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EU 경제 전망(2016 가을) 발표(2016. 11.9.)¹⁾
 - (성장률) 유로존과 EU 경제는 2017~2018년 민간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
 -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기대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유지될 전망
 - 낮은 수요증가 · 낮은 잠재 성장률 기대 · 일부 회원국의 기업 채무 감축 ·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민간 · 공공 투자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며, 유럽 투자 계획 · EU 투자 기금 등이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7%에서 2017년 1.5%, 2018년 1.7%로 전망되어 지난 봄 전망(2016.5.)과 비교해 2016년은 0.1%p 상향, 2017년은 0.3%p 하향 조정됨
 - EU 또한 2016년 1.8%에서 2017년 1.6%, 2018년 1.8%로 유로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지난 봄 전망(2016.5.)과 비교해 2016년은 변동 없고 2017년은 0.3%p 하향 조정됨

[그림 1] 유로존(위)과 EU(아래)의 실질 GDP



주: 선분 위 숫자는 연간성장률을 의미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6*, 2016.

-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유가 및 명목 임금 상승 · 내수 증가 · 산출갭 축소에 따라 높아질 전망
 -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2016년 0.3%에서

1) 출처: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3611_en.htm, 2016.11.9.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pdf/ip038_en.pdf, 2016.11.9.



2017년 1.4%, 2018년 1.4%로 상승하고 EU 또한 2016년 0.3%에서 2017년 1.6%, 2018년 1.7%로 상승

- (실업률) 내수 주도 성장, 점진적인 임금 상승률, 일부 회원국의 재정정책조치와 구조개혁에 힘입어 노동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하락할 전망
 - 유로존의 실업률이 2016년 10.1%에서 2017년 9.7%, 2018년 9.2%로 하락할 전망이며, 이는 2007년의 7.5%에는 못 미치지만 200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임
 - EU 또한 2016년 8.6%에서 2017년 8.3%, 2018년 7.9%로 하락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실업률 하락에 따른 사회 이전지출 감소, 공공부문 임금 억제, 낮은 이자지출에 기인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유로존의 재정적자가 2016년 1.8%에서 2017년

1.5%, 2018년 1.5%로 개선되고 EU 또한 2016년 2.0%에서 2017년 1.7%, 2018년 1.6%로 개선

- (주요 위험) 영국의 EU 탈퇴 투표 결과를 비롯하여 전망 위험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증가했고 그 방향은 하방 위험이 우세
 - (영국 투표) 향후 영국과 EU 간 관계가 불확실하여 상·하방 위험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여러 연구에서 하방위험이 우세하다고 대체로 보고 있으며, 불확실한 기간이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수 있음
 - (대외 위험) 중국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 EU 외 선진국의 저성장 반등 여부, 자유무역협정 논의 및 보호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악화 등 외부 위험 또한 증가
 - (대내 위험)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에 따른 수용력 제한, 구조개혁 속도 둔화, 취약국 문제,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고착도 위험으로 작용

〈표 1〉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벨기에	1.2	1.3	1.5	1.7	1.7	1.8	8.0	7.8	7.6	-3.0	-2.3	-2.4
독일	1.9	1.5	1.7	0.4	1.5	1.5	4.4	4.3	4.2	0.6	0.4	0.3
에스토니아	1.1	2.3	2.6	0.8	2.6	2.7	6.5	7.4	8.3	0.5	-0.4	-0.2
아일랜드	4.1	3.6	3.5	-0.2	1.2	1.4	8.3	7.8	7.6	-0.9	-0.5	-0.4
그리스	-0.3	2.7	3.1	0.1	1.1	1.0	23.5	22.2	20.3	-2.5	-1.0	0.9
스페인	3.2	2.3	2.1	-0.4	1.6	1.5	19.7	18.0	16.5	-4.6	-3.8	-3.2
프랑스	1.3	1.4	1.7	0.3	1.3	1.4	10.0	9.9	9.6	-3.3	-2.9	-3.1
이탈리아	0.7	0.9	1.0	0.0	1.2	1.4	11.5	11.4	11.3	-2.4	-2.4	-2.5
키프로스	2.8	2.5	2.3	-1.1	0.7	1.3	12.5	11.1	10.0	-0.3	-0.4	0.0
라트비아	1.9	2.8	3.0	-0.1	1.8	2.0	9.6	9.2	8.8	-0.8	-1.1	-1.2

〈표 1〉의 계속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리투아니아	2.0	2.7	2.8	0.7	1.7	2.1	7.6	7.4	7.0	-0.6	-0.8	-0.7
룩셈부르크	3.6	3.8	3.6	0.0	1.6	1.9	6.2	6.1	6.2	1.3	0.0	0.1
몰타	4.1	3.7	3.7	1.0	1.6	1.8	5.0	5.2	5.2	-0.7	-0.6	-0.6
네덜란드	1.7	1.7	1.8	0.1	1.0	1.1	6.1	5.8	5.4	-0.8	-0.3	-0.1
오스트리아	1.5	1.6	1.6	1.0	1.8	1.6	5.9	6.1	6.1	-1.5	-1.3	-1.1
포르투갈	0.9	1.2	1.4	0.7	1.2	1.4	11.1	10.0	9.5	-2.7	-2.2	-2.4
슬로베니아	2.2	2.6	2.2	0.1	1.5	1.9	8.4	7.7	7.2	-2.4	-2.0	-1.5
슬로바키아	3.4	3.2	3.8	-0.5	0.8	1.4	9.7	8.7	7.5	-2.2	-1.5	-0.5
핀란드	0.8	0.8	1.1	0.3	1.1	1.2	9.0	8.8	8.7	-2.4	-2.5	-2.0
Euro area	1.7	1.5	1.7	0.3	1.4	1.4	10.1	9.7	9.2	-1.8	-1.5	-1.5
불가리아	3.1	2.9	2.8	-0.9	1.0	1.2	8.1	7.1	6.3	-0.9	-0.8	-0.7
체코	2.2	2.6	2.7	0.5	1.2	1.6	4.2	4.1	4.0	-0.2	-0.6	-0.7
덴마크	1.0	1.7	1.8	0.0	1.2	1.6	6.1	5.9	5.6	-0.9	-2.0	-1.4
크로아티아	2.6	2.5	2.3	-0.9	0.8	1.5	13.4	11.7	10.3	-2.1	-1.8	-1.4
헝가리	2.1	2.6	2.8	0.4	2.3	2.7	5.1	4.7	4.1	-1.5	-2.3	-2.3
폴란드	3.1	3.4	3.2	-0.2	1.3	1.8	6.2	5.6	4.7	-2.4	-3.0	-3.1
루마니아	5.2	3.9	3.6	-1.0	1.8	2.9	6.5	6.4	6.3	-2.8	-3.2	-3.2
스웨덴	3.4	2.4	2.1	1.1	1.6	2.0	6.8	6.4	6.4	0.0	-0.1	0.1
영국	1.9	1.0	1.2	0.7	2.5	2.6	4.9	5.2	5.6	-3.5	-2.8	-2.3
EU	1.8	1.6	1.8	0.3	1.6	1.7	8.6	8.3	7.9	-2.0	-1.7	-1.6
미국	1.6	2.1	1.9	1.2	2.0	2.1	4.9	4.7	4.7	-4.6	-4.2	-4.0
일본	0.7	0.8	0.4	-0.3	0.0	0.1	3.2	3.2	3.2	-5.0	-5.1	-5.0
중국	6.6	6.2	6.0									
세계	3.0	3.4	3.5									

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6*, 2016.



- EU 이사회·의회, 2017년 EU 예산 확정(2016.12.1.)²⁾
 - 11월 17일 EU 이사회·의회 동수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가 2017년 예산안을 수정·합의하였으며, 이후 이사회와 의회가 이를 가결
 - (규모) 승인기준³⁾ 1,579억유로, 지급기준 1,345억유로를 편성
 - 승인기준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지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6% 감소
 - (우선순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투자 장려, 이민 근본 원인 해소를 포함한 이민 위기 대응 등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2017년 예산을 편성
 - 스마트⁴⁾·포용적⁵⁾ 성장 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749억유로(승인기준)를 편성
 - Horizon2020(연구·혁신프로그램), Erasmus+(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 COSME(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CEF(교통·통신·에너지 인프라기금) 등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분야(1a)에 전년 대비 12.1% 증가한 213억유로를 지출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 기금(EFSI)에 27억유로 편성
 - 국경 통제 강화와 이·난민 위기 해결에 전년 대

비 11.3% 증가한 60억유로를 지출하고, 그중 2억 유로는 EU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계획에 지출

- European farmers(회원국 농업 지원)에 426억 유로 지출
- EU 전 기관의 직원을 2013~2017년간 5% 감축하기로 한 2013년 합의를 반영

〈표 2〉 2017년 EU 예산안 주요 일정

일자	내용
2016.6.30.	집행위, 2017년 EU 예산안 발표
2016.9.12.	이사회,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16.10.26.	의회, 예산안 수정 가결
2016.10.26.	이사회, 의회 수정안 거부
2016.10.28.	조정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작
2016.11.17.	조정위원회, 수정안 합의
2016.11.28.	이사회, 합의안 채택
2016.12.1.	의회, 합의안 가결

2)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3743_en.htm, 2016.11.17.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11/16-budget-2017/>, 2017.11.17.

EU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61117STO51529/parliament-reaches-deal-with-the-council-on-the-eu-budget-for-2017>, 2016.11.18.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11/28-eu-budget/>, 2016.11.28.

EU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20161129IPR53614/eu-budget-2017-approved-better-support-for-youth-and-growth-initiatives>, 2016.12.1.

3)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임

4) 연구·혁신, 교육·훈련, 에너지·교통·통신망, 사회 정책 등

5)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발전 등

〈표 3〉 2017년 EU 확정 예산

(단위: 십억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확정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확정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1. 스마트 ¹⁾ ·포용적 ²⁾ 성장	74.9	7.2	56.5	-4.7
1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1.3	12.1	19.3	11.0
1b.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3.6	5.4	37.2	-11.2
2.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58.6	-6.2	54.9	-0.1
3. 안보 및 시민권	4.3	-0.2	3.8	25.3
4. 대외정책	10.2	10.9	9.5	-6.6
5. 행정비용	9.4	5.0	9.4	5.0
특별기금	0.5	-4.0	0.4	55.7
합계	157.9	1.7	134.5	-1.6

출처: EU 집행위·이사회·의회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6* 발표 (2016.11.28.)⁶⁾

- (세계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3%, 2018년 3.6%로 전망됨
 -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하나 재정정책이 민간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일 전망
 - *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국내 투자 및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2017년에 0.1%p, 2018년에 0.3%p, 중국의 재정 부양책이 수요를 계속 부양할 경우 2017~18년 연간 0.2%p 상승
 - (주요 리스크)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한 금융 시장 왜곡 및 리스크 확대, 일부 신흥국의 급격한 채무 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의한 세계

교역 증가 약세 등

- (주요국 경제전망)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2%, 2018년 2.3%로 전망
 - (미국) 완화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2017년 2.3%, 2018년 3%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유로지역) 투자 부진, 높은 실업률 및 완만한 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17년 1.6%, 2018년 1.7%로 전망
 - (일본) 엔화 평가절상 및 아시아 지역 교역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완화적 재정 정책이 내년 경제활동을 부양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2017년 1%, 2018년 0.8%로 전망
 - (중국) 재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7년 6.4%, 2018년 6.1%로 경제성장률이 다

6) OECD, <http://www.oecd.org/economy/outlook/economicoutlook.htm>



소 둔화될 전망

- (신흥경제국) 인도는 2017~18년 경제성장률이 7.5%를 상회할 전망이나 많은 신흥경제국의 성장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 브라질은 2017년 말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전망
- (한국) 추경, 저금리 등으로 인해 2016년은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2017년 경제성장률은 2.6%, 2018년 3.0%로 전망
- (정책 권고) 더욱 확고하고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요 부양과 미래의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통화정책) 많은 선진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통화 정책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임
- (재정정책) 강력한 구조정책과 함께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 * 보고서는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전체의 완화적 재정정책과 지출구조 변경 계획이 성장 및 잠재생산 제고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
- (구조개혁) 추가 재정부양책의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시장 경쟁 강화, 주택 정책 및 구직 지원 관련 개혁 등 더욱 적극적인 구조 개혁 이행이 요구됨

〈표 4〉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04-2013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6 Q4	2017 Q4	2018 Q4
실질GDP 성장률 ¹⁾									
세계 ²⁾	3.9	3.3	3.1	2.9	3.3	3.6	3.2	3.4	3.7
OECD ^{2) 7)}	1.6	1.9	2.1	1.7	2.0	2.3	1.8	2.1	2.3
미국	1.6	2.4	2.6	1.5	2.3	3.0	1.8	2.5	2.9
유로 지역 ⁷⁾	0.8	1.2	1.5	1.7	1.6	1.7	1.6	1.6	1.7
일본	0.8	0.0	0.6	0.8	1.0	0.8	1.5	0.8	0.9
Non-OECD ²⁾	6.6	4.6	3.8	4.0	4.5	4.6	4.3	4.5	4.7
중국	10.3	7.3	6.9	6.7	6.4	6.1	6.8	6.1	6.1
총산출 갭(Output gap) ³⁾	-0.5	-2.1	-1.5	-1.4	-0.9	0.0			
실업률 ⁴⁾	7.1	7.4	6.8	6.3	6.1	6.0	6.2	6.1	5.9
인플레이션 ^{1) 5)}	2.0	1.6	0.7	1.0	1.7	2.1	1.3	1.7	2.3
재정수지 ⁶⁾	-4.6	-3.5	-3.0	-3.1	-3.0	-2.9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¹⁾	5.3	3.9	2.6	1.9	2.9	3.2	2.1	2.8	3.5

주: 1) Percentage changes; last three columns show the increase over a year earlier

2) 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Per cent of potential GDP

4) Per cent of labour force

5)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Per cent of GDP

7) With growth in Ireland in 2015 computed using gross value added at constant prices excluding foreign-owned multinational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6*, Table 1.1.

- (무역정책) 불필요한 교역 비용 감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교역을 촉진하고 신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을 방지해야 함

- OECD, 2016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16. 11.21.)⁷⁾
 - OECD 국가의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분기보다 0.3%p 증가한 0.6%를 기록
 - G7국가 중 영국과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보다 증가함
 - (미국) 2016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p 증가한 0.7%임
 - (EU) 2016년 3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전분

기와 동일한 0.4%를 기록

- ☞ 프랑스(0.2%), 이탈리아(0.3%)의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독일(0.2%)과 영국(0.5%)는 전분기 대비 감소
- (일본) 2016년 3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p 증가한 0.5%임
- OECD 국가의 2016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7%로 2분기(1.6%) 기록보다 다소 상승함
 - 주요 7개국의 2016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영국(2.3%)이 가장 높고 일본(0.8%)이 가장 낮음

〈표 5〉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단위: %)

	2014		2015				2016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Total	0.6	0.6	0.7	0.4	0.5	0.3	0.4	0.3	0.6
G20	0.9	1.0	0.8	0.7	0.8	0.7	0.7	0.6	.
EU	0.5	0.5	0.7	0.4	0.4	0.5	0.5	0.4	0.4
Euro 지역	0.4	0.4	0.8	0.4	0.3	0.5	0.5	0.3	0.3
주요 7개국(G7)	0.7	0.6	0.5	0.4	0.4	0.2	0.4	0.3	0.6
캐나다	0.5	0.8	-0.2	-0.1	0.5	0.1	0.6	-0.4	.
프랑스	0.3	0.2	0.6	0.0	0.4	0.3	0.6	-0.1	0.2
독일	0.3	0.8	0.2	0.5	0.2	0.4	0.7	0.4	0.2
이탈리아	0.0	-0.0	0.3	0.2	0.1	0.2	0.4	0.0	0.3
일본	-0.7	0.6	1.2	-0.3	0.4	-0.4	0.5	0.2	0.5
영국	0.8	0.8	0.3	0.5	0.3	0.7	0.4	0.7	0.5
미국	1.2	0.6	0.5	0.6	0.5	0.2	0.2	0.4	0.7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7) OECD,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16-oecd.htm>




〈표 6〉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014		2015				2016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Total	1.9	1.9	2.3	2.4	2.2	2.0	1.7	1.6	1.7
G20	3.3	3.3	3.4	3.4	3.3	3.0	3.0	2.9	.
EU	1.6	1.8	2.1	2.2	2.1	2.1	1.8	1.8	1.8
Euro 지역	1.1	1.3	1.8	2.0	2.0	2.0	1.7	1.6	1.6
주요 7개국(G7)	1.8	1.7	2.1	2.1	1.9	1.5	1.4	1.3	1.4
캐나다	2.5	2.4	2.0	1.0	1.0	0.3	1.2	0.9	.
프랑스	0.7	0.6	1.3	1.1	1.1	1.3	1.4	1.3	1.1
독일	1.1	1.6	1.1	1.8	1.7	1.3	1.8	1.7	1.7
이탈리아	0.0	0.1	0.4	0.6	0.6	0.9	0.9	0.7	0.9
일본	-1.5	-0.9	-0.9	0.8	1.9	0.9	0.2	0.7	0.8
영국	3.1	3.5	2.8	2.4	1.9	1.7	1.9	2.1	2.3
미국	2.9	2.5	3.3	3.0	2.2	1.9	1.6	1.3	1.5

주: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FY2016-17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 하원 상정(2016.11.3.)⁸⁾
 - FY2016-17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은 약 42.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38.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3.8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의결지출) 의결지출의 대부분은 FY2016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들과 연관된 지출로,

FY2016-17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의 의결지출은 본 세출예산에서의 의결지출의 약 4.3% 규모

- ☞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지역 위기에 대한 자금지원 약 3.8억캐나다달러, 윈저-디트로이트 국제교량 건설을 위한 운영 및 자금 수요에 대한 자금 약 3.5억캐나다달러,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자금(FY2016 예산안) 약 2.5억캐나다달러 등
 - (법정지출) 법정지출은 입법화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출로 추경예산안에서는 정보 목적으로 법정지출 전망치를 제공

8) 캐나다 재무위원회, <http://www.tbs-sct.gc.ca/hgw-cgf/finances/pgs-pdg/se-bsd/sups/b/20162017/seb-bsdb01-eng.asp#toc1-2>

〈표 7〉 FY2016-17 추경예산안(B)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 분		일반 예산(Budgetary)	투융자 예산(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3,881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75	0
	합계	4,256	0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B)

■ 재무부, 가을 경제 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2016.11.1.)⁹⁾

- 가을 경제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 장관은 2016년 예산안의 추진력과 지난 1년간 투자를 기반으로 중산층 발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 일자리 창출, 깨끗한 환경,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대중교통,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교통인프라, 농촌 및 북부 지역에 810억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투자
 - 캐나다에서 캐나다 및 국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재능 및 기술 활용을 돕기 위해 캐나다 이민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전략 수립
 - 캐나다를 활성화시키고 캐나다에 이익이 되는 투자 증진을 위해 세계 기업과 협력하는 영향력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Investment in Canada Hub 설립
 -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증거 및 분석을 제공하고 정부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통계청 및 의회예산처(PBO)의 독립성

을 강화

- 가을 경제 보고서에서는 14개 그룹 민간부문 전문가¹⁰⁾ 대상 경제전망 서베이(2016.9) 결과를 수정한 경제 및 재정 전망치를 발표, 실질GDP 성장률은 2016 예산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정적자도 하향 조정됨
 - (경제전망) 2016년 실질GDP 성장률은 포트맥머리(Fort McMurray) 산불로 인한 2분기 생산량 하락에 기인하여 2016 예산안 전망치보다 0.2%p 하향 조정된 1.4%로 전망되며, 2017년 실질GDP 성장률 또한 예산안 전망치보다 0.2%p 하향 조정
 -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에 기인하여 GDP 인플레이션 전망도 2016 예산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목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
 - (재정전망) 경제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 재정전망 또한 하향 조정되어 FY2016-17 재정적자

9) <http://www.budget.gc.ca/fes-eea/2016/docs/nrc/01-11-2016-en.html>

10)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Markets,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는 예산안 전망치 대비 43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51억캐나다달러, FY2017-18 재정적자는 12

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78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8〉 2016년 가을 경제전망치 조정 비교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20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6	1.4	2.2	2.2	2.0	1.9	-	1.9
	2016 Fall Update	1.2	2.0	1.8	1.8	1.8	1.9	1.7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6	2.3	4.6	4.3	4.2	4.1	-	3.9
	2016 Fall Update	1.8	4.3	3.7	4.0	3.9	4.0	3.5
실업률	Budget 2016	7.1	6.9	6.5	6.4	6.3	-	6.6
	2016 Fall Update	7.0	6.9	6.8	6.7	6.5	6.2	6.8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Budget 2016	1.6	2.0	2.0	2.0	2.0	-	1.9
	2016 Fall Update	1.6	2.1	1.9	2.0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

〈표 9〉 2015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Budget 2016 재정수지		-5.4	-29.4	-29.0	-22.8	-17.7	-14.3	n/a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4.2	-2.6	-4.7	-8.1	-9.2	-10.9	
	Less(-): 프로그램지출	0.1	0.1	-1.9	-4.6	-3.0	-2.8	
	Less(-): 공공채무비용	0.1	0.8	1.9	3.5	4.6	5.2	
2016 Fall Update 재정수지		-1.0	-25.1	-27.8	-25.9	-19.3	-16.8	-14.6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

- 재무부,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6 No. 2 발표(2016.10.25.)¹¹⁾
 - 정부는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2016년 예산안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법안을 발표

- 이번 시행법안에는 실질 가치가 장기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하도록 하는 대책을 포함

11) <http://www.fin.gc.ca/n16/16-140-eng.asp>

2. 기타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16 발표(2016.10.24.)¹²⁾
 -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2.3%, 2018년 2.2%로 완만히 회복할 것이며,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연방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부양책에 기인하여 2016년에 1.2%에서 2017년 2.3%, 2018년 2.2%로 완만히 회복할 것이며, 기업 투자 및 수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2019-2021년 기간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 명목 GDP는 2016-2021기간 동안 연평균 3.7% 성장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6-17 재정적자는 224억캐나다달러, FY2017-18 재정적자는 249억캐나다달러로 상승할 것이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전망
- ☞ 2016년 봄의 일시적인 세입감소는 경제 회복 및 기업 이익 반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회복될 전망
- ☞ FY2016-17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31.7%, FY2017-18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31.3%로 전망되며, 2016년 예산에서

〈표 10〉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2021
실질GDP 성장률	1.2	2.3	2.2	1.7
GDP 인플레이션	0.5	2.5	2.1	2.0
명목GDP(십억캐나다달러)	2,017	2,117	2,208	2,379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6*.

〈표 11〉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총세입	295.5	292.8	304.7	317.2	331.6	346.4	362.0
총세출	296.4	315.2	329.7	335.3	344.6	357.0	371.4
프로그램지출	270.8	291.3	305.2	308.9	314.7	324.2	336.4
이자지출	25.6	24.0	24.5	26.4	29.9	32.9	35.0
재정수지	-1.0	-22.4	-24.9	-18.2	-13.0	-10.6	-9.4
연방채무(GDP 대비 %)	31.1	31.7	31.3	30.9	30.3	29.7	29.0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6*.

12)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en/blog/news/EFO_October_2016



발표한 GDP 대비 연방채무 목표(FY2020-21에 31% 이하로 감소)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유로 증가한 347억유로

<표 12> 2016년 1~9월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1~9월		증감률
	2015년	2016년	
재정지출	275,281	277,351	0.8
공공기관에 대한 교부금 (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88	988	0.0
인건비	91,321	92,285	1.1
운영비	38,442	37,719	-1.9
채무비용	24,956	24,135	-3.3
투자지출	7,645	7,893	3.2
개입지출	56,994	64,748	13.6
재정운용지출 (opérations financières)	988	963	-2.5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53,948	48,620	-9.9
재정수입	226,467	229,009	1.1
조세수입	212,964	218,990	2.8
세외수입	9,814	7,739	-21.1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3,688	2,280	-38.2
일반회계 재정수지	-48,815	-48,342	-1.0
특별회계 재정수지	-25,720	-34,675	34.8
총재정수지	-74,534	-83,017	11.4

출처: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re 2016 (2016.11.8)

프랑스

- 2016년 1~9월 예산집행결과 발표(2016.11.8.)¹³⁾
 - (재정수지) 2016년 3분기(1~9월)까지 재정적자는 83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5억유로 증가¹⁴⁾
 - (지출) 재정지출은 2,774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유로(0.8%) 증가하였으나, 일정범위 기준(périmètre constant)¹⁵⁾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수입)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억유로 증가한 2,290억유로
 - ☞ 조세수입은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16억유로), 부가가치세(+20억유로), 에너지제품 소비세(+17억유로), 기타 세수(+9억유로)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60억유로 증가한 2,190억유로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본 예산에 제시된 2016년 수정 전망치와 모두 일치
 - ☞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억유로 감소한 77억유로
 -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지불청에 지급된 특별 선급금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9억

13) 재무부 예결산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6/situation-mensuelle-budget-etat-30-septembre-2016#.WCJuFU27p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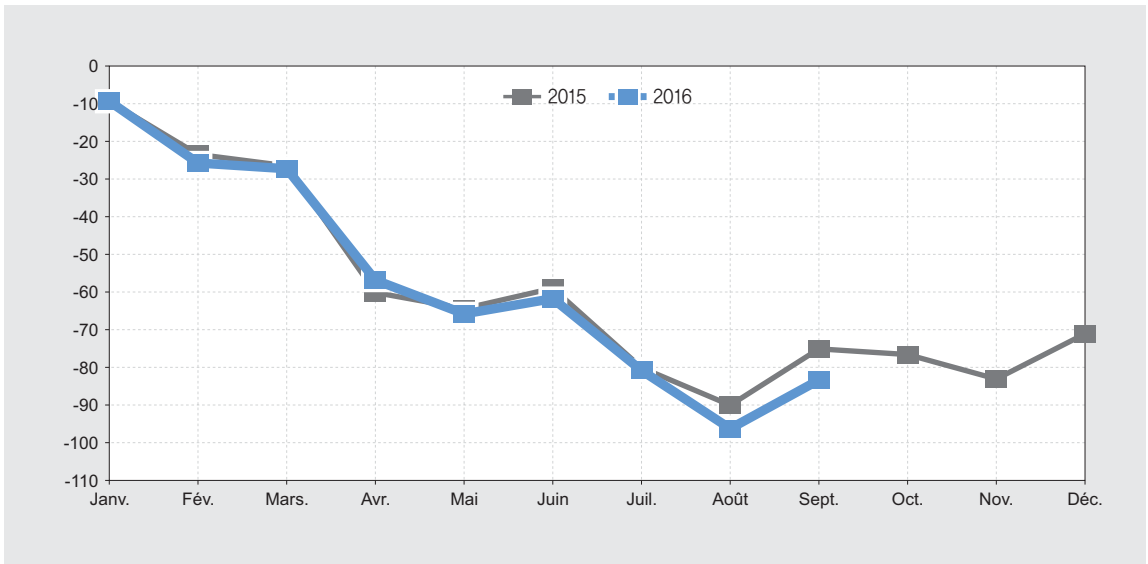
14) 특별회계 수지 재작성시(연말에 환수되는 지불청*의 특별 선급금 포함) 전년 대비 5억유로 개선

* 지불청(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은 구 국립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이며 지역농업정책인 영농인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 담당(2016년 8월 제2호 「재정동향」 IV. 프랑스 참고)

15) 매년 지출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므로 정부지출의 범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정시켜 지출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

[그림 2] 2016년 1~9월 재정수지 집행결과

(단위: 십억유로)



출처: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septembre 2016(2016.11.8.)

■ FY2016 수정예산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6) 발표(2016.11.18.)¹⁶⁾

- (경제 · 재정전망) 2016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본예산 대비 0.1%p 하향 조정된 1.4%, 재정적자는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한 GDP 대비 3.3%로 전망
 - 2017년 경제성장률은 1.5%, 재정적자는 GDP 대비 2.7%로 2016년 본예산 전망치를 유지
 - 2016년의 테러,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 농작물 수확 감소 등 일시적 충격이 점차 소멸됨에 따라 2017년부터 경제가 활력을 띠며, 2017년 1.5%의 성장률 수준은 2017년 예산안의 조

치와 함께 재정적자를 3% 목표로 미만으로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 수입) 2016년 수정예산안의 재정지출은 본예산 대비 4억유로 증가한 3,776억유로, 재정수입은 17억유로 감소한 3,018억유로로 전망
 - 본예산의 2015-17년 지출절감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2016년 중앙정부 지출절감 목표(70억유로)를 실현한 것으로 확정, 연금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출 목표¹⁷⁾는 2015년 대비 20억유로 이상 감소한 2,952억유로로 본예산과 동일
 - 재정적자는 2016년 본예산(723억유로) 대비

16) 재무부 예결산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6/publication-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6#.WDKVS027qUk>

17) 프랑스는 공무원연금 및 채무상환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은 0이 되어야 한다는 지출 목표를 도입



24억유로 감소한 699억유로

• (주요정책)

- 부유세(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를 통한 세금최적화 방지¹⁸⁾를 위해 전문적 자산의 개념 명확화 및 조세포탈 대응 지속, 헌법과 EU공동체에 부합한 프랑스 세법 개정, 경제 및 문화 활동 지원과 환경성과 강화에 주안점을 둔 조세정책
- 지자체, 운송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조정, 정부 대출보증 시행, 공적개발원조 지원 강화,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를 위한 2억유로의 긴급지원자금 마련의 4가지 특별 규정을 포함

〈표 13〉 FY2016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5 (실적)	2016 본예산(A)	2016 수정예산(B)	B-A
총지출	366.7	377.2	377.6	0.4
총수입	294.5	303.5	301.8	-1.7
조세수입	280.1	287.9	285.3	-2.6
세외수입	14.4	15.6	16.5	0.9
특별회계	1.6	1.4	5.8	4.5
재정수지	-70.5	-72.3	-69.9	2.4

출처: PLFR 2016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제149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16.11.4.)¹⁹⁾

*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들²⁰⁾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통상 5월, 11월에 결과를 발표

- (세입)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16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6,995억유로이며, 2021년 8,355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월 추계²¹⁾ 대비) 2016년 11월 추계치는 강건한 국내수요 및 높은 고용률, 가구·기업소득의 증가로 금년 5월 추계 대비 43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추계에서 2016~2020년 총 세입을 2016년 6,912억유로, 2020년 8,081억유로로 전망

18) 2013년부터 적용된 부유세(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는 재산 130만유로 이상의 사람에게 부과되며 부유한 사람들은 각종 공제와 면제로 부유세를 광범위하게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

19) 독일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1.4.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6/11/2016-11-04-pm22-steuerschaetzung.html>

20) 연방 재무부는 독립적인 '세수추계 작업반'의 추계를 기초로 검토 작업을 행하며, 연방 재무부 외에 연방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독일경제연구소, 뮌헨대학 경제연구소, 쾰른대학 세계경제연구소, 할레 경제연구소,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로 구성(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독일의 재정제도』, 2011.)

21) 독일의 세수추계 과정과 '16년 첫 번째 세수추계 결과는 「재정동향」 2016년 5월 2호 참고

〈표 14〉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유로,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방정부	2,816 (4.0)	2,915 (3.5)	3,056 (4.9)	3,132 (2.5)	3,261 (4.1)	3,376 (3.5)	3,492 (3.4)
주정부	2,679 (5.4)	2,809 (4.8)	2,883 (2.6)	2,992 (3.8)	3,090 (3.3)	3,205 (3.7)	3,324 (3.7)
기초자치단체	928 (5.9)	943 (1.6)	1,012 (7.4)	1,030 (1.8)	1,065 (3.4)	1,103 (3.6)	1,144 (3.7)
EU	309 (-0.2)	289 (-6.6)	294 (1.8)	364 (23.7)	375 (2.9)	383 (2.2)	396 (3.3)
총 세입	6,733 (4.6)	6,955 (3.3)	7,245 (4.2)	7,518 (3.8)	7,790 (3.6)	8,067 (3.6)	8,355 (3.6)

주: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16~2021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1.4.

2. 기타

- 연방내각, 주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민신청자 추가지원 승인(2016.11.2.)²²⁾
 - 동 지원은 난민 수용시설 마련과 돌봄 등 망명지 원자복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이행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2016년 25억 5천만유로, 2017년 11억 6천만유로 추가 지원 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 일본

- 내각부,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치 발표(2016.11.14.)²³⁾
 - 2016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연율 2.2%), 명목GDP 성장률은 0.2%(연율

0.8%)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 0.1%p이며, 2분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던 순수출은 3분기 0.5%p 기여도를 기록해 성장을 이끔
 - ☞ 개인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함
 - ☞ 재화·서비스 수출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 아이폰 7 등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치, 전자통신 기기, 철강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철광석, 원유·천연가스 등이 감소에 영향을 미침

22) 독일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1.2.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6/11/2016-11-02-pm-bund-laender-asyl.html>

23) 내각부, 「2016(平成28)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6.11.14.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6/qe163/pdf/qepoint1631.pdf



〈표 15〉 2016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기여도	3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4	-0.4	0.5	0.2	0.5	-	2.2
국내수요(내수기여도)	0.4 (0.4)	-0.5 (-0.5)	0.4 (0.4)	0.3 (0.3)	0.1 (-)	- (0.1)	0.4 -
민간수요	0.5	-0.6	0.3	0.4	0.1	(0.0)	0.2
민간최종소비	0.5	-0.8	0.7	0.1	0.1	(0.0)	0.2
주택투자	1.2	-0.4	-0.3	5.0	2.3	(0.1)	9.6
설비투자	0.8	1.2	-0.7	-0.1	0.0	(0.0)	0.1
민간재고증감 ¹⁾	(-0.0)	(-0.1)	(-0.1)	(0.1)	-	(-0.1)	-
공적수요	-0.0	-0.1	0.8	0.1	0.2	(0.0)	0.8
정부소비	0.3	0.6	0.9	-0.3	0.4	(0.1)	1.7
공적투자	-1.2	-3.4	0.0	2.3	-0.7	(-0.0)	-2.7
공적재고증감 ¹⁾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2)	-	(0.5)	-
수출	2.6	-1.0	0.1	-1.5	2.0	(0.3)	8.1
수입	2.4	-1.2	-0.6	-0.6	-0.6	(0.1)	-2.4

주: 1.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6(平成28)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6.11.14.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영국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가을보고서 2016(Autumn Statement 2016) 발표(2016.11.23.)²⁴⁾
 - (경제전망) 예산책임청(OBR)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3월 전망치인 2.2%에서 1.4%로 하향 조정
 - 기업투자 및 가계지출 감소로 단기 성장률이 둔화되며, 투자 위축은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 경제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
 -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이 2.3%로 높아져 관리목표치인 2.0%를 넘어설 전망
 - (재정전망) FY2019-20부터 공공부문 순차입(PSNB) 흑자 전환을 이룬다는 기존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²⁵⁾
 - 세입증가율 감소, 지방정부 지출 증가, 복지수당 확대에 의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Budget 2016 전망치 대비 1,220억파운

- 드(943억파운드 → 2,163억파운드) 증가
-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90.2%를 기록할 전망
- (세입) FY2016-17 공공부문 경상세입은 전년 대비 308억파운드 증가한 7,106억파운드로 GDP의 36.4%를 차지
 - FY2015-16 대비 소득세 48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NICs) 103억파운드, 부가가치세 36억파운드, 법인세 17억파운드 증가한 반면, 은행세는 5억파운드 감소
- (세출) FY2016-17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230억파운드 증가한 7,788억파운드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39.9%를 차지
 - FY2015-16 대비 사회보장급여 23억파운드,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29억파운드, 환경부담금 27억파운드,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5억파운드 증가

〈표 16〉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실적	전망					
	15	16	17	18	19	20	21
실질GDP 성장률	2.2	2.1	1.4	1.7	2.1	2.1	2.0
소비자물가(CPI)상승률	0.0	0.7	2.3	2.5	2.1	2.0	2.0
실업률(LFS)	5.4	5.0	5.2	5.5	5.4	5.4	5.4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November 2016*, 재무부, *Autumn Statement 2016*.

24)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1559/autumn_statement_2016_web.pdf

25) FY2019-20 재정수지 흑자 달성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이를 위해 2015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215억파운드의 지출감축을, 2016년 3월 Budget 2016에서 35억파운드의 추가적인 공공지출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표 17〉 영국 재정 및 예산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실적	전망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재정전망)							
공공부문 순차입(GDP %)	4.0	3.5	2.9	2.2	1.0	0.9	0.7
공공부문 순채무(GDP %)	84.2	87.3	90.2	89.7	88.0	84.8	81.6
(예산전망)							
경상세입	679.8	710.6	738.0	768.0	801.8	834.8	869.2
(GDP %)	(36.1)	(36.4)	(36.9)	(36.9)	(37.0)	(37.0)	(37.1)
총관리지출(TME)	755.8	778.8	797.0	814.5	823.7	855.6	886.4
(GDP %)	40.1	(39.9)	(39.8)	(39.1)	(38.0)	(38.0)	(37.8)
자원지출		699.8	713.0	729.4	736.2	754.5	780.1
연간관리지출(AME)		370.2	386.9	400.3	407.2	421.1	439.8
부처별지출한도(DEL)		329.6	326.1	329.1	328.9	333.4	340.4
자본지출		79.0	84.0	85.1	87.5	101.1	106.3
연간관리지출(AME)		26.6	26.7	25.8	27.3	30.4	32.0
부처별지출한도(DEL)		52.3	57.2	59.2	60.2	70.6	74.2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November 2016*.
재무부, *Autumn Statement 2016*.

• (예산기조)

- 공공재정과 재정정책(Public finances and fiscal policy)
 - ☞ 다음 회기 중 가능한 빨리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이번 회기까지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을 잠정목표로 설정
 - ☞ 차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적(highly-targeted) 인프라 및 혁신 투자에 한해 허용하며, 기타 신규사업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

- 생산성(Productivity)

-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신규 조성하여 향후 5년간 230억파운드를 인프라 건설 및 혁신 분야에 투입
- ☞ 신규주택 건설 72억파운드, 과학 및 혁신 분야 연구개발 47억파운드, 도로 건설 26억파운드, 통신 10억파운드, 기타 분야 70억파운드

- 과세(Tax)

- ☞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과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 인적공제 12,500파운드로 인상, 세율 40%

- 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인하
- 공공지출(Public spending)
 - ☞ 재정적자 여전히 큰 규모이므로, 공공지출 통제와 효율화를 위한 노력 지속
 - ☞ Spending Review 2015에서 설정한 지출 계획을 유지하며, FY2021-22까지 부처별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율 수준으로 통제

- 비 상향조정
- EU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2018년 1.5%, 2019년 1.6%의 저조한 GDP 성장률이 전망
-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이 2.7%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인 2%를 넘어설 전망
 - “물가상승률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 향후 물가 상승이 가속화(overshoot)될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결정²⁷⁾

2. 기타

- 영국은행(Bank of England), 인플레이션 보고서(*Inflation Report, November 2016*) 발표(2016.11.3.)²⁶⁾
 - 단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조정하였지만,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조정
 -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계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16년 2.2%, 2017년 1.4%로 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

〈표 18〉 주요 경제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 성장률	2.2 (2.0)	1.4 (0.8)	1.5 (1.8)	1.6
물가상승률(CPI)	1.3 (1.2)	2.7 (2.0)	2.7 (2.4)	2.5
실업률(LFS)	4.9 (5.1)	5.4 (5.5)	5.6 (5.5)	5.6
기준금리	0.2 (0.1)	0.2 (0.1)	0.3 (0.2)	0.4

주: () 안은 *Inflation Report, August 2016*상의 전망치
출처: 영국은행, *Inflation Report November 2016*, Table 5.B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26) 영국은행,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inflationreport/2016/nov.pdf>

27) 지난 8월 영국은행은 브렉시트에 대응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0.25%p 인하하고, 국채 자산매입 규모를 600억파운드 확대해 4,350억파운드로 상향조정함(2016년 8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미국

■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 (2016.11.8.)에 당선.²⁸⁾ 향후 대규모의 감세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 계획(2016.11.9.)²⁹⁾

- 투표 집계 결과,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 득표율에서 0.7%p 앞섰으나, 주 승자독식(winner take-all) 방식에 따라 트럼프가 주 선거인단 수에서 과반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둠

* (유권자 득표율) 트럼프: 60,526,852(47.2%)/클린턴: 61,324,576(47.9%)

* (주 선거인단 확보) 트럼프: 290명/클린턴: 232명

-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채무증가분은 5.3조달러로 CBO의 기준선 전망(86%)보다 18%p 높은 GDP 대비 105%를 기록할 전망

* 현재(FY2015 실적 기준) 채무 규모: 13조 1,170억달러, GDP 대비 73.7%

- (세입 계획)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Obamacare) 폐지 및 개인소득세·기업세제(business tax) 개혁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 5.8조달러 세수 손실 전망

* 분야별 감소: 개인소득세(1.45조달러)/기업세제개혁(2.85조달러)/건강보험개혁법 폐지(1.2조달러)

- (지출 계획) 국방재건(미사일 방어 현대화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위해 4,500억달러, 재향군인 복지에 5천억달러,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에 최대 3,500억달러 소요 전망

☞ 비국방지출의 경우 페니플랜³⁰⁾(penny plan)을 통해 향후 10년간 7천 5백억달러 감소를 추진할 계획(추가적으로, 비승인된 사업 폐지를 통해 2천 5백억달러의 지출 감축 시사)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28) CNN, <http://edition.cnn.com/election/results/president>

29) <http://crfb.org/blogs/what-we-know-about-president-elect-trumps-agenda>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30)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 대비 1% 감축하는 것을 의미

| 정책 흐름 |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 본 자료는 2017년 1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국무회의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준수
 - 배출권 부족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 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KOC)**을 구입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

* KAU(Korean Allowance Unit):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 매년 정하여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KOC(Korean Offset Credit):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 이행 수단으로 사용 가능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15년부터 '16.10월까지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총 1,480만 톤*규모임
 - * '15년 사전할당량(543백만 톤)의 약 2.73%에 해당

■ '16.12월 개최한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기재부1차관)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798,664톤을 신규로 승인함

* 배출권 거래 시 약 150억원 규모('16.12월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격 18,500원 적용)

-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₂O)를 감축한 사업과 폐기물 처리 시 배출되는 메탄가스(CH₄)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

	외부사업 유형	감축량(tCO ₂ -eq)
1	아산화질소(N ₂ O) 감축사업	797,696
2	쓰레기 매립지 발생 메탄(CH ₄)가스 에너지화 사업	968

주: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 강도 : CH₄(21배), N₂O(310배)

- 기획재정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17.3월 개최 예정

■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는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이하, 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

* 농업분야 신규등록 5건, 산림분야 신규등록 2건, 농업분야 개정등록 5건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본 자료는 2017년 1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일반 개선사항

1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강화합니다.

1.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

- 스타트업 전용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증권의 매매 허용

- **(현행)**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증권을 취득 시, 해당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매매 제한
- **(개선)** '16.11월에 개설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매매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투자자는 자유롭게 매도/매수가격을 제시하며 스타트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음
- **(시행시기)** '17년 상반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기대효과)** 증권 매매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져 크라우드펀딩투자의 매력도가 상승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개선)**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이후 2년간은 50% 감면)
 - * 중소기업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
- **(시행시기)** '17.1.1. (「조세특례제한법」)
 - ⇒ **(기대효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3. 창업·벤처전문 PEF제도 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 제도 도입 및 세제지원

- **(현행)** PEF가 벤처투자 기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투자기구 대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족
- **(개선)** 창업·벤처전문 PEF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벤처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제공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

** 법인세 공제(취득가액의 5%), 소득 공제(투자금액의 10%),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시기)** '17.1.1.(「자본시장법」)
⇒ **(기대효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및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확대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현행)** 개인은 벤처투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내국법인은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음
- **(개선)** 투자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접 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출자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후 7년 내 유상증자 납입
- **(시행시기)** '17.1.1.(「조세특례제한법」)
⇒ **(개선효과)**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5.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조달쇼핑몰(벤처나라) 구축

- **(현행)**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의 신생기업은 인지도와 공공 납품 실적 부족으로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 발생
- **(개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venture.g2b.go.kr) 구축 및 등록제품 확대

- 품질평가·기술평가 면제대상*은 개별부처의 평가·추천 없이도 조달청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나라의 등록 제품을 확대

* 개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 등을 받은 제품

- **(시행시기)** '16.10.12.
⇒ **(기대효과)** 아이디어·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6.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맞춤형 창업 및 성장지원 - 공공저작물 활용 제품 사업화 과정(맞춤형 컨설팅) 지원

- **(현행)**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사업화가 부진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2)
 - ** 예시: 남대문·남한산성·경복궁 사진, 용·도깨비문양 등 (공공누리포털)
- **(개선)**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컨설팅(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및 사업화 자금*을 제공
 - * '17년은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예산: 5억원)
- **(시행시기)** '17.3월
⇒ **(기대효과)** 공공저작물 활용을 촉진하여 창업과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

7.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액셀러레이터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이 제도화

- **(현행)**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별도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등록·운영에 애로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공간확보 지원,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 **(개선)**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혜택 등을 제도화
- 최소납입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가능

-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투자펀드 운영 허용, 양도세·증권거래세 면제 및 배당세 감면

- **(시행시기)** '16.11.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선효과)**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

2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8.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서비스업종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

- **(개선)**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

- **(시행시기)** '17.1.1.(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기대효과)**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약 15.4만개사)까지 확대되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9.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

-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 2개소 추가 선정을 통해 전국적인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대응

- **(현행)**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

* '14년, 4개 → '16년, 7개(부산, 대구, 청주, 전주, 안양, 강릉, 무안)

**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및 저작권 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맞춤형 저작권 교육, SW자산관리 컨설팅, 지역 저작권 자문단 구성 운영 등

- **(개선)** 전국 중소기업 진흥기관(광역시·도 지자체 산하)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의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추가 선정

- **(시행시기)** '17.2월~(2개 센터, 2월 공모 예정)
⇒ **(개선효과)**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 기업에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 제공

10. 수출금융의 확대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

- 수출금융자금의 규모와 대출기간을 늘리고,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

- **(현행)** 수출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수출금융자금*을 지원

* 긴급경영자금의 일종으로 수출계약이 있음에도 생산자금 등이 부족시 융자

- **(개선)**

① 수출금융자금을 확대 운영(총액 1,250억원 → 1,750억원)하고, 대출기간을 연장(6개월 → 1년)

②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설하여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유도

-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

- **(시행시기)** '17.1.1.(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기대효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11.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으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 **(현행)**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자금 지원 정책 부재
- **(개선)**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소상공인 육성 목적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 ① 지원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② 금리우대: 연 1.88%
 - ③ 한도우대: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총 100억원)
- **(시행시기)** '17.1월
- ⇒ **(기대효과)**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 확대

12. 중소기업 네트워크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R&D 지원 강화

-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내용)**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① 네트워크 기획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매칭 및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수행할 공동기술개발사업안의 구체화를 지원
 - 6개월 동안 네트워크당 3천만원 지급(총 19억원)
- ② R&D 지원: 네트워크 기획지원 단계를 거친 사업안 중 선별하여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
 - 2년 동안 네트워크 당 6억원 지급(총 56억원)

- **(시행시기)** '17.1월

- ⇒ **(기대효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R&D 역량을 높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추진

1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중소기업만이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여 중견기업은 명문 장수기업 신청 불가
 - *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기여와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으로 선정시 마크 활용이 가능하고, 중기청 지원사업 등에 우대 및 가점을 부여
- **(개선내용)**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기업 신청 및 선정을 허용
 - 확인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 및 마크 활용(생산제품 및 회사 홍보),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시행시기)** '17.6.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 ⇒ **(기대효과)**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14.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 중견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가능

- **(현행)**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해주는 가속상각*이 허용되지 않음
* 고정자산의 수익창출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게 하는 제도
- **(개선내용)**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
-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에 한정
- (대상 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차량·선박·항공기
- **(시행시기)** '17.1.1. (「조세특례제한법」)
⇒ **(개선효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조기 투자 유도

3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늘어납니다.

15. 새만금사업지역 기업투자 여건 개선
-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 지원 및 용적률 등 규제 완화

- **(현행)** 국공유지 장기 임대(최장 100년) 특례는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의 협력기업에 한정되며, 민간사업시행자는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여 함에 따라 자금부담 가중
* 사업시행자는 전체 매립지 중 투입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됨

- **(개선)**
 - ① 국공유지 장기 임대(최장 100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국내기업까지 확대
 - ② 민간사업시행자의 잔여매립지 장기임대(최장 100년)가 허용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최장 100년까지 인정 가능
 - ③ 새만금청장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 도시 및 건축규제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별도로 규정 가능
- **(시행시기)** '17.6.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대효과)**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

16. 보전산지에 준공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규정 마련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한 공장의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보전산지에 공장건설이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으로 인해 공장 증축은 제한
- **(개선내용)** 공장준공 완료 후 최대 5년(산지전용허가기간) 동안은 공장 증축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상 특례규정을 신설
- **(시행시기)** '17.6.3. (「산지관리법」)
⇒ **(기대효과)** 기업인의 경영활동 보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지전용 등 행정의 실효성·일관성 제고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현행)

구분	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대기업 포함) - 국외 사업기간 2년 이상 - 국내사업장 유무 불문 - 관세감면은 중소기업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 국외 사업기간 2년 이상 -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한정
요건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으로 복귀 - 관세감면은 제한 없음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전·후 동일업종 영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적용)
감면대상	법인세 등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세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세액감면	법인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2억원 한도) 50%(1억원 한도)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배제	

• (개선내용)

- (대상기업) 부분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지역범위)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추가)
-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완전복귀: 2억원 → 4억원, 부분복귀: 1억원 → 2억원)

• (시행시기) '17.1.1. (「조세특례제한법」)

* '17년부터 국내에서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

4 합리적인 환경규제로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합니다.

18. 사업장 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 제도 시행

- 사업장 환경관리방법 개선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환경질 제고

• (현행)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① (사전준비) 별도의 사전협의절차가 없음
- ② (허가신청) 하나의 사업장에 6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70여종의 신청 서류)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약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③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에 맞추어 시설 설치·운영
- ④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 (개선) 개별법에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하고,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 ① (사전준비) 시설설치계획 및 기술정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 ② (허가신청) 사업장당 1개의 통합허가 신청
- ③ (설치·운영) 과학·기술의 변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 기반의 시설 설치·운영

* 오염물질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

④ (사후관리) 허가사항을 5~8년 주기로 재검토

- (시행시기) '17.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제도시행 이후 10년간('17~'26) 기업의 직접비용 분석 결과 총 1,392억원 감소, 연간 139억원 절감 예상(연간균등순비용 175억원)

- (현행)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9,252억원
- (개선) 통합법에 따라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7,860억원

19.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오염토양 반출정화요건 완화, 부지면적의 명확화로 기업부담 완화

- (현행) 해당 기업의 부지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만 오염토양의 외부반출을 통한 정화가 허용되어, 오염토양 정화가 곤란한 경우 발생

* 오염된 토양은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함이 원칙이나 부지협소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 정화 가능

- (개선) 기업의 부지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까지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외부반출을 허용
- (시행시기) '17.1.1.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 ⇒ (기대효과) 오염토양 반출대상 부지면적 확대로 신속한 토양정화를 통해 기업불편 해소

20. 환경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 (현행) 국내 환경기업의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실험 부지가 부족하고, 지원체계 부족으로 해외 시장 판로개척 등의 경영활동 제약 발생

- (개선) 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R&D)부터 실증실험, 시제품제작,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17. 5월 준공 예정)

* 연구지원시설, 시제품생산지원시설, 파일럿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

- (시행시기) '17.6월
- ⇒ (기대효과) 국내 환경기술의 혁신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

21. 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신설
-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

- (현행)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대기질 저하
- (개선)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차량별로 최대 100만원, 6개월간 운영)
- (시행시기)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 ⇒ (개선효과)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가 감소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2.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확대
- 전기·수소차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혜택 제공

- (현행) 현재 전기차 구입시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소차는 별도의 지방세 세제지원이 없는 상황
- (개선) 전기·수소차 신규 구입시 취득세 감면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시기) '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선효과)**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신성장산업 발전동력 확대

5

빠르고 편리한 세관·검역행정을 만들겠습니다.

23.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 전자교환시스템을 통한 전자교환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현행)**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대 중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발생
- **(개선내용)** 한-중 세관 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CO-PASS)”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확인
- **(시행시기)** '17.1.1.
⇒ **(기대효과)** 대중국 수출기업이 화물지연으로 부담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중수출 확대에 기여

2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FTA협정관세에 대한 특혜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현행)** FTA체약국 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요
- **(개선내용)** FTA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 허용

- **(시행시기)** '17.1월(FTA특례고시 제18조 개정)
⇒ **(기대효과)** 사본제출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및 시간 절감

25.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 **(현행)** FTA 체결국으로 수산물 수출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임을 증명할 필요
- 다만,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거래확인서, 원료 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 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므로 원산지 증명 절차 복잡
- **(개선)**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4종의 인증서(수산물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원산지 인정 가능
- **(시행시기)** '16.11월(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기대효과)**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 대상 사업자가 확대되고, 수산물 수출 활성화 촉진

26.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 식물류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가능

- **(현행)**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IPPC: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

- **(개선내용)**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국제기준(ISPM)에 맞는 전자문서 형태의 증명서도 인정
- **(시행시기)** '17.12.3.(「식물방역법」)
⇒ **(기대효과)**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 예방 가능

27.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 수입 허용

- **(현행)**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 확보용 및 국제박람회용에 한정하여 수입금지식물을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내용)** 수입금지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낮으므로, 일정한 요건 및 기간 등 특별관리 조건 하에 수입 허용
- **(시행시기)** '17.12.3.(「식물방역법」)
⇒ **(기대효과)** 주로 중국 등에서 채종재배하는 종자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

28.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확대
- 「관세법」상 소액사건은 친족도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현행)** 「관세법」상 소액사건*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나 관세사만 선임 가능
*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 **(개선내용)** 휴대폰, 탁송품, 개인통관 화물 등 소액사건은 그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 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시행시기)** '17.2월(「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개정 중)
⇒ **(기대효과)** 소액사건에 대한 친족의 청구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편리와 권익을 향상

29. 보세공장 운영부담 완화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요건확인을 면제

- **(현행)** 보세공장*의 원재료와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은 모두 관련 법률상 요건** 확인이 필요
* 가공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 등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수입원재료의 세금납부를 보류해주는 공장
** 주요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 **(개선)** 보세공장에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의 요건확인 의무를 완화
- 총기류, 마약류, 검역물품 등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 **(시행시기)** '17.1.1.(관세청장의 증명 의무 면제 제외대상 고시 이후 반영)
⇒ **(개선효과)** 가공무역 활성화를 통한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

30. 수입 목재제품(연료용 제외)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수입 목재제품의 품질검사 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

- **(현행)** 목재제품 수입업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통관 전에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함
- 통관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표시

를 해야 하므로, 검사 및 표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세창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

* '15년도에 발생한 보세창고 비용 129억원(추정치)

- **(개선내용)** 목재제품 수입업자가 통관 후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와 표시 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시기)** '17.6.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기대효과)** 목재제품 품질검사를 판매·유통 전에 받게 함으로써 통관에 따른 수입업자의 보세창고 비용 절감 및 절차(시간) 간소화

6 공통 사항

31.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주회사 자산요건 합리화

–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자산요건)이고 자회사 주식이액 총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이어야 함
- **(개선)** 자산요건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개정 시행령 시행일('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총액 1~5천억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 필요
- **(시행시기)** '17.7.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기대효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

32.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 강화

– 대리점에 대한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리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었으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의 사후적인 금지라는 점에서 한계
- **(개선)**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라는 사전적 작위의무 신설
 - 밀어내기,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일반절차) 공정위는 위법성 심사 및 시정조치 등 처분(필요시 형사고발) →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본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시행시기)** '16.12.23.(대리점법 시행)
 - ⇒ **(기대효과)** 대리점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구축으로 본사-대리점 간 상생 기반을 마련

33. 전국 지자체 재산 대부·매각정보 일제 공개

– 전국 지자체 재산 대부·매각정보를 한눈에 확인

- **(현행)** 공유재산 대부·매각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준비기업이 입찰공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자체는 매각물건의 판매기회를 놓치는 등 수요·공급정보의 불일치 현상 발생
- **(개선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전국 지자체 재산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수요자 모두 필요정보를 신속하게 확인 가능
- **(시행시기)** '16.12.27.
 - ⇒ **(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들의 편리성이 증대

34.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확대
 - 복잡한 훈련비 지원을 단순화, 50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지원을 상향

- **(현행)**
 - ① 훈련 규모·유형 등에 따라 훈련비를 14개 구간으로 차등 지원
 - ② 일반위탁훈련비 지원(50인이상 우선지원기업 90%, 1,000인이상 기업 40%)
 - ③ 자체훈련 단가와 위탁훈련 단가 차등하여 지원
 - ④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7일 이상 30시간 이상 훈련)
- **(개선)**
 - ① 훈련 규모·유형 등에 따라 훈련비 지원구간을 7개로 조정
 - ② 일반위탁훈련비 지원(50인이상 우선지원기업 100%, 1,000인이상 기업 50%)
 - ③ 자체훈련 단가를 위탁훈련 단가로 통합하여 동일 적용
 - ④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5일 이상 20시간 이상 훈련)
- **(시행시기)** '17.2.28.(「고용보험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개선효과)** 행정편의 제공 및 기업의 참여 확대

35. 고용보험 가입신고 일원화
 -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현행)**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 가중
- **(개선)**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시행시기)** 2017.1.1.(「고용보험법 시행령」)

⇒ **(개선효과)** 사업주의 신고편의 제고 및 근로자 가입신고 담당 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유사한 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통합시 인력 효율화 가능

II. 산업별 개선사항

1 농림·축산·어업분야

36. 산지내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임산물 재배는 전용허가·신고 없이 가능

- **(현행)**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신고* 필요하며, 일시사용기간도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지속적인 임산물 재배가 곤란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실측도, 복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임산물 재배를 희망하는 임업인(단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개선내용)** 지표면을 기준으로 상하 50센티미터 범위에서 임산물 재배시 허가나 신고 면제
- **(시행시기)** '17.6.3.(「산지관리법」)
 ⇒ **(기대효과)** 임업인(단체)의 임산물 재배 불편해소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촌 소득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37.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심의절차 간소화

- **(현행)** 허가받은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어선감척을 추진할 때에도 대상자 선정과 어업인 지원*에 각각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어선감척에 장기간 소요
- * 폐업지원금 지원, 감척하는 어선의 존존가치 보상 등

- **(개선)** 허가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수를 줄이고자 감척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
* 대상자 선정 · 어업인 지원시 심의 → 심의 절차 삭제(자발적으로 어선을 감축하는 경우는 심의 불필요)
- **(시행시기)** '16.12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신속한 감척 진행을 통해 어업인의 불편과 부담을 감소

38. 도축장 입지제한 완화

- 산업단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도축장 설치 가능

- **(현행)** 대지면적 500㎡ 이상인 도축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한 필수시설*에 해당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시행자지정 →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이상, 평균 1년 이상 소요
- **(개선내용)**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축장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시기)** '17.1.1.(「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개선효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39. 신기술인증제 개선으로 농식품기업 편의성 향상

- 신기술 신속인증제 도입 및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등 개선

- **(현행)** 농식품분야 신기술의 발굴 및 우수성 인증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2회) 신기술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신청시 기술설명서, 공장등록증,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의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인증 신청을 상시 허용
- 인증신청시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의무는 삭제
- **(시행시기)** '17.1.1.(「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 **(기대효과)** 농식품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 지원

40.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 확대,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에 기여

• (현행)

- ①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ha 이하는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 가능

*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8m 이상 도시계획도로), 철도, 하천(국가·지방하천), 산업단지·택지 지정 등으로 집단화 된 농업진흥지역과 분리되는 경우 등

**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

- ② 농업진흥구역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제한적 허용* 및 일부 주민편의시설(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주민대피시설 등) 설치불가

* 사업주체가 마을공동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체험시설 허용

• (개선내용)

- ① 해당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을 2ha → 3ha로 확대

- ②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허용 확대

* (체험시설)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의 경우 체험대상자의 교육·홍보시설 및 자가생산농산물(가공품 포함) 판매시설 허용 (주민편의시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과 주민대피시설 추가

- **(시행시기)** '16.11.29.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기대효과)** 국민불편 해소,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2 건설·제조업 분야

41.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현행)**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매트 제품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관련 기업의 생산·투자에 불확실성을 확대
- **(개선내용)**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 평가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전자파 기준을 설정
- **(시행시기)** '17년 6월 예정
⇒ **(기대효과)**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

42. LPG 수입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 LPG 수입업 등록시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진입 촉진

- **(현행)** LPG 수출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은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요구
-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이 8만톤인 경우, 추정투자비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과도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내용)**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15일분의 저장시설로로 완화
- 30일분(8만톤) 저장시설에 1,000억원이 소요되나, 15일분(4만톤) 저장시설은 500억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용 경감
- **(시행시기)** '16.11.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기대효과)** LPG 수출입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신규참여 확대 및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효과

43. 석유화학공장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활성화

- 나프타부생가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도 대량거래 가능

- **(현행)**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석유화학 시설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부생가스를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 전용배관으로 직접 공급할 경우,
-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사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공급량도 월 공급량을 1만㎥ 이하로 제한
- **(개선내용)** 석유화학 공장간에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직접 거래할 경우,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거래량 제한도 폐지
- **(시행시기)** '17.6.3.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기대효과)** 석유화학공장간 나프타부생가스의 거래 활성화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

44.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현행)**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 국가와 미국, 유럽 등 코셔 식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별 인증제도, 시장 동향·통관 등 정보제공,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지원 등 제공
- **(개선내용)** FDA(미국), SNI(인도네시아) 등 해외 식품인증이 필요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돼지고기·알코올 외에 GMO, 영양성분 분석 등 추가 지원
- **(시행시기)** '17.3.3.(「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 **(기대효과)**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45.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 식품·축산물 HACCP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단일기관에서 수행

- **(현행)** 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기관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이원화**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
** 「식품위생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개선)**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단일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영업자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설립

- **(시행시기)** '17.2.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인증업무의 통합관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인증을 제공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46.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신설내용)** 내국법인이 공모리츠(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기한) '19.12.31일까지 현물출자한 경우
-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시행시기)** '17.1.1.(「조세특례제한법」)
⇒ **(개선효과)**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공모리츠에 대한 투자유도

47.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시공실적 평가항목 만점기준 완화

- **(현행)**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10억원~5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실적을 과도하게 요구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규모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요구
- **(개선)** 입찰 적격심사* 기준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
*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제도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규모 대비 2배 이상의 실적 → 1배 이상의 실적

- **(시행시기)** '16.12.30.(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개선효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48. 공사분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개정

- **(현행)**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있어 경영상태 평가분야의 만점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 이상으로 설정
*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제도
-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 등 영세한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약할 우려
- **(개선내용)**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 등에 대하여는 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
- **(시행시기)** '16.12.30.(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개선효과)**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입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49.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분양 허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 시 허가 생략 가능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이 개발하거나 분양 가능

- **(현행)**
 - 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 시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
 - 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공공개발, 임대방식

으로만 개발

*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개선)**
 - 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 시 부두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만공사계획 허가 절차 생략
 - ②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의 개발·분양 허용
- **(시행시기)** '17.6월 (항만법)
⇒ **(기대효과)**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민간의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의 물류제조기업 투자 활성화

3 서비스업 분야

50.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 지정

- **(현행)** 지자체별로 다양한 음식점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
- **(개선)**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 적용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시행시기)** '17.5.19.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 **(기대효과)** 통일적인 위생평가와 관리를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우수음식점의 매출액 상승 등 기대

51. 영화업 신고 간소화

– 영화업 신고처리기간 단축 및 영화상영관 일괄등록 가능

- **(현행)** 영화업 신고는 처리내용이 간담함에도 현재 7일이 소요되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록 시 상영관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불편 발생
- **(개선)**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의 일괄등록이 가능
- **(시행시기)** '16.1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행정처리 신속화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신고부담 완화

52.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 **(현행)**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토지가격의 3%를 요금으로 부과(「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2)
- **(개선)** 상공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1.5%로 완화하여 요금 부과
- **(시행시기)** '17.1월(「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기대효과)** 기준 마련 및 요금부담 완화로 해상 케이블카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53. 연안화물선과 여객선의 건조 지원 확대

– 이자보전사업, 현대화 펀드 등으로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 건조 지원

- **(현행)** 연안화물선과 여객선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증가하고 있으나 선박 건조를 위한 선사의 자금 마련 어려움
- **(개선)**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 건조 지원 확대
 - ①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 건조 시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 일부(2.5%*)를 지원
 - * 대출이자율이 3%인 경우에도 2.5%까지만 지원
 - ** ('16 예산) 60억원 → ('17 예산) 76억원
 - ② 카페리·초쾌속선의 건조금액의 50%*를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하여 연안여객선 건조를 유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
 - * 나머지 건조금액의 30~40%는 금융기관 대출, 10~20% 선사부담
 - ** ('16 예산) 100억원 → ('17 예산) 250억원
- **(시행시기)** '17.1월(해운법,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기대효과)** 선사의 금융조달 부담 감경으로 연안화물선과 여객선의 현대화 및 연안선박의 국내 건조 기반 여건 조성

54.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개선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 **(현행)**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초기 방파제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을 부담
- **(개선내용)** 사업시행자가 투자자로부터 사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제도 도입
- **(시행시기)** '17.6월(「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기대효과)** 초기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 민간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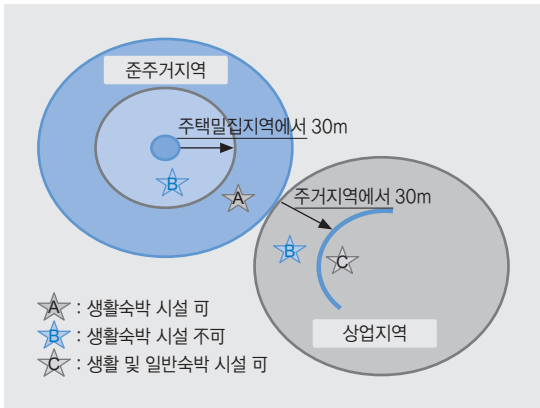
55.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

- **(현행)**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달라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그림 참조)

*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 주택밀집지역 경계 기준 일정거리 밖

***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 준주거지역 경계 기준 일정거리 밖



- **(개선내용)**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통일
- **(시행시기)** '16.11.1.(「국토계획법 시행령」)
⇒ **(개선효과)** 생활숙박시설 설치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족단위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 등에 신속적 대응 가능

56.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의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이 가능

- **(현행)** 녹지지역(자연, 생산), 관리지역(계획, 생산)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

* 녹지지역 등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구

- **(개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은 자연취락지구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시기)** '16.11.1.(「국토계획법 시행령」)

⇒ **(기대효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생활 시설 설치 확대로 해당 지구 내 주민 불편 해소 및 주차장·세차장업 투자 촉진

57.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신설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자료, 배우출연료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시행시기)** '17.1.1.(「조세특례제한법」)

⇒ **(기대효과)**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지원 강화

4 IT 신산업 분야

58.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
- **(개선내용)**
 -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 * (11대 신산업)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 ②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시행시기)** '17.1.1.('조세특례제한법')
 - ⇒ **(기대효과)**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새로운 성장·미래 일자리 창출 동력 육성

59. 부처통합형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내년 (1.1.)부터 개시

- **(현행)**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가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나눠져 있어 민원상의 불편함 초래
- **(개선)**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시행시기)** '17.1.1.
 - ⇒ **(개선효과)** 연구·개발 업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등 드론 관련 업체의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연구 개발 지원

60. 백신에 대한 WHO의 PQ 인증 시 현장실사 절차 면제

- 식약처-WHO 업무협약 체결로 신속한 PQ인증이 가능

- **(현행)** 유니세프 등의 국제백신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백신 PQ 인증은 통상 12·18개월이 소요
 - * PQ(Pre-qualification):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
- **(개선)** 식약처와 WHO의 업무 협약으로 식약처의 GMP*실사보고서를 제공시, GMP 현장실사 절차가 면제되어 백신의 PQ인증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6~12개월)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시행시기)** '16.12.7.(식약처-WHO 업무협약 체결 이후)
 - ⇒ **(기대효과)** 신속한 PQ 인증이 국내 백신의 신

속한 해외조달시장 진입이 가능

61.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활용 확대

- DTV대역 중 비어있는 채널을 민간이 무선 인터넷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

- **(현행)** DTV대역(470~698MHz)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무선마이크, 음향신호 전송 등)으로만 사용 가능
 - **(개선내용)** D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서·산간지역 등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공원 및 산불감시용 CCTV,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
 - * (사용절차) 국립전파연구원에 가용주파수 확인 후 사용
 - **(시행시기)** '16.11.30.
- ⇒ **(기대효과)** 방송통신 서비스 기업이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까지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
- * 기존의 수단인 해저케이블, Microwave(도서·산간지역 무선통신 장비) 등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 본 자료는 2017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 예년보다 빠른 12.30일에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이를 통해 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17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

-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되었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원칙 신설

-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하여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 강화

* '17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 ⇒ 전년 대비 132억 원(△6.3%) 감액·절감

-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신

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하여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

* 정보시스템 연차별·항목별 투자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대안 등 ISP의 공통 필수항목 및 검토절차 규정('17.2월 마련 예정)

- 용자금 회수·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자사업 부실 발생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 용자금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방안 및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용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

* 무자격자의 용자금 청구, 사업내용 허위 기재, 미집행 잔액 미반납 등

- '17.1월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

*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

②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현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공개

-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함
- * 현재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

붙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중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

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재정포럼

2017년 1월호 통권 제24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1월 16일 발행 / 제21권 제1호(통권 제24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